

창간10주년 특별호

월 · 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7

창간10주년 특별기획

『재정포럼』에 바란다

현안분석

-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 OECD 국가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정책토론포트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정책연구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외

정책흐름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외

권말부록

『재정포럼』 총목차(창간호~120호)

재정포럼

2006년 7월호(통권 제121호)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6.07_vol.121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결과중심의 예산사업 성과관리 · 최용선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05 『재정포럼』에 바란다 · 최 광 외
현안분석	14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 김종면
	38 OECD 국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박노욱
정책토론티포트	59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정책연구	83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85 조세 ·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89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9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95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97 日, 경기 좋을 때 세금 더 걷는다 외
정책흐름	108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외
이런의견 저런생각	135 개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문제 외
권말부록	141 『재정포럼』 (창간호~120호)

월간 재정포럼 2006년 7월호 통권 제121호·라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02-2186-2130-3 홈페이지 : www.kipf.re.kr



결과중심의 예산사업 성과관리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예산의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통제가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 정부지출의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나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는 집중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의 하부구조를 마련하고 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재정적자의 확대에 대처하여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 비용의 급속한 증대에 대응하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지출의 성과를 관리하는 과정은 다음이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예산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평가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다. 첫 번째 단계인, 의미 있는 성과정보를 생산하는 일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예산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사업 운영의 개선, 사업의 구조조정, 책임성 강화 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의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외과의사의 경우는 의대를 졸업한 이후 실제 수술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어 경험이 많은 의사가 유능한 의사로 인정받지만, 다른 분야의 의사 경우는 경험이 많다고 해서 꼭 기술이 좋은 의사는 아니라고 한다. 그 주요한 차이는 치료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의사에게 주어지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외과의사의 경우는 치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이다. 다시 말해 수술에 대한 성과정보가 즉각적으로 주어진다. 반면에 다른 의사의 경우는 치료나 진단 결과에 대한 성과정보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치료나 진단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알 수 있거나 결과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 결과, 다른 의사의 경우는 경험의 축적이 자신의 기술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미약하다고 한다.

예산사업의 경우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한다. 예산사업의 결과에 대한 성과정보 없이는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성과관리제도가 원래의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영자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자들의 리더십과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없다. 그러므로 예산사업에 관한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평가하는 일은 예산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성과정보의 생산과 평가의 실효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존한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데이터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된다. 특히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의미 있는 성과정보의 생산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그 결과,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진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관세청의 경우를 예로 들면, 1995년부터 이루어진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작업이 최근에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세관의 검색률은 낮추면서 동시에 밀수품 적발률은 동시에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초기의 회의론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곧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산된 성과정보에 근거한 평가 작업의 성공 여부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달려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생산된 성과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과정보와 평가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성과정보와 평가 내용을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여 예산사업의 운영방식의 개선과 예산 배정의 합리성 향상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요구를 억제하고 합리성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성과정보와 평가가 제대로 활용되어야만, 막대한 행정비용과 인력을 투자한 성과정보 체계의 구축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과관리제도가 원래의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영자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자들의 리더십과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행 초기에 있는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제도가 관계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대로 된 결실을 맺게 될 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다. **KIPF**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재정포럼』에 바란다

- 미래의 1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최 광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미래지향적인 전문지로 거듭나기를
허용석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재정이슈를 선점하는 '정책지' 역할 기대
배국환 /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
- 쉽고 친절한 나라살림의 길라잡이 역할을
안종범 / 성균관대학교 교수
- 조세·재정 담론의 장으로 뿌리 내리길
김인철 / KDI 정보자료실장
-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송양민 / 조선일보 선임기자
- 보다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황철진 / 공인회계사
- 화두, 자양분 그리고...
최병규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미래의 1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본원 제 3 대 원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정포럼』이 창간된 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 자신 제 3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정포럼』을 직접 창간했기에 감회가 새삼 새롭습니다. 관련자 모두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재정포럼』은 국내외 재정 동향과 정책의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진단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재정포럼』의 창간사에서 저는 조세 및 재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 내부 연구결과의 신속한 전달, 토론회 및 세미나 내용의 소개, 국내외의 최근 재정 동향의 보고, 그리고 유용한 통계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재정포럼』이 정책당국, 학계, 일반 국민들 사이를 잇는 가교의 역할,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정포럼』은 그동안 창간 취지를 충실히 잘 수행하여 왔으며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길잡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역대 원장님들과 모든 직원 그리고 그동안 연구원을 거쳐간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 직원 여러분들 모두 훌륭한 인재들이고 참으로 헌신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늦게 출범했던 국책연구기관이지만 한국조세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도약해 왔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다소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최고의 자리를 향한 보람의 역정이었을 것입니다.

『재정포럼』도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에 찬 눈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나라 재정의 길잡이로 우뚝 섰습니다. 10년 전 『재정포럼』을 창간할 당시에 그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다. 조세·재정제도의 개혁과 합리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조세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을 두고 말이 많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조세포럼』이 아닌 『재정포럼』을 창간한다는 것과 설립 후 4년 만에 월간지를 창간하는 것은 당시의 관계자들에게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시작도 용이하지 않지만 계속은 더 어렵고, 훌륭한 결실은 더 한층 힘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노고의 결과는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위대합니다. 이 모두가 연구원 가족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새로이 더 도전·도약해야 할 광맥과 광야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다시금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며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포럼』 창간 10주년은 지난 10년에 대한 축하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0년 후 다시 그 10년을 회고하며 축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국조세연구원 가족 여러분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 연구기관의 가족으로서 또 다시 지난 10년을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회고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지난 10년의 노고를 다시금 치하하며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해 힘차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PF



미래지향적인 전문지로 거듭나기를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지난 1996년 7월 15일에 창간되어 1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재정 전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재정포럼』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재정포럼』은 각종 정책연구와 최신 해외동향, 재정통계 등 다양한 칼럼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안이 되는 주요 과제들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나아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포럼』 발간 이래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경제는 질적·양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경제규모는 1995년에 5,173억달러(세계 13위)에서 2005년에는 7,875억달러(세계 10위)로 성장하였고, 무역규모도 2,664억달러에서 5,532억달러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G10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동안 민간의 창의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중심 전략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경제가 운용되고, 시장참여자들이 자신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양극화, FTA·DDA 개방확대 등 새로운 변화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성장과 복지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인력개발과 교육혁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포럼』도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보다 유용한 정책자료를 내실 있고 시의성 있게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재정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조세·재정연구와 제도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선진국과의 국제교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면서, 각계각층 독자들의 다양한 정보제공 요구에도 보다 귀를 기울이고 선제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전문지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기업과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포럼』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정포럼』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KiPF**

재정이슈를 선점하는 ‘정책지’ 역할 기대



배국환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축하의 글을 쓰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정포럼』은 조세·재정관련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분석, 조세·재정관련 정책연구, 재정통계 등의 정보를 국가기관을 비롯한 약 2000여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당국자의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고, 조세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재정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포럼』도 과거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최근에는 양극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는 건전한 정책 대안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하기보다는 병역문제와 같은 후보자의 신상이나, 색깔론과 같은 비생산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 부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해밀턴 프로젝트’는 양극화 문제를 다룬 재정 관련 보고서로서 민주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에서는 개인의 소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오너십 소사이어티 (ownership society)’라는 보고서에서 감세와 재정정책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대선에서는 성장과 복지, 증세와 감세,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등과 같은 재정문제들이 대선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포럼』은 재정관련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 빛을 발할 것이며 그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재정포럼』이 재정관련 ‘학술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지’로서 생동감 있게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재정관련 이슈를 선점하고 의제화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재정관련 이슈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편견 없이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는 토론이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재정포럼』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면서 아무쪼록 계속 발전해 나가는 재정관련 전문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KIPF**

쉽고 친절한 나라살림의 길라잡이 역할을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재정포럼』이 벌써 창간 10년이 되었다. 창간 당시 『재정포럼』이 과연 오래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재정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만드는 월간지이니 만큼 거는 기대 또한 상당히 컸다. 필자는 『재정포럼』이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독자대상이 그 어느 재정관련 정기간행물보다 넓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정포럼』에 수록된 많은 글들을 통해 복잡한 재정 이슈가 정리되기도 했고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지난 10년간 『재정포럼』은 우리 경제가 처한 시대적 배경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했다고 평가된다. 『재정포럼』이 창간 되던 1990년대 중반에는 우리 경제가 개방화와 자유화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이고 경제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을 때이기도 하였다. 특히 외환 위기의 극복에 재정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고령화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서 『재정포럼』은 늘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00년 당시 국가채무논쟁에 이어 최근의 감세논쟁에 이르기까지 재정이 이슈가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던 시점에서 『재정포럼』은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재정포럼』은 지난 10년간 업적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할 때이다. 중요성이 더욱 커질 재정과 세금문제이기에 지금까지보다는 더 쉽고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나라살림과 세금문제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친절한 『재정포럼』’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첫째,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세금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나 ‘세금상식 코너’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재정포럼』이라는 오프라인 매체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아이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정포럼』에 수록된 각종 통계자료나 정보를 홈페이지에 DB로 구축해서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수록된 중요정보를 『재정포럼』에 소개하여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세금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쌍방향 전달매체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즉, 『재정포럼』이 국민들의 세금관련 불만과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에 회자되는 각종 세금 관련 블로그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블로그를 『재정포럼』에서 소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 할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결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넷째, 『재정포럼』의 독자층을 좀더 확대하여 대학생, 나아가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포럼』은 학생들을 위한 나라살림 교육과 세금교육을 맡는 동시에, 학생들의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재정포럼』은 좀더 국민들 가까이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재정포럼』 창간 20주년에도 이렇게 기분 좋게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잘해달라고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IP

조세·재정 담론의 장으로 뿌리내리길



김인철
KDI 정보자료실장
(월간『나라경제』편집주간)

창간 10주년. 이 말은 단순히 그동안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10주년'이라는 단어 속에는 『재정포럼』이 우리나라 재정·조세 분야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한 경륜이 녹아들어 있다.

10주년을 계기로 『재정포럼』의 덕목을 짚어보자. 그 첫째가 재정·조세 분야 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일 터이다. 그 둘째가, 재정·조세 분야에서 제대로 된 談論의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담론의 장으로서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정책담당자들을 잇는 유효한 채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일 것이다. 그 셋째는,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특정만 전문가의 몫으로만 치부되어 온 재정·조세 분야에 비전문가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이 아닌가 한다.

재정·조세 분야의 연구자와 학자,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정책담당자,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은 아마도 『재정포럼』같은 귀중한 정보원(情報源)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고마워하고 있지 않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심층 분석해 주는 '현안 분석'이나 관련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정책 흐름'은 상당히 유용한 정보다. 월간지여서 시의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긴 하지만, 조세와 재정 관련 최근 해외동향을 소개해 주는 난도 유용하다. 그래서 재정·조세 분야의 '괜찮은' 정보원을 찾는 이들에게 나는 『재정포럼』을 서슴없이 권한다. 잔칫집에 하객으로 초대받은 이는 당연히 덕담을 몇 마디 하는 것이 도리이기에 예의상 하는 말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잘 해왔고 앞으로 도 잘하리라 믿지만, 창간호부터의 오랜 독자로서 몇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

우선, "정말 어려운 내용을 정말 어렵게도 썼구나" 하는 느낌

을 갖게 하는 글이 적지 않다. 참을성이 많지 않은 독자에게는 부담스럽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쓰는 것이 정말 잘 쓰는 글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원고청탁시 집필자에게 당부해야 할 부분이 다.

또 하나. 권두칼럼 등 한 두 건을 제외하고는 주로 내부 연구자들이 필진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기고를 늘리는 방안은 어떨까? 내용의 다양성은 물론 외연을 넓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편집위원이 연구원 내부인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외부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편집 기획 단계에서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드백을 얻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재정·조세 분야의 전문용어나 정책내용을 아주 쉬운 문장으로 사례를 들면서 해설해 주는(예를 들어 재미있는 재정·조세 이야기 같은) 난을 마련한다면 비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작과 관련해 보면, 현재 2도 인쇄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전체의 반 이하 분량만 2도 인쇄로 하고 나머지는 흑색 1도로 처리하고 있다.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전체를 2도 인쇄로 하는 게 시각적 효과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지는 저널의 얼굴이어서 나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한번쯤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컬러풀하게 조금 더 감각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사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재정포럼』이 10년 동안 중단 없이 발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재정포럼』의 10년을 지켜온 편집·제작진들의 노고와 정성도 치하해야 마땅하다. KIPF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송양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재정포럼』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린다. 『재정포럼』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거의 유일무이한 조세 전문지이자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전문지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짧은 기간에 대단한 성과를 거둔 한국조세연구원과 편집위원회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린다.

조세문제는 국민경제와 기업, 가계생활에 미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워 기자들도 세금 문제에 관한 기사를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재정포럼』은 이런 세금 문제를 다루면서 조세 지식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매월 발간되는 『재정포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 편이다. 조세와 나라살림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세계 각국의 조세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보를 얻는 데 『재정포럼』만큼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포럼』에 실리는 조세연구원 연구진들의 논문들이 요즘 신문과 방송에 자주 소개되는 것을 보면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다.

필자가 기자생활을 시작한 지 24년 가량이 됐지만 사실 요즘 만큼 세금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들어 지난 2~3년 사이에 우리나라 세제는 큰 변화를 겪었다. 세계 각국의 조세개혁 방향이 그러하듯이 법인세와 소득세는 낮아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은 높아졌다. 또 사회복지 예산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도입이 추진되는 등 정부의 재정·복지정책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러한 조세제도 개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빈약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재정 개혁이라는 의욕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조세연구원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정포럼』에 실리는 연구논문들을 보면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것은 조세연구원의 연구주제 선택, 『재정포럼』의 편집 방향이 정부의 입맛에만 맞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와 올해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쟁에서 조세연구원은 그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정부정책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조세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도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발전할수록 재정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그에 맞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사회보험료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 연구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연구원의 책임은 막중하다. 조세개혁을 할 때는 세금을 걷는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생각을 읽는 것이 아닐까 한다.

조세행정의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참여정부 들어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탈세행위는 분명히 징벌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세련되게 걷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 조세연구원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다소 소홀히 해온 것은 사실이다. 좀더 분발해야 할 대목이다.

『재정포럼』 창간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조세연구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KIPF**

보다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황철진
공인회계사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또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재정포럼』은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 및 현안을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월간지이다. 따라서 독자층에 따라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정포럼』은 그 내용이 다소 무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한국조세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성격과 하는 업무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곳에서 발간되는 『재정포럼』 역시 같은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느낌이다. 주로 식자들이 접하는 잡지로 인식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다소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잡지는 물론 발간될 당시의 취지, 이념 및 구독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포럼』은 확실히 그 취지를 살리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내게 『재정포럼』에서 원고청탁이 왔을 때 나는 그 잡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내용을 주로 다루는지 궁금하였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재정포럼』에 실려 있는지 보면서 『재정포럼』에 실려 있는 현안에 대한 고찰 및 분석에 대한 기고는 그 내용의 전문성에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해를 돕는 도표와 적절한 통계자료,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표현하는 기고문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빠른 흡수를 유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누가 볼까 하는 생각과 그 내용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그리고 알기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해석에서 내가 가졌던 처음의 우려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재정포럼』이 발간되었을 당시의 발간의 취지와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독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매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품속으로 들어갔으면 한다. 『재정포럼』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내용을 보다 많은 독자에게 나누어 주고, 보다 많은 계층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재정포럼』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는 잡지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세간의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기고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무게가 떨어지더라도 접근 용이성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잡지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들만의 잡지'로서 본연(?)의 기능만을 충실히 수행해나간다면 기관지 또는 홍보지로서의 역할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기관지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면 『재정포럼』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정포럼』은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보는 잡지이기도 하지만, 『재정포럼』이 품고 있는 내용들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대하면서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잡지로 보다 넓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잡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IPF**

학두, 자양분 그리고.....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국내 유일의 조세 및 재정정책 전문지를 표방하며 창간된 『재정포럼』이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창간호부터 실무 작업을 해오고 있는 담당자로서 느끼는 소회도 감개무량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속도'가 지배하는 요즘에 10년이란 세월은 어떤 무게와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재정포럼』은 격동의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증인이었다. 아니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부대끼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시대의 경제적 '화두'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재정포럼』은 사회 저명인사들이 집필하는 <권두칼럼>과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을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통해 분석 및 설명하는 <현안분석>, 각종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의 주요 내용 및 토론 요약인 <정책토론 리포트>,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 등을 제공하는 <정책연구>, 주요국의 조세정책 및 재정정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최신뉴스인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세청 등 관련 부처의 조세 및 재정정책 관련 보도자료를 소개하는 <정책흐름>, 주요 신문의 사실·칼럼 중 조세 및 재정정책과 관련한 내용 등을 발췌, 소개하는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내외의 주요 통계인 <재정통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세법개정안이나 예산안이 발표되면 정책 실무자들의 정책수립 배경 설명과 원내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게재하는 <특집> 및 <기획>이 창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해마다 발표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학문세계와 업적을 살펴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주요 세목별로 내용과 특징을 알기 쉽게 해설한 <한국조세의 이해> 시리즈,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조세 제도를 살펴본 <주요국의 조세제도> 시리즈, OECD 회원국의 조세개혁 내용을 소개했던 <OECD 국가들의 조세개혁논의> 시리즈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

을 담아내었던 <경제단상>, 딱딱한 지면을 부드럽게 했던 <역사기행>, <명언산책>, <현장을 찾아서> 시리즈 등도 있었다.

『재정포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논문(현안분석)은 편집위원회에서의 1차 검토와 지정검토자의 검토 등 3, 4단계의 검토를 거쳐서 나오는 고뇌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동안 『재정포럼』에 실린 350여편의 논문이야말로 지난 10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라는 잡지의 고유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포럼』은 그리 빼어난 잡지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도 『재정포럼』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기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장안의 지가를 올리지는 못하였지만, 10주년을 맞이하여 창간호부터 지금까지의 지면을 이으면 지구를 몇바퀴 돈다는 식의 계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포럼』은 양보다는 질을,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토론해보자는 취지에서 발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제도 있다. 『재정포럼』이 조세·재정 전문가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하여 경제주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렵고 딱딱한 이론적·분석적 논문 형태에서 탈피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10년 전의 창간사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편집진의 의의이기도 하다.

"정책당국, 학계, 일반국민들 간을 잇는 가교의 역할,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기탄없는 질책, 우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KIP



| 현안분석 |



-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김종면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OECD 국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hrv@kipf.re.kr)

1. 서론

재정의 입장에서 실업의 비용은 실업대책 및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지출과, 실업자의 소득 상실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라는 기회비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실업의 비용은 실업자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 상실은 물론, 실업자에 대한 각종 공적·사회적 지원의 형태로 사회적 비용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국가재정의 시각에서는 이에 덧붙여서 실업자가 만약 취업하여 소득이 있었다면 납부하였을 소득세와 사회보장(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여금의 상실을 꼽을 수 있다. 후자는 경제 전체로 보아서는 추가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나 재정수지의 측면에서는 실업발생에 따른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재정의 입장에서 실업의 비용은 실업대책 및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지출과, 실업자의 소득 상실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라는 기회비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실업 대책의 정책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실업의 비용을 재정과 관련된 범주로 국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처럼 재정으로 국한된 실업의 비용 중에서도 장기비용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하 설명하는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대비하여 단기 또는 2~3년 정도의 중기에 발생하는 실업의 비용은 우리가 실업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시현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정책에 대한 판단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이라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단기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즉, 실업이란 취업상태라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일과성의 현상으로 생각하고, 실업자가 다시 취직함으로써 잠시 존재하였던 이러한 이상 상황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실업자가 다시 정상적인 취업 상태로 복귀함으로써 실업의 영향은 그 이상 없거나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미미하다는 해석이 따른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경우에는 실업에 따른 장기 여파가 비교적 심각할 수도 있다. 청년기의 실업은 향후 취업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장기화되는 경우를 외국의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설혹 취업이 되더라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단기간에 이전 소득수준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즉, 청년기의 실업은 자칫 실업자의 향후 인생 전반을 통하여 소득 수준의 격감을 초래하는 장기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며, 청년실업에 대응한 정책에서는 이러한 장기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실업의 장기비용

청년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림 1]을 보기로 하자. 그림에서 굵은 실선은 일반 연령-소득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가 처음 취업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곡선이다. 아래쪽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실선은 소득수준이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저소득층의 연령-소득 곡선을 나타낸다. 이에 대비하여 점선으로 표시된 곡선은 청년기 실업자의 연령-소득 곡선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위쪽의 그림에서는 실업이 다만 일과성의 현상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실업기간중에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재취업과 더불어 그 연령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소득으로 바로 환원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실업이 소득에 주는 항구적인 영향은 없으며, 일시적인 소득 하락만 있는, 즉 단기적인 실업의 영향만 있는 경우이다. 이때 실업에 따른 소득상실 총액은 음영으로 처리된 영역의 면적에 해당된다.

반면 아래쪽 그림에서는 실업의 결과로 장기적으로도 소득에 타격을 입는 경우이다. 즉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전의 연령-소득 곡선에 준하는 소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항구적으로 낮아진, 저소득층의 연령-소득 곡선상으로 향후 평생 동안의 소득이 하향 조정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실업기간 동안의 단기 소득상실은 물론, 재취업 이후에도 소득에 대한 실업의 장기적인 영향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 이를 실업에 따른 장기적인 소득상실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림에서는 빗금으로 나타낸 영역만큼 소득상실이 발생한다.

그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기간중에 발생하는 단기 소득상실분에 비해 이러한 장기 소득상실분의 규모가 상당히 클 가능성도 선형적으로 배제하기 힘들다. 이러한 장기 소득상실분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은 다음 절에서 시도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실업의 결과로 이렇게 항구적으로 평생소득이 하락하게 되는 요인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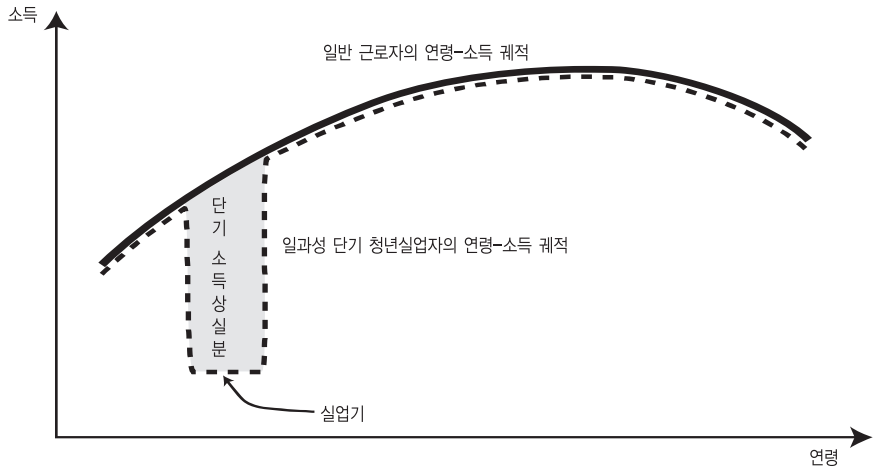
청년기의 실업은 자칫 실업자의 향후 인생 전반을 통하여 소득 수준의 격감을 초래하는 장기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며, 청년실업에 대응한 정책에서는 이러한 장기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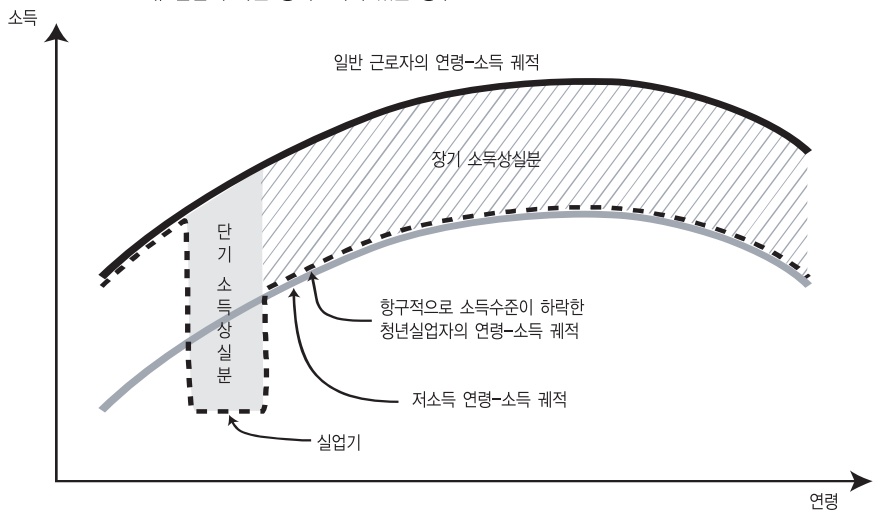
일반적인 실업 상태는
일과성의 현상으로,
곧바로 정상 상태인 취업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특별한 후유증은
없는 경우다.

[그림 1] 청년기 실업의 성격에 따른 소득상실분 개념도

가) 실업에 따른 장기효과가 없는 경우



나) 실업에 따른 장기효과가 있는 경우



먼저 [그림 1]에서 위쪽 그림의 일과성(transient) 실업의 경우는 전직이나 기타 근로자 자신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떠한 외부적 요인으로 실직했다가 바로 다른 직장을 찾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업 상태는 말 그대로 일과성의 현상으로, 곧바로 정상 상태인 취업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특별한 후유증은 없는 경우다.

이에 비해 아래쪽 그림에서는 재취업 이후에도 소득수준에 장기 영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려면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개입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실업의 시기가 경제활동 연령의 초기, 즉 청년기일 경우에 이러한 장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러한 장기효과는 청년기의 실업기간이 짧았을 때보다 장기화되었을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에 따른 장기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생각하면 설명될 수 있다.

청년기 실업의 결과 향후 평생의 소득 궤적이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자의 자질(attribute)이나 능력 등이 초기에 쉽게 판별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자질이 떨어지는 근로자가 자기의 수준에 비해 높은 보수의 직장에 취업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의 자질·능력이 보다 정확하게 검증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잠시의 실업을 거쳐 자기 능력에 맞는, 보다 낮은 보수 수준의 일자리를 찾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 궤적으로 옮겨 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 이후의 조정된 소득 궤적이 근로자의 능력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실업이라는 조정을 거쳐서 노동 공급과 수요가 매칭된 최적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책적 개입 등 추가적인 조정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을 낳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원인으로 근로자가 당초에는 자신의 능력에 적절한 직장에 취업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하한 이유로든 실업이 발생하고 재취업까지(또는 당초 노동시장 진입 이후 초기 취업까지) 실업의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향후 좋은 보수의 직장을 얻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형성이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배움으로써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learning-by-doing의 효과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근로자로서는 직장 생활의 초기가 인적자본을 높이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거치면서 향후 보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하한 이유로든 이 시기에 미취업 또는 실직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인적자본 축적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이에 따라 향후 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인적자본 수준에 따른 낮은 보수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일과성 실업의 경우와는 달리 여기에는 정책 개입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정부정책을 통하여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유인을 제공하여 청년기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면, 근로자는 노동시장 초기에 인적자본 축적의 결정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향후 평생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궤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제로섬(zero-sum)의 결과가 아니라, 총 인적자본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총 생산의 규모도 증가하게 되어 득이 될 수 있

정부정책을 통하여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유인을 제공하여 청년기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면, 근로자는 노동시장 초기에 인적자본 축적의 결정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가재정의 견지에서도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 정책에
소요되는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다.

다. 또한 정부, 즉 국가재정의 견지에서도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 정책 등에 소요되는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높아진 소득에 따른 정부의 세수 및 사회보장 기여금 등 재정수입의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이 정부가 초기에 유인 제공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상회한다면 당연히 정책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연령-소득 곡선의 개념

위에서 설명한 실업의 장기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령-소득 곡선을 알아야 한다. 본 절에서는 연령-소득 곡선의 개념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어지는 논의에 사용하기 위해 변수의 표기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Y_{at} 를 t 기에 연령 a 인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하고, 그 중 특정 개인 i 의 소득은 y_{iat} 로 표기한다고 하자. 즉, Y_{at} 는 모든 개인 i 에 대해 y_{iat} 를 모아놓은 t 기에 연령 a 인 모든 근로자의 소득분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횡단면에서, 즉 동일 시점에서 연령에 따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곡선도 하나의 연령-소득 곡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방금 정의한 표기법으로 적어보기로 하자. 편의상 잠시 하첨자 i 를 생략하여 y_{at} 가 t 기에 연령 a 인 대표적인(representative) 근로자의 소득이라고 하면¹⁾ $t = \tau$ 기의 횡단면 연령소득 곡선은 $\{y_{at}\}_{a=25, \dots, 65}$ 라고 표기할 수 있다²⁾.

그러나 본고는 각 근로자별로 그 근로자가 일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횡단면 곡선을 바로 사용할 수 없고, 통시적으로(longitudinally) 연령과 시간이 같이 변하는 세대별 연령-소득 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세대라 함은 출생연도가 동일한 사회구성원을 일컬으며, 동일출생년 세대(birth cohort) 또는 줄여서 단순히 세대(cohort)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굳이 앞의 표기법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세대의 연령-소득 곡선은 $\{y_{at}\}_{\substack{t=\tau_0, \dots, T \\ a=t-c}}$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연령-소득 곡선이라고 할 때 횡단면의 곡선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세대별 연령-소득 곡선을 의미하기로 한다. 또한 세대별 연령소득 곡선의 표기에서는, 기간을 나타내는 변수 t 와 연령을 나타내는 변수 a 가 동시에 같은 속도로 움직이므로 굳이 두 개의 변수를 다 표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시작하는 연령이 25세인 연도가 τ 라는 표시만 해도 충분하므로 $\{y_{at}\}_{t_{25} = \tau}$ 등과 같은 간략화된 표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령-소득 곡선의 추정

이상의 논의에서 횡단면과 세대별 연령-소득 곡선의 개념을 밝혔으므로, 이제 그러한 곡

1) 즉 y_{iat} 가 Y_{at} 의 평균소득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위 소득 등이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때 곡선이 나타내는 연령의 하단(상단)은 25(65)세 이외의 다른 연령을 사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25세와 65세를 사용하기로 한다.

선의 구체적 계량 추정치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분포 전망이 필요하다. 장기전망 및 이를 이용한 분석에서 평균소득 정도만 추계하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본고에서는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궤적을 추계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분포를 알아야 하며, 특히 연령-소득 곡선의 도출을 위해서는 미래의 각 시점별로 각 연령별로 세분화된 소득분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의 분석에서는 성명재(2005)의 소득분포 전망을 사용하기로 한다. 소득분포를 전망하는 기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지면의 제약상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경우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단 2개의 모수로써 분포 자체를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용됨을 강조하고, 본고의 분석에서도 이러한 소득분포의 특성이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표기를 정리하기로 한다. 앞서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t 기에 가구주의 연령 a 인 모든 가구의 소득을 Y_{at} 라고 했을 때 김종면·성명재(2004)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가구에서는 현재까지 관측된 모든 연령과 기간에 대해 $Y_{at} \sim \Lambda(m_{at}, s^2_{at})$, 즉 Y_{at} 가 자연대수 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다. 또한 동일 시기 t 의 모든 연령에 걸친 전체 가구 소득분포도 이와 같이 자연대수 정규분포임을 보였다. 이때 소득의 자연대수를 취하면 $X_{at} \equiv \ln(Y_{at}) \sim N(m_{at}, s^2_{at})$, 즉 평균과 분산이 m_{at} 와 s^2_{at} 인 정규분포를 얻는다. 여기서 Y_{at} 의 평균과 분산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편의상 하첨자 생략).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경우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단 2개의 모수로써 분포 자체를 정의할 수 있다.

$$\mu = \exp\left\{\frac{2m+s^2}{2}\right\}, \sigma^2 = \exp(2m+2s^2) - \exp(2m+s^2)$$

또한 역으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m = \ln\left(\frac{\mu^2}{\sqrt{\sigma^2 + \mu^2}}\right), s^2 = \ln\left(\left(\frac{\sigma}{\mu}\right)^2 + 1\right)$$

소득분포의 이러한 특성과 아울러, 성명재(2005)가 분포의 전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표 1>과 같은 향후 명목경제성장률에 대한 가정이 소득분포 전망에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명목성장률은 이하에서 각종 추정치의 현재가치(present-value) 환산에 필요한 할인율과 같으므로 여기서 제시한다.



최저생계비는 원칙적으로는
최저생계 수준 유지를 위한
재화 바구니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실측하여
정해진다.

〈표 1〉 연평균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가정

(단위 : %)

분야	2005~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연평균 증가율	7.06	6.69	5.38	4.10	3.34

주: 김종면·성명재(2004)의 〈표 IV-2〉에서는 경상GDP에 대해 위의 증가율 전망치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경상GDP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함.

이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연령-소득 곡선을 도출해보기로 하자. 먼저 일반 근로자의 연령-소득 곡선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반적인 보수를 받는 대표적인 근로자가 t 기에 연령 a 일 때의 보수를 \bar{y}_{at} 라고 표기하기로 하고, 그 추정치로는 Y_{at} 의 평균이나 중위값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_{at} 와 s_{at} 의 값을 이미 알고 있는 이상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bar{y}_{at} = \text{mean}(Y_{at}) = \mu_{at} = \exp\left\{\frac{2m_{at} + s_{at}^2}{2}\right\}$$

또한 후자, 즉 소득의 중위값은 이보다 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bar{y}_{at} = \text{median}(Y_{at}) = \exp(m_{at})$$

본고에서는 이 중 평균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제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을 구하기로 한다. 저소득의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가의 문제에서는 다소의 임의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본고에서는 우선 현재 기초생활보장 적용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선 결정의 논리를 고려해보기로 한다. 최저생계비는 원칙적으로는 최저생계 수준 유지를 위한 재화 바구니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실측하여 정해진다. 즉,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의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후적 관측상 우리나라에서는 중위 소득의 40% 수준 정도를 유지해왔으므로,³⁾ 절대빈곤선도 사회 전반의 생활수준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대빈곤선으로 해석하여 추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저소득층 소득을 y_{at} 라고 표기하면 아래 식이 성립된다.

$$y_{at} = 0.4 \exp(m_{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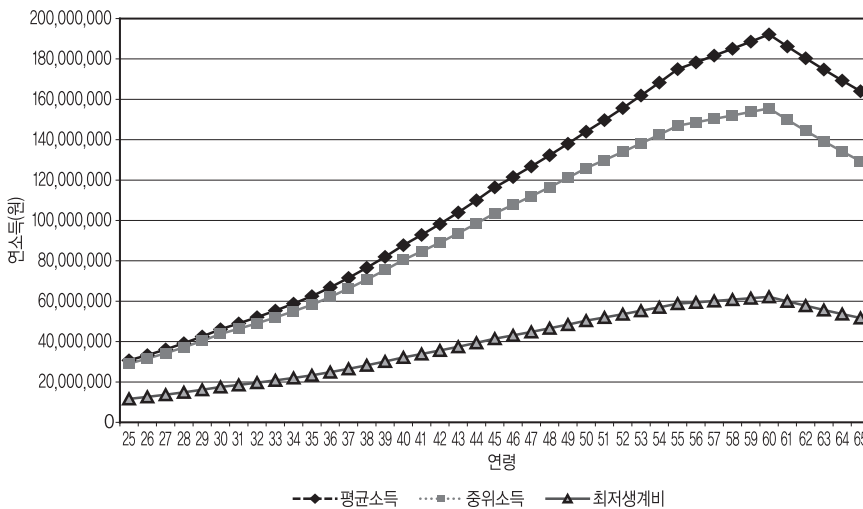
3) 김종면·성명재(2004)와 성명재(2005) 참조.

물론 중위 소득의 40% 이외에도 다른 사회에서 상대빈곤선으로 인정되는 50%나 60%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와 유사하게 $y_{at} = 0.5\exp(m_{at})$ 또는 $y_{at} = 0.6\exp(m_{at})$ 라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성명재(2005)의 소득분포 모수 전망치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 및 최저생계비의 세대별 연령-소득 곡선을 구할 수 있다. <표 2>와 <표 3>에는 2005년 당시 25~30세인 6개 세대(cohort)가 각각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예측되는 평균소득과 최저생계비 수준 소득을 제시하고, 이 중 2005년에 25세인 세대에 대하여 [그림 2]에 정리하였다.

성명재(2005)의 소득분포 모수 전망치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 및 최저생계비의 세대별 연령-소득 곡선을 구할 수 있다.

[그림 2] 2005년 당시 25세인 가구주 세대의 생애 연령-소득 곡선



5. 실업의 장기비용 추정

가. 근로자의 장기비용

실업 후 2005년에 취업하면서 향후 평생을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을 따라가는 25세 근로자의 경우, 2005년 이후 t 년도에 일반 근로자의 소득과 대비하여 발생하는 소득상실은 다음과 같다.



〈표 2〉 2005년 당시 25~30세인 가구주의 연령-소득 곡선상의 평균 연간소득 전망

t	t=2005 당시 각 동일 출생연도 세대(birth cohort)의 연령 a					
	25	26	27	28	29	30
2005	30,704,967	31,636,909	32,597,136	33,586,508	34,605,909	35,656,250
2006	33,304,697	34,315,373	35,356,719	36,429,666	37,535,173	37,850,918
2007	36,124,180	37,220,230	38,349,537	39,513,107	39,844,287	40,178,243
2008	39,181,960	40,370,586	41,595,269	41,942,635	42,292,901	42,646,092
2009	42,498,146	43,787,152	44,151,489	44,518,857	44,889,281	45,262,788
2010	46,094,537	46,476,669	46,861,969	47,250,462	47,642,177	48,037,139
2011	48,990,384	49,394,972	49,802,901	50,214,199	50,628,894	51,336,153
2012	52,064,891	52,493,221	52,925,075	53,360,482	54,106,052	54,862,038
2013	55,328,870	55,782,302	56,239,449	57,025,403	57,822,342	58,630,418
2014	58,793,779	59,273,744	60,102,272	60,942,381	61,794,233	62,657,992
2015	62,471,749	63,345,156	64,230,774	65,128,774	66,039,328	66,962,613
2016	66,862,097	67,797,074	68,745,126	69,706,435	70,681,187	71,553,015
2017	71,561,387	72,562,281	73,577,174	74,606,262	75,525,688	76,456,446
2018	76,591,388	77,662,852	78,749,304	79,718,928	80,700,490	81,694,137
2019	81,975,403	83,122,418	84,144,978	85,180,117	86,227,991	87,288,755
2020	87,738,381	88,816,766	89,908,406	91,013,463	92,132,102	93,264,491
2021	92,847,526	93,987,880	95,142,241	96,310,779	97,493,669	97,019,466
2022	98,252,455	99,458,318	100,678,980	101,914,624	101,416,200	100,920,214
2023	103,970,192	105,245,303	106,536,052	106,012,185	105,490,895	104,972,167
2024	110,018,732	111,367,043	110,816,451	110,268,582	109,723,421	109,180,955
2025	116,417,101	115,838,438	115,262,651	114,689,725	114,119,648	113,552,404
2026	121,486,512	120,879,241	120,275,007	119,673,792	119,075,583	119,014,560
2027	126,769,521	126,132,286	125,498,253	124,867,408	124,803,218	124,739,061
2028	132,274,809	131,606,188	130,940,948	130,873,426	130,805,939	130,738,487
2029	138,011,393	137,309,904	137,238,878	137,167,889	137,096,937	137,026,021
2030	143,988,645	143,913,934	143,839,262	143,764,629	143,690,035	143,615,479
2031	149,711,161	149,633,241	149,555,363	149,477,524	149,399,726	149,321,978
2032	155,660,607	155,579,342	155,498,120	155,416,940	151,737,316	148,144,810
2033	161,845,964	161,761,211	161,676,503	157,851,078	154,116,166	150,469,626
2034	168,276,564	168,188,175	164,211,173	160,328,212	156,537,069	152,835,571
2035	174,962,111	170,827,528	166,790,651	162,849,171	159,000,833	155,243,436
2036	178,264,329	174,054,495	169,944,080	165,930,735	162,012,168	150,842,680
2037	181,634,685	177,348,095	173,162,670	169,076,021	157,422,054	146,571,365
2038	185,074,684	180,709,802	176,447,864	164,288,404	152,966,882	142,425,555
2039	188,585,869	184,141,124	171,454,246	159,641,463	148,642,552	138,401,439
2040	192,169,816	178,932,644	166,607,283	155,130,926	144,445,091	134,495,325
2041	186,170,672	173,349,232	161,410,796	150,294,551	139,943,874	
2042	180,364,002	167,944,882	156,380,891	145,613,149		
2043	174,743,475	162,713,704	151,512,093			
2044	169,302,972	157,650,009				
2045	164,036,578					

〈표 3〉 2005년 당시 25~30세인 가구주의 연령-소득 곡선상의 연간 최저생계비 전망

t	t=2005 당시 각 동일 출생연도 세대(birth cohort)의 연령 a					
	25	26	27	28	29	30
2005	11,635,592	12,012,727	12,402,086	12,804,065	13,219,073	13,647,532
2006	12,627,310	13,036,526	13,459,004	13,895,173	14,345,477	14,433,188
2007	13,703,421	14,147,443	14,605,853	15,079,116	15,170,851	15,263,145
2008	14,871,097	15,352,880	15,850,273	15,946,215	16,042,738	16,139,846
2009	16,138,116	16,660,868	16,761,207	16,862,151	16,963,702	17,065,866
2010	17,512,917	17,617,852	17,723,416	17,829,613	17,936,446	18,043,919
2011	18,543,689	18,654,218	18,765,407	18,877,258	18,989,776	19,219,771
2012	19,633,905	19,750,316	19,867,418	19,985,214	20,227,323	20,472,365
2013	20,786,919	20,909,515	21,032,833	21,287,693	21,545,641	21,806,714
2014	22,006,272	22,135,368	22,403,650	22,675,184	22,950,009	23,228,164
2015	23,295,698	23,578,109	23,863,944	24,153,244	24,446,052	24,742,408
2016	24,851,982	25,153,330	25,458,333	25,767,034	26,079,478	26,283,619
2017	26,512,383	26,833,940	27,159,397	27,488,802	27,703,676	27,920,230
2018	28,283,877	28,626,999	28,974,285	29,200,456	29,428,392	29,658,107
2019	30,173,906	30,540,043	30,778,103	31,018,020	31,259,806	31,503,477
2020	32,190,414	32,440,989	32,693,514	32,948,005	33,204,477	33,462,945
2021	33,858,630	34,121,890	34,387,197	34,654,567	34,924,015	34,706,115
2022	35,612,671	35,889,254	36,167,984	36,448,879	36,220,495	35,993,541
2023	37,456,921	37,747,495	38,040,322	37,800,953	37,563,090	37,326,723
2024	39,395,985	39,701,251	39,450,373	39,201,080	38,953,363	38,707,211
2025	41,434,701	41,171,765	40,910,498	40,650,889	40,392,928	40,136,603
2026	43,090,489	42,815,831	42,542,923	42,271,754	42,002,314	41,715,014
2027	44,809,901	44,523,018	44,237,972	43,954,751	43,654,026	43,355,359
2028	46,595,274	46,295,646	45,997,944	45,683,168	45,370,545	45,060,062
2029	48,449,030	48,136,114	47,806,629	47,479,399	47,154,409	46,831,643
2030	50,373,675	50,028,794	49,686,274	49,346,099	49,008,253	48,672,720
2031	51,953,086	51,597,308	51,243,968	50,893,047	50,544,529	49,029,978
2032	53,581,846	53,214,830	52,850,328	52,488,322	50,916,300	49,391,360
2033	55,261,492	54,882,883	54,506,868	52,875,194	51,292,365	49,756,918
2034	56,993,607	56,603,041	54,909,452	53,266,537	51,672,778	50,126,706
2035	58,779,827	57,021,974	55,316,692	53,662,408	52,057,595	50,500,776
2036	59,445,665	57,668,824	55,945,092	54,272,883	52,650,657	48,831,945
2037	60,120,971	58,324,877	56,582,441	54,892,060	50,911,596	47,219,772
2038	60,805,893	58,990,282	57,228,883	53,079,814	49,231,552	45,662,286
2039	61,500,586	59,665,187	55,340,373	51,329,042	47,608,471	44,157,585
2040	62,205,207	57,697,204	53,515,895	49,637,605	46,040,374	42,703,834
2041	59,948,215	55,604,577	51,575,663	47,838,670	44,372,447	
2042	57,774,778	53,589,391	49,707,206	46,106,259		
2043	55,681,742	51,648,725	47,907,818			
2044	53,666,078	49,779,772				
2045	51,724,870					



20대 초반에서 중반의 청년기에 실업으로 인하여 인적자본 형성에 타격을 받는 경우, 1인당 평생 동안 약 7.3억원에서 8억원 정도의 소득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overline{y_{at}} - \underline{y_{at}} = \exp\left(-\frac{2mat+s^2at}{2}\right) - 0.4\exp(m_{at})$$

이러한 소득상실분의 흐름에 대해 앞서 <표 2>에서 제시했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t 기의 할인율을 β_t 라고 표기).

$$\begin{aligned} PV(a_0=25, t_0=2005) &= \sum_{a=25}^{65} \left(\prod_{25}^a \frac{1}{1+\beta_{t_0+a-25}} \right) (\overline{y_{at}} - \underline{y_{at}}) \\ &= \sum_{a=25}^{65} \left(\prod_{25}^a \frac{1}{1+\beta_{t_0+a-25}} \right) \left(\frac{2mat+s^2at}{2} \right) - \exp(m_{at}) \\ &= 792,993,379(\text{원}) \end{aligned}$$

동일한 방법으로 2005년에 26~30세인 5개 세대에 대해 각각 근로자 1인이 65세까지 장기간에 상실하는 소득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PV(a_0=26, t_0=2005) = 780,349,259(\text{원}),$$

$$PV(a_0=27, t_0=2005) = 767,330,915(\text{원}),$$

$$PV(a_0=28, t_0=2005) = 753,894,628(\text{원}),$$

$$PV(a_0=29, t_0=2005) = 739,996,856(\text{원}),$$

$$PV(a_0=30, t_0=2005) = 725,584,118(\text{원})$$

이 결과로 미루어 20대 초반에서 중반의 청년기에 실업으로 인하여 인적자본 형성에 타격을 받는 경우, 1인당 평생 동안 약 7.3억원에서 8억원 정도의 소득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⁴⁾. 현재 청년실업자의 수가 약 40만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 중 10% 정도만이라도 취업 및 그에 따른 인적자본 제고를 통하여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평생 동안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소득상실분 현재가치의 총합은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⁵⁾.

나. 재정에 발생하는 세입 효과

앞의 분석은 새로운 실업정책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청년실업의 장기비용을 고려할 경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추가 지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가 지출을 하더라도,

4) 물론 청년실업자라고 해서 모두에게 이러한 장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취업 후에도 소득 수준이 원래 연령-소득 곡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저소득 곡선으로 하락하는 것은 청년실업자 중 일부분이다. 또한 본래 인적자본 수준 등 노동력의 질이 떨어져서 처음보다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우리의 고려 대상 밖이다. 본문에서 추정된 소득 상실액은 전 청년실업자의 향후 평균 상실액이 아니라 실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이유로든 청년기 실직이 발생하여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남는 근로자들의 평균 상실액이다.

5) 1인당 7.5억원의 비용으로 간주하여 40만명의 10%인 4만명에게 발생하는 총비용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로 청년실업자가 취업을 하여 일반 근로자의 연령-소득 곡선으로 복귀한다면,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에 평생 머물렀을 경우와 대비하여 보다 높은 소득의 흐름으로부터 정부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 더 큰 소득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재정의 입장에서 현재의 실업정책을 위한 추가 지출을 일종의 투자로 해석할 수 있고, 소득 흐름이 보다 높아진 근로자로부터 거두는 증가된 소득세의 흐름을 이러한 투자에 대한 회수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실업정책 덕분에 청년 근로자의 평생의 소득 흐름이 높아진다면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재정의 시각에서도 실업정책 지출이라는 투자에 비해 소득세를 통한 투자 회수의 현재 가치가 더 높다면 이러한 투자는 과감히 해도 좋다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항에서는 청년실업의 장기효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득세 세입의 변화를 추정해보기로 한다.

재정의 시각에서는 청년실업자의 향후 소득이 일반 근로자 수준에서 저소득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 세입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때 미래의 t 기에 연령 a 인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세입 손실은 일반 근로자의 소득 y_{at} 로부터 거두었어야 할 소득세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y_{at} 로부터의 소득세의 차액이며, 그러한 소득세 상실분 흐름의 현재 가치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바로 추가적 실업정책에 대한 회수의 현재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회수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투자액보다 크면 당해 정책은 충분한 투자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재정 회수의 총 현재가치가 바로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정책지출의 상한선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미래 소득세를 이와 같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본고의 분석이 약 40여년간의 소득의 흐름을 다루고 있으므로, 실질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미래소득의 수준은 현재에 비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표 2>와 <표 3>에서 추정한 미래소득 수준에 현 세제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미래의 소득세를 환산하는데 필요한 세율은 소득분위별 실효소득세율이 앞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래 <표 4>에 제시된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때 <표 4>의 소득분위는 전 가구, 즉 전 연령층의 소득분포에서 구한 것이므로, 앞서 <표 2>와 <표 3>에서 추정한 특정 연령에서의 미래소득 수준이 당해연도에 전 연령층 소득분포에서 어느 분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 연령층 소득분포를 우선 알아야 하는데, 이 역시 성명재(2005)의 기존 결과를 사용하기로 한다.

실업정책 덕분에

청년 근로자의 평생의 소득
흐름이 높아진다면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각 연도마다 소득분위별로
그 분위 소득의 상한과
하한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분포의 자연대수가
정규분포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표 4〉 소득분위별 실효 소득세율(개인소득)

(단위 :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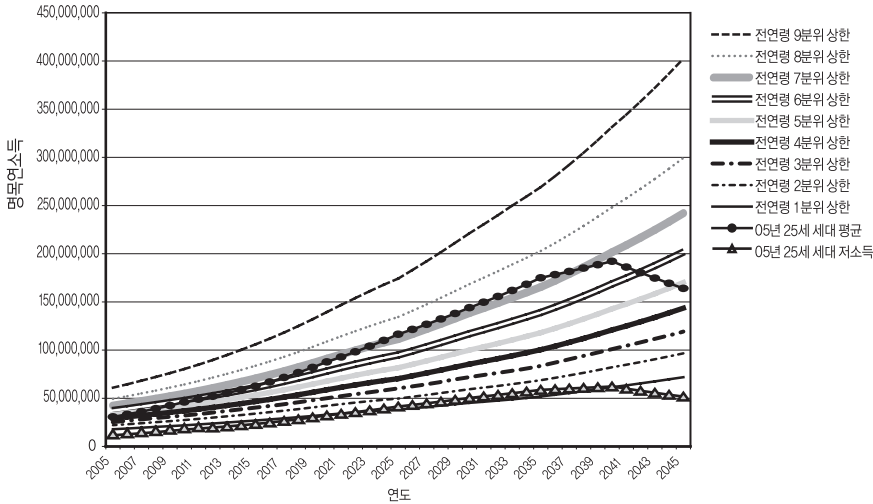
소득분위	연간소득	실효세율
10	67,520,751	8.3
9	46,366,839	6.1
8	37,715,015	5.1
7	31,781,765	4.1
6	26,976,384	3.9
5	22,600,433	3.4
4	18,538,295	2.8
3	14,180,372	1.9
2	9,024,815	1.3
1	2,020,305	0.8
평균	27,681,761	5.2

주: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이때 각 연도마다 소득분위별로 그 분위 소득의 상한과 하한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분포의 자연대수가 정규분포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표준정규분포의 누적 밀도함수를 Φ 라고 할 때, 순위가 $x(0 \leq x \leq 1)$ 인 소득 $y(x)$ 는 $\exp(m_{at} + \Phi^{-1}(x)s_{at})$ 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일례로 2010년의 경우 아래 〈표 5〉에 각 소득분위의 상한에 해당되는 연소득액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때 상한 임계 Z 값은 해당되는 누적 소득순위 p 에 대해 $\Phi^{-1}(p)$ 를 적은 것이다. 〈표 5〉에서 제시된 2010년 전연령 소득분포상의 소득분위와 앞의 〈표 2〉와 〈표 3〉에서 2010년의 30세 근로자에 해당되는 $\overline{y}_{30,2010} = 46,094,537$ 과 $y_{30,2010} = 17,512,917$ 을 찾아 비교하면 전자는 전연령 소득분포 상에서 제6분위에, 후자는 제1분위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verline{y}_{30,2010} = 46,094,537$ 에는 실효세율 3.9%, $y_{30,2010} = 17,512,917$ 에는 0.8%가 적용되어 2010년에 이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소득세 세입의 손실은 1,657,584원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이 세대 연령-소득 곡선이 전연령 소득분포상에서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 구하면 아래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여기서 2005년 당시 25세인 출생세대의 일반 근로자의 소득은 초기에 전연령 소득분포의 제5분위에서 시작하여 40대와 50대 후반의 제8분위까지 지속적으로 소득의 상대 위치가 개선되었다가 60대에 다시 제5분위까지 급속히 하락한다. 이와 같은 소득분위의 변동에 따라 해당분위의 실효세율을 〈표 4〉에서 찾아 매년도의 소득세 세입 손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전 연령 소득분포상에서의 세대 연령-소득 분위의 변화
(2005년 당시 25세인 동일출생 세대의 평균소득 및 저소득)



청년실업으로 인한 장기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재정의 손실, 즉 소득세 상실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청년 근로자 1인당 약 4,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 2>와 <표 3>의 모든 연도 t 와 연령 a 에 대하여 해당 \bar{y}_{at} 또는 y_{at} 가 어느 소득분위에 속하고 따라서 어떤 실효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정한 후, 각 t 기마다 \bar{y}_{at} 와 y_{at} 로부터의 소득세의 차액을 구할 수 있다. 그러한 소득세 차액의 흐름에 대해 다시 현재 가치를 환산하면 아래 <표 6>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표 5> 소득분위별 상한소득(2010년 가구소득 기준)

소득분위	상한 임계 Z값	상한 소득(원)
10	-	-
9	1.2816	80,333,626
8	0.8416	64,284,278
7	0.5244	54,742,686
6	0.2533	47,718,707
5	0.0000	44,070,267
4	-0.2533	36,918,596
3	-0.5244	32,181,608
2	-0.8416	27,404,954
1	-1.2816	21,929,891
전체 평균소득		47,717,861



정부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1조 9천억원까지 청년실업 대책에 추가적인 지출을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균형에는 변함이 없다.

〈표 6〉 세대별 근로자 1인당 생애 추정 소득세 상실액

(단위 : 원)

세대(cohort) 구분(2005년 당시의 연령)	2005년 이후 65세까지의 생애 소득세 상실액 흐름의 현재가치
25	49,395,748
26	48,610,622
27	48,121,566
28	47,633,532
29	46,533,815
30	45,862,532

〈표 6〉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청년실업으로 인한 장기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재정의 손실, 즉 소득세 상실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청년 근로자 1인당 약 4,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앞의 항에서와 같이 실업정책에 대한 추가 재정지출의 결과로 현재 청년실업자 40만명의 10%만이라도 일반 근로자의 연령-소득 곡선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 재정은 향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약 1조 9천억원의 소득세 세입 재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1조 9천억원까지 청년실업 대책에 추가적인 지출을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균형에는 변함이 없다. 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경제 전체로서는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약 30조원, 즉 GDP의 3~4% 규모에 해당되는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⁶⁾

6) 여기서 조세수입 증대분이 어느 정도는 다소 과도하게 추정(over-estimate)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하의 민감도 및 대안 분석에서도 같은 이유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방법에서는 청년실업자가 실업대책의 결과로 조기에 재취업 시 향후 평생 소득 궤적의 증가가 근로자의 생산가능연령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산가능연령 기간 중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에는 실업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증가로 인한 조세수입의 증가의 총현재가치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다. 민감도 분석

앞의 분석은 근로자의 향후 소득 흐름에 대한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하였다. 우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평생의 소득 흐름을 같은 출생세대의 연령-소득 곡선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큰 무리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청년기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재취업 이후에도 정상적인 보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여 저소득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 저소득 수준의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인 중위소득의 40%를 상정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에 대하여 다른 가정을 채택하였을 때 우리가 도출한 근로자의 평생소득 상실액과 재정당국의 소득세 상실액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는 다음 절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40% 대신 대안으로 자주 사용되는 중위 소득의 50% 또는 60%로 청년실업

자의 장기 소득 궤적이 이행하는 경우를 간략히 보기로 한다.

자세한 분석과정은 앞서 살펴본 중위소득의 40%인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표 7>에는 결과만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7>을 보면 저소득 연령-소득 궤적이 중위 소득의 40%인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장기 소득상실액은 약 7.5억원, 이에 따른 재정당국의 소득세 상실액은 약 4,8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이 중위 소득의 50%, 또는 60%이라고 상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소득 상실액이 각기 6.5억원과 5.5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소득세 상실액은 각기 4,500만원과 4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근로자가 청년실업자 40만명 중 약 10%라고 할 경우, 청년실업으로 인한 경제 전체의 장기적 손실은 약 26조원과 22조원 수준이라고 추산되며, 재정당국의 장기 세입 손실은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1.8조원 및 1.6조원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앞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이다.

저소득 연령-소득 궤적이 중위 소득의 40%인 경우, 근로자의 장기 소득상실액은 약 7.5억원, 이에 따른 재정당국의 소득세 상실액은 약 4,800만원 수준이다.

<표 7> 세대별 근로자 1인당 생애 추정 소득 및 소득세 상실액

(단위 : 원)

세대(cohort) 구분 (2005년 당시의 연령)	A : 2005년 이후 65세까지의 생애 소득 상실액 흐름의 현재가치 B : 2005년 이후 65세까지의 생애 소득세 상실액 흐름의 현재가치					
	y_{at} = 중위소득의 40%		y_{at} = 중위소득의 50%		y_{at} = 중위소득의 60%	
	A	B	A	B	A	B
25	792,993,379	49,395,748	683,300,570	46,168,788	573,607,761	40,780,937
26	780,349,259	48,610,622	672,384,291	45,312,855	564,419,324	39,888,923
27	767,330,915	48,121,566	661,172,276	44,940,809	555,013,637	39,675,581
28	753,894,628	47,633,532	649,627,791	44,531,898	545,360,955	39,174,567
29	739,996,856	46,533,815	637,714,314	43,695,482	535,431,772	38,868,467
30	725,594,118	45,862,532	625,395,428	43,210,267	525,196,738	38,472,523

6. 저소득 곡선 가정에 대한 대안 분석

앞의 절에서 청년실업자가 재취업 이후에도 정상적인 보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여 저소득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 저소득 수준의 기준으로 상정한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중위 소득의 40%는 너무 낮은 수준이기 쉽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또는 60%인 경우 소득 상실액과 소득세 상실액의 추정치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본절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우리의 추정치가 어



일반적인 자본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가치나 유용성이
하락하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데,
인적자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땡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이후 출생세대의 소득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

앞에서 분석한 최저생계비 기준, 즉 중위소득의 40% 기준은 우리가 선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 중 상당히 낮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하한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선형적으로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의 상한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청년실업 이후의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이 나타나는 이유로 우리가 상정한 인적자본 축적 기회의 상실의 논리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보기로 하자. 이 경우에 연령 a 인 청년 근로자가 t 년에 실직하여 n 년간의 실업기간 이후 재취업을 한다면, 실직기간 동안에는 직장에서의 경험으로 축적되는 인적자본이 없으므로 그가 재취업하는 시점에서의 인적자본 수준은 그가 실직할 당시인 연령 a 때의 인적자본 수준과 동일하다고 우선 상정할 수 있다. 즉 실직 당시인 t 기의 연령 a 일 때의 인적자본 수준이 재취업 당시인 $t+n$ 기의 연령 $a+n$ 일 때의 이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개략적으로 그의 인적자본 수준은 $t+n$ 기에 연령 a 인 세대의 인적자본과 같으며, 향후 계속해서 원래 자신이 속한 세대인 t 기에 연령이 a 인 출생세대의 연령-소득 곡선이 아니라 $t+n$ 기에 연령 a 인 세대의 연령-소득 곡선을 따라갈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05년에 25세인 청년이 실직하여 2년 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재취업 당시인 2007년에 27세인 그의 인적자본 수준은 2007년에 25세인 출생세대와 같으며, 그에 해당되는 보수를 받게 되고, 향후 평생 동안 자신이 속한 출생세대가 아니라 그보다 2세 아래인 세대의 연령-소득 곡선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도출된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을 상한으로, 즉 실제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간주하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자본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나 유용성이 하락하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데, 인적자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방금 든 예의 경우에 25세 실직자가 2년간 직장을 떠나 있으면 인적자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둘째, 인적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이에 따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근대 경제성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시 앞의 예를 들어) 2년간 실직 후 2007년 27세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그가 25세일 때의 수준이라고 하여도 2007년 25세인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반영한다면 2007년 25세인 출생세대의 연령-

소득 곡선과 동일하다고 상정한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은 실제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상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 <표 8>에는 2005년 당시 연령이 25~30세인 6개 출생세대별로 실직 기간이 1~5년이 경과한 후 재취업했을 경우에 각각 예상되는 생애소득 상실액과 소득세 상실액이 제시되어 있다. 추정방법은 앞의 제4절에서와 동일하며, 다만 위에서 설명한대로 원래 연령-소득 곡선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직기간 n 년 아래의 연령에 해당되는 출생세대의 연령-소득 곡선을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으로 상정하였다.

<표>의 결과를 보면 근로자 1인당 소득 상실액은 약 6천만~1.2억원 내외, 소득세 상실액은 200만~400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경제 전체로 보아 40만 청년실업자의 10%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총 소득 상실액은 약 3.6조원, 소득세 상실액은 1,200억원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의 하한에 해당되는 최저생계비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대략 10% 부근의 크기이다.

경제 전체로 보아 40만 청년실업자의 10%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총 소득 상실액은 약 3.6조원, 소득세 상실액은 1,200억원 정도의 수준이다.

<표 8> 세대별 근로자 1인당 생애 추정 소득 및 소득세 상실액

(단위 : 원)

실직기간(n)	2005년 당시 각 출생세대의 연령(n)					
	25	26	27	28	29	30
	근로자의 생애 소득 상실액의 현재가치					
1	29,147,858	29,307,252	29,424,162	29,499,784	29,535,143	29,531,101
2	58,972,370	59,281,812	59,533,531	59,701,008	59,786,442	59,791,701
3	89,591,731	90,041,849	90,418,700	90,695,615	90,847,059	90,876,055
4	121,131,514	121,712,846	122,205,071	122,581,379	122,816,069	122,884,404
5	153,725,294	154,428,227	155,025,926	155,491,448	155,798,931	155,923,453
재정당국의 소득세 상실액의 현재가치						
1	985,594	771,189	1,110,370	1,116,814	760,285	1,114,080
2	2,196,300	1,882,383	2,005,657	2,349,769	1,995,346	1,990,989
3	2,701,419	3,132,098	3,154,965	3,282,261	3,261,818	3,258,540
4	3,959,412	3,725,681	4,491,927	4,517,587	4,232,311	4,561,973
5	5,321,185	5,035,283	5,136,167	5,904,239	5,557,745	5,621,198

나. Displaced workers의 임금 하락 폭을 반영한 경우

앞의 논의에서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의 선형적 하한과 상한을 상정하여 그에 따른 소득



장기 보수 하락 현상을
분석한 문헌을 보면
근로자가 재취업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구되지 않는 임금
하락폭은 10~25%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및 소득세 상실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해 보았다. 이렇게 선형적 근거로 도출한 추정치의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그리 작지 않으므로, 본절에서는 경험적 근거를 찾아서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절에서 참조하고자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의 전직 근로자(displaced workers)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이다. 1980년대에 선진국에서 경험한 경제의 외부적 변동 요인과 그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의 결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단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 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일자리를 찾은 사례가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재취업시 이전 보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특히 산업 또는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보다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자로서도 보다 나은 여건을 찾아 다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산업이나 경제 전반을 보아도 외부충격이나 구조조정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재취업자의 보수가 이전 직장에서 누렸던 수준과는 상당히 낮았고, 이후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보수 하락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러한 장기 보수 하락 현상을 분석한 문헌을 보면 근로자가 재취업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구되지 않는 임금 하락폭은 10~25%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Flaim and Sehgal(1985)은 1979~83년의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재취업 이후 3년이 경과하여도 분석대상 근로자 200만명 중 약 60만명이 이전 임금보다 20% 이상 하락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비해 보다 최근 자료를 활용한 Ruhm(1991), Jacobson et al.(1993), Babcock et al.(1994), Fallick(1996), Stevens(1997), Farber(2003) 등은 재취업자의 장기 임금 하락폭을 각각 14%, 13.8%, 15%, 14%, 9%, 7.3%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외국의 이러한 추정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다. 우선 위에 언급한 문헌에서도 displaced worker의 정의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여러 연구 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displaced workers에 관한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 대다수가 장년층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상당한 인적자본이 축적되었다는 점이 우리가 분석하는 청년실업자의 경우와 다르며, 이들의 겪는 임금 하락 현상에서 관건이 되는 주요인은 자신에 내재된 인적자본 중 산업 또는 직장에 특화된 인적자본(industry or job-specific human capital)을 재취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비해 청년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직으로 말미암아 인적자본을 추가적으로 축적할 기회를 상실한 결과로 보수가 하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는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그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나, 청년 실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경제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인 교란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반면 외국의 연구에서도 displaced workers 중에 비숙련직의 경우에 장기적인 임금 하락폭이 컸다는 결과를 생각하면, 청년실업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소득 상실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청년실업의 결과 나타나는 장기 소득 하락폭은 10~25%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아래 <표 9>에는 2005년 당시 연령이 25~30세인 6개 출생세대별로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이 평균소득에 비해 10~25% 하락한 경우에 각각 예상되는 생애소득 상실액과 소득세 상실액이 제시되어 있다. <표>의 결과를 보면 근로자 1인당 소득 상실액은 약 2억원 내외, 소득세 상실액은 1,500만원 내외로 추정되어 앞의 상한과 하한의 경우와 비교하여 중간보다 조금 낮은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체로 보아서는 40만 청년실업자의 10%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총 소득 상실액은 약 8조원, 소득세 상실액은 6,000억원 정도의 수준이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비숙련직의 경우에 장기적인 임금 하락폭이 컸다는 결과를 생각하면, 청년실업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소득 상실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다.

<표 9> 세대별 근로자 1인당 생애 추정 소득 및 소득세 상실액

(단위 : 원)

저소득 연령-소득 곡선 하락폭 (%)	2005년 당시 각 출생세대의 연령(a)					
	25	26	27	28	29	30
	근로자의 생애 소득 상실액의 현재가치					
10	123,176,461	121,220,913	119,196,547	117,096,197	114,912,702	112,638,888
15	184,764,692	181,831,369	178,794,821	175,644,296	172,369,054	168,958,332
20	246,352,923	242,441,826	238,393,094	234,192,395	229,825,405	225,277,776
25	307,941,153	303,052,282	297,991,368	292,740,493	287,281,756	281,597,220
	재정당국의 소득세 상실액의 현재가치					
10	10,963,794	10,607,658	10,486,941	10,628,098	10,089,179	9,894,283
15	14,764,051	14,346,891	14,158,182	14,149,997	13,416,918	13,257,586
20	19,040,024	18,352,577	18,071,298	18,166,048	17,427,577	17,193,569
25	22,993,088	22,412,631	22,001,706	21,669,176	20,821,152	20,681,296

7. 결론

본고에서는 청년기의 실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인적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취업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소득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소득 상실액 및 재



실업문제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정책 수혜자 중 작은
일부분만 효과가 나타나도
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될
여지가 있다.

정당국의 소득세 상실액의 크기를 추정해 보았다. 이때 청년기 실업이 초래하는 소득 하락폭이 주요 가정으로 작용하며, 선형적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면 하락폭의 상한을, 연령이 낮은 후속 출생세대의 소득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득 하락폭의 하한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때 국가적으로는 상한, 하한 시나리오에 따라 각기 30조원과 3.6조원 정도의 소득 상실이 있다고 추산되며, 그 결과 소득수준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재정당국에게 발생하는 소득세 상실액의 규모는 각기 1.9조원과 1,200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와는 달리 외국의 displaced workers 사례에서 유추한 경험적 추정치를 적용하였을 경우는 총 소득 상실액이 8조원, 소득세 상실액은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추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과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우리가 수행한 분석 결과만으로도 두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청년실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8조원 수준이라면 이는 현재 GDP의 약 1%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손실 6,000억원도 실업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가용재원으로 생각할 때 작은 규모가 아니다. 즉, 청년실업에 수천억원의 추가적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할 경우, 이는 단순히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지출이 아니라 향후 재정수입으로 만회가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장기 재정수지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실업정책에서 대상이 되는 실업자의 대다수가 재취업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만 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가 행한 분석에서도 청년실업자의 단 10%만이라도 조기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장기재정 수지에는 중립적이면서도 국가적으로는 GDP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즉, 실업문제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정책 수혜자 중 작은 일부분만 효과가 나타나도 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될 여지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우려가 되는 것은 실효성이 실제로 없는 실업대책이 남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본고의 주장은 아무리 실업대책의 실효성이 낮아 극히 일부의 실업자들에 한하여(예: 10%)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정부담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10%의 실업자들에게만이라도 정상적인 임금 수준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타당한 주장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실업대책을 남발할 경우 우선순위를 높이 두어야 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실업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행한 분석에서 개인소득 대신 가구소득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정 규모를 조정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개략적인 선에서 조정 폭을 가늠해볼 수는 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 분포에 관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 개인소득의 규모는 본고에서 사용한 가구소득 규모의 약 2/3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보다 작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약 50% 수준이 하한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으로 약 3,000억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에는 약 4조원에서 6조원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렇게 추정치를 조정하더라도 소득세 세입 제고 이외에도 국가재정에 이득이 되는 요인들을 다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공적인 정책의 결과로 청년실업자의 향후 소득 흐름이 제고될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기여금이 국가재정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작지 않으며, 아울러 청년실업자가 저소득 계층으로 떨어졌을 경우 발생하였을 사회보장 지출도 절감되는 규모가 상당할 것이다. 국가재정에 이득이 되는 이러한 추가적인 요소들까지 고려할 때, 청년실업에 대응하여 원래 우리가 추정한 6천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지출은 보수적으로 판단하여도 투자의 타당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사료된다.⁷⁾

실효성 없는 실업대책을
남발할 경우 우선순위를 높여
두어야 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참고문헌

김종면, 『장기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2.
 김종면 · 성명재,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률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5.
 _____,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
 성명재 · 김종면, 『부문별 ·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이병희,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매월노동동향』, 제28호, 한국노동연구원, 2003.
 _____,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이주희 · 이성균,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정인수 · 김기민,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전병목 · 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2003.
 최영섭,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03.
 최준욱 · 전병목,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 재정정책 (I) -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7) 우리나라 연금제도하에서는 실업 대책으로 인해 청년실업자의 임금수준 향상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정부재정이 반드시 호전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기여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급여수준 때문에 소득의 증가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하는 점은 정부재정에 (+) 요인으로 작용하나, 현재의 공적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전체적인 효과는 오히려 (-)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득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공적연금급여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 증가폭이 공적연금보험료의 증가폭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며,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장기적으로 연금 개혁 등을 통하여 연금의 장기 수지가 균형을 가깝게 개선된 상황을 암묵적으로 상정한 것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인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해결된 상태에서 타당한 견해를 밝히려 한다.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CD, 2003.

Anne Daguette, "Importing Workfare: Policy Transfer of Social and Labour Market Policies from the USA to Britain under New Labour,"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38, No. 1, 2004.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DFWP), *New Deal for Young People and the Long-term Unemployed aged 25+: Statistics up to end of March 2003*, 2003a.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http://www.newdeal.gov.uk>), New Deal.

Economic Policy Committee of the European Commission, *Budgetary challenges posed by ageing populations: the impact on public spending of pensions, health and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and the possible indicators of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Brussels, 2000.

Eisner R., "New View of the NAIRU," *Improving the Global Economy : Keynesianism and the growth in output and employment*, (ed.) by Paul Davidson, J. A. Kregel, Cheltenham, UK: Lyme, N.H., US: E. Elgar, 1997.

Ellywood, D. "Teenage Unemployment: Permanent Scars or Temporary Blemishes," in Freeman R. B. and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Fallick, Bruce C. "A Review of the Recent Empirical Literature on Displaced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0, No. 1, 1996.

Farber, Henry S. "Job Loss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No. 9707, 2003.

Flaim, Paul O. and E. Sehgal "Displaced Workers of 1973-83: How Well have They Fared?" *Monthly Labor Review*, June 1985

Gregg, P., "The Impact of Youth Unemployment on Adult Unemployment in the NCDS," *Economic Journal* 111(475): F626-53, 2001.

Holm et al., "Youth Unemployment and Opportunities in the Labour Market - Myth of Lifelong Hysteresis," *Labour* 15(4): 531-54, 2001.

Jacobson, L., R. Lalonde, and D. Sullivan "Earnings Losses of Displaced Workers," *American Economic Review*, 83, 1993.

Jensen et al., "The response of youth unemployment to benefits, incentives, and sanc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2): 301-16, 2003.

Lynch L. M. "The Youth Labor Market in the Eighties: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Probabilities for Young Men and Wome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1, pp. 37~45.

- OECD, *Taxing Wages*, 2001.
- _____, “2003 Economic Review – France,” 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2003.
- Ruhm, Christopher J. “Are Workers Permanently Scarred by Job Displac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81, 1, 1991.
- Ryan, P. ,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IX, 2001.
- Stevens, Ann Huff “Persistent Effects of Job Displacement: The Importance of Multiple Job Loss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No. 1, pt.1, 1997.
- Summers, L. H., *Understanding Unemployment*, The MIT Press, 1990.
- Theodore, Nik, and Jamie Peck, “Searching for best practice in welfare-to-work: The means, the method and the message,” *Policy & Politics* 29(1), 2000, pp. 81~98.



OECD 국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2005년 OECD 설문조사와 고위예산간부(SBO) 회의를 중심으로-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npark@kipf.re.kr)

1. 들어가는 말

성과관리 예산제도 추진의
배경에는 정부가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투입이나 과정 중심에서
벗어나 결과 중심으로 하자는
시도가 깔려 있다.

성과정보를 활용한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관리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는 OECD에 속하는 국가뿐 아니라 그 이외의 브라질, 칠레,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0년대~70년대에 시도되었던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1980년대부터 다시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도입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2002년 사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성과정보를 생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참여정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는 주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를 도입하였고, 2005년부터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소수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 예산제도 추진의 배경에는 정부가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투입이나 과정 중심에서 벗어나 결과 중심으로 하자는 시도가 깔려 있다.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재정상황의 악화에 따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다. 후발국가들의 경우는 선발국가 경우를 벤치마킹한 경우가 많다.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는 사업추진 주체에게 자율성을 주고 사후 성과관리를 하려는 시도이다. 사업추진 주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공공부문이 처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주어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협력하거나 시장 지향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로 고려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략적으로 채택하는 재량권이 사업담당자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업무가 예산과 같이 주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경영자와 같이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그 성과를 외부에 보여줘야 한다는 고차원적인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동참한 우리나라로서는 선발국가의 경험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발국가들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04년 말에 OECD에서 행한 OECD 회원국과 그 외 2개국인 칠레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와 2006년 OECD 고위예산간부(SBO)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OECD 국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성과 평가 방법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은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성과지표를 활용하는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 평가(evaluation)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OECD 설문조사에 응답한 28개국 중 26개국이 성과측정과 평가를 활용하고 있고, 12개국이 벤치마킹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각국의 시도는 성과측정(결과와 산출)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를 활용하는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양자는 다른 성격의 성과정보를 제공한다. 성과측정은 결과, 산출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평가는 보다 자세하게 프로그램의 효과의 크기와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에는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며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이나 존재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성과측정의 방법을 활용하는 국가들 중에 대다수는 결과와 산출의 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응답국가의 51%가 결과와 산출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과나 산출지표만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출중심의 지표를 활용하던 영국·호주·뉴질랜드에서도 결과 중심의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실제 지표들이 바뀌고 있다. 산출중심의 지표는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고 논란의 여지가 작지만, 조직원이 사업의 의도된 원래 목적을 의

성과측정은 결과, 산출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평가는 보다 자세하게 프로그램의 효과의 크기와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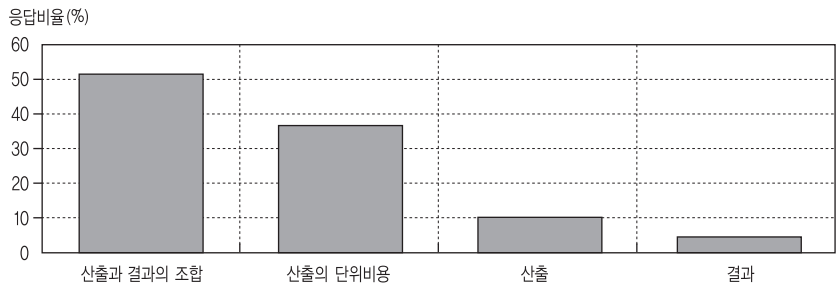


프로그램 예산회계 구조의 도입이 2007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지표의 도입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하지 않고 측정이 용이한 산출지표에만 집중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외부인에게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목적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반면에 결과 중심의 지표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측정이 어렵고 개별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당국은 결과 중심의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효율성을 보기 위해 산출의 단위 비용을 활용하는 국가도 35%를 넘어서고 있다(그림 1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본격적으로 효율성 관련 지표를 개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업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프로그램 예산회계 구조의 도입이 2007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지표의 도입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1] 개발된 성과지표들의 유형



주: 28 개국의 응답. 13개국은 설문지 1,3의 질문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응답

1. 성과측정의 역사

성과측정을 예산편성이나 정부 운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77%의 국가들이 산출지표 개발에 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0%의 국가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과 영국이다. 반면에 폴란드와 터키는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뿐 아니라 각국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75%의 국가가 지난 5년간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고 대답하고 있다. 거의 35%의 국가가 2004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표 1>에 각국의 이러한 시도들이 나열되어 있다.

각국이 산출지표는 다양하게 활용하여 왔지만 결과지표와 관련하여서의 경험은 많지 않

〈표 1〉 성과중심의 예산과 관리를 도입하기 위한 최근의 각국의 추진과제(government initiative)

성과측정을 예산편성이나 정부 운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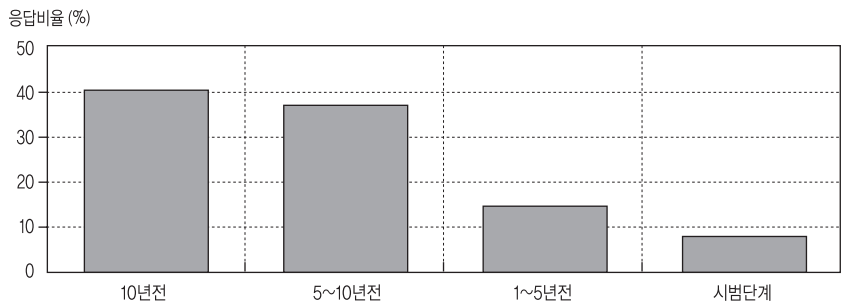
추진과제명과 설명	
오스트리아	Bundesvoranschlag 2004.
벨기에	Copernicus.
캐나다	Results for Canadians: 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 Management Resources and Results Structures; and Expenditur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칠레	System of Management Control and Results-based Budgeting.
덴마크	A new initiative called "Accrual Budgeting" was recently introduced and new guidelines were issued called "Guidelines on performance management".
핀란드	Productivity Project,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Project.
프랑스	Budgetary reform was initiated by the organic budget law of August 2001.
헝가리	There is no specific name for the efforts.
아이슬란드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gramme was created as part of a wider strategy to modernise government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udget, but it is not meant to be a part of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
아일랜드	Resource Allocation and Business Planning (RABP) Pilot Plan.
일본	The Government Policy Evaluations Act enacted in April 2002.
한국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멕시코	New Programmatic Structure (NEP)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ED).
뉴질랜드	Managing for Outcomes.
노르웨이	Regulation of financial management 1996.
폴란드	There are many activities and a variety of names.
포르투갈	Legislation applying performance evaluation of civil servants (Law 10/2004); Legislation approving the main rules of the managerial staff of the services and entities of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Law 2/2004); Organic law of the public institutes/agencies (Law 3/2004); Principles and rules to the organisation of the State Direct Administration (Law 4/2004); Ministries Council Resolution no. 53/2004; Framework Budget Law 91/2001.
슬로바키아	World Bank Project - ECORYS - Strengthening Institutional Capacity for Budgeting a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Six Key Budget Chapters.
	The General Budgetary Act 47/2003.
스페인	The general introduction of results-based budgeting in 1988.
스웨덴	Performance-based budgeting and management is introduced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nd Control Law (2003).
터키	
영국	The Public Service Agreement Framework.
미국	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 (PART).



성과관리제도에 있어서 예산당국의 역할은 평상시에 각국의 정부 내에서 예산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관련이 있다.

고 발전중이다. 도입 초기에는 산출지표를 많이 활용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지표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산출지표를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다. 덴마크는 최근에 발생주의 회계와 예산개혁을 추진하면서 결과지표를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1989년에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과 더불어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시작 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Strategic Result Areas(SRAs)와 Key Result Areas(KRAs)를 도입하면서 결과지표를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최근에 “결과중심의 관리(Managing for Outcomes)”라는 개혁 프로그램으로 결과지표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그림 2] 산출지표를 도입하기 위한 첫번째 정부의 추진과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주: 28개국 중 27개국 응답.

3. 성과정보 개발에 있어서 예산당국과 일선부처의 역할

여기서는 성과정보의 도출에 있어서 예산당국과 일선부처의 역할과 책무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일반적인 역할

중앙 예산당국이 성과관리제도의 기획과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32%의 나라에서 예산당국이나 다른 중앙기관의 간섭 없이 부처가 자체적으로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성과 목표치를 설정한다. 48%의 국가에서 예산당국이 성과목표치 설정에 동의하거나(16%),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32%)에 관여한다.

성과관리제도에 있어서 예산당국의 역할은 평상시에 각국의 정부 내에서 예산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일선부처가 상당한 운영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분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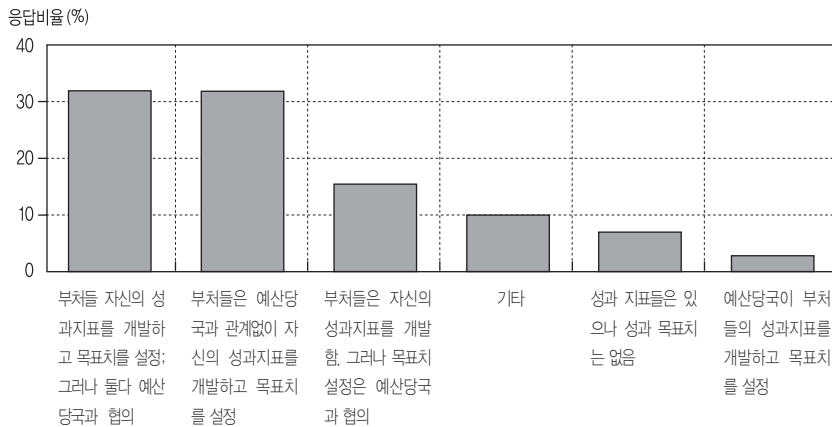
된 국가에서는, 예산당국의 역할이 중앙 집권화된 국가보다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는 운영의 책임이 일선부처에게 분권화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이런 국가에서 예산당국은 성과지표의 개발과 운영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개입을 하거나 거의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일선부처가 하위기관들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예산당국의 역할은 수평적인 지원에 가까운 것으로, 제도의 틀과 방향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산당국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성과측정과 평가에 대해 일선 부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분권화된 경우와 가장 대조적인 국가가 칠레이다. 칠레는 중앙집권화된 대통령제 국가로서, 예산당국이 다른 일선부처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예산당국이 전 부처에 걸쳐 성과관리제도를 디자인하고 운영하고 있다. 일선부처가 성과지표를 개발하되, 예산당국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설정에 있어서도 37%의 국가에서만 예산당국 내에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3] 성과지표개발과 성과 목표치 설정을 위한 일반적인 제도를 가장 잘 기술한 것은 어느 것인가?



주 : 28개국 모두 응답.

2. 예산당국 내의 성과관리 전담 조직

[그림 4]는 1/3 정도의 국가만이 부처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조직을 예산당국 내에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설정에 있어서도 37%의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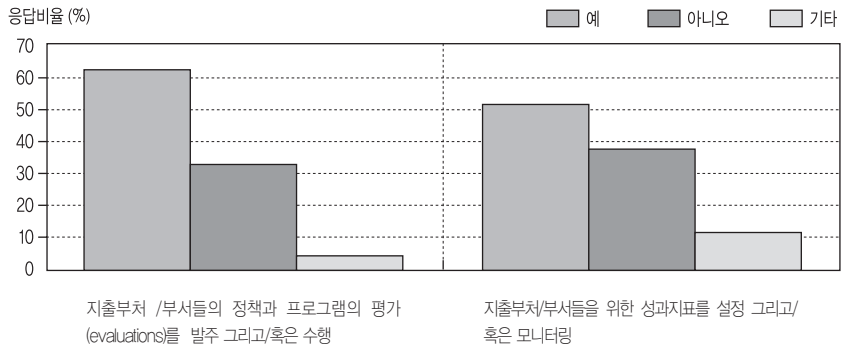
예산당국의 가장 보편적인
책무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는 일이다.

그다음이 성과정보를
재원의 배분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고
마지막이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일이다.

에서만 예산당국 내에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별도의 조직은 없지만, 집행부처의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조직이 성과정보도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예산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국가에 있어서는 대부분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외적인 국가로서 핀란드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핀란드는 매우 분권화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성과정보의 생산과 제도의 운영도 모두 일선부처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성과정보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에 강조점이 두어지면서, 2004년에 예산당국 내에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림 4] 예산당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특별 조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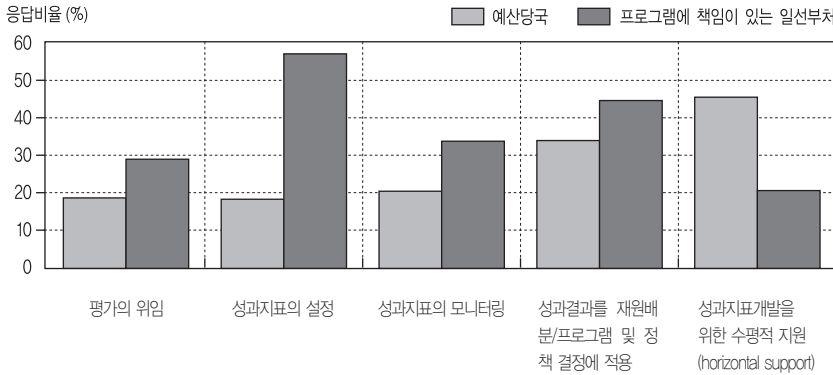
주: 28 개국중 27개국 응답.

3. 성과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한 책무

[그림 5]는 예산당국과 일선부처의 성과관리제도 관련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산당국의 가장 보편적인 책무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보편적인 일은 성과정보를 재원의 배분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고, 마지막이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일이다.

일선부처들의 경우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일이 보편적인 업무이다. 다음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평가와 관련한 발주는 주로 해당 부처나 감사기관에서 하고 있다.

[그림 5]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주: 28개국 응답.

성과정보를 개발하여 예산편성과 사업 운영과정에 도입하는 목표는 정부조직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에 두고 있다.

4. 성과관리제도의 목표, 문제점과 성공요인

이 장에서는 성과관리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제도 실행상의 문제점, 성공에 기여하는 요인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선사항들에 대해 소개한다.

1. 목표

성과정보를 개발하여 예산편성과 사업운영 과정에 도입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설문에 응답한 국가들은 다음의 목표들이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정부 조직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 의사결정과 미래의 우선 성과 목표치 설정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2차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출 삭감
- 사업간의 재원 배분을 위한 정보 제공
- 정부 조직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메커니즘 제공



특히 결과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기여와 연관시키는 문제는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야만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문제점

성과측정 도입시 봉착한 문제점들은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열할 수 있다.

- 결과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기여도와 연결시키는 문제
-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표를 고안하는 문제
-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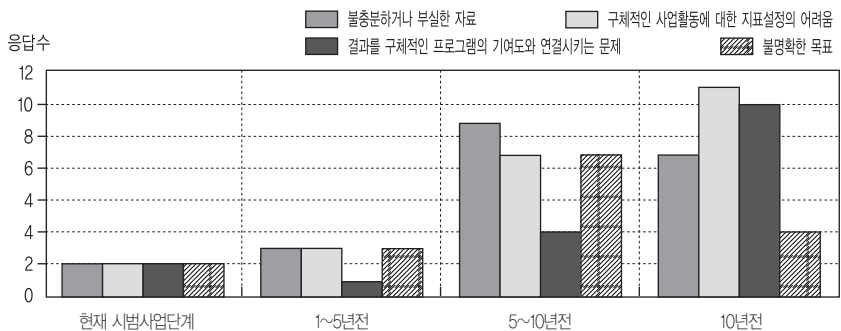
2차적인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 불분명한 목표
- 데이터의 부족이나 데이터의 질 문제

[그림 6]은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역사와 직면하는 문제점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본 것이다.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데이터의 질과 양의 문제가 지배적이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지표 설정의 문제와 결과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국가에서도 여전히 지표 설정과 결과지표의 해석 문제가 난제로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봉착하고 있는 성과정보의 개발과 개선 문제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결과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기여와 연관시키는 문제는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야만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결과에는 다양한 외부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의 구체적 기여를 보이는 일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6] 만약 성과지표 들이 개발되고 있다면, 이러한 지표들을 도입할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주: 28 개국 모두 응답.

3. 성공적인 프로그램과 성공 요인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만족할만한 성과정보를 개발하였다고 보고한 부처와 프로그램이 <표 2>에 나열되어 있다.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은 것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강한 리더십을 통한 지원
-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의 성격
- 정치적 압력

성과정보가 예산편성과 조직의 운영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적인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위해서는 조직의 행동 자체가 변화해야 하고 투입과 과정 중심의 문화에서 결과 중심의 문화로 바뀌는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분야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몇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가장 많은 성공 사례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이다. 이 분야들도 성과측정이 쉬운 분야는 아니지만, 정치적 압력이 가장 심한 분야들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수 년간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온 분야이다.

성과정보가 예산편성과 조직의 운영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적인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위해서는 조직의 행동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표 2> 양질의 산출/결과 지표들이 개발된 부처

국 가	분 야	부 처	정 부 조 직 / 청
오스트리아	재정/예산/재무	Federal Ministry of Finance	
	법	Federal Ministry of Justice	
벨기에	내무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보건	Health	The Food Agency
	사회안전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agencies): in relation with the agreements concerning management
캐나다	재정/예산/재무	Customs and Revenue Agency	
	State Reform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노동/고용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칠레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Board of Nursery Education (JUNJI)
	통신/정보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Undersecretary of Telecommunication
	문화/유산	Ministry of Education	Libraries and Museums Directorate (DIBAM)
핀란드	노동/고용	Ministry of Labour	
	보건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프랑스	재정/예산/재무	Ministry of Finance	
	재정/예산/재무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Directorate-General of Taxes
	법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investigation programme
	교육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School teaching programme



〈표 2〉의 계속

국 가	분 야	부 처	정 부 조 직 / 청
독일	기타	Ministry of the Interior	Federal Statistical Office
헝가리	보건	Ministry of Health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한국	재정/예산/재무	Tax Agency	
	문화/유산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환경	Ministry of Environment	
멕시코	보건	Ministry of Health	
	사회개발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뉴질랜드	법	Corrections	Department of Corrections
	교통	Transport	Land Transport Safety Authority
노르웨이	보건	Ministry of Health	Hospitals (DRG system, Diagnosis Related Grouping)
	교육	Ministry of Research and Education	University/college
	지방정부	Ministry of Municipalities	Counties and municipalities
포르투갈	보건	Health Ministry	Public hospitals
	교육	Education Ministry	Universities
슬로바키아	내무	Ministry of the Interior	
스페인	농업	Ministry of Agriculture	Integrated ministry and dependent agencies
스웨덴	환경	Ministry of the Environment	National Environmental Agency
	법	Ministry of Justice	Police, prosecutors, courts, and prison administration
	사회	Ministry for Social Affairs	
미국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tire agency
	외무	Department of State	Outcomes for a variety of hard to measure goals
	보건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표 3〉 부문별 결과 요약

분 야	응 답 수
농업(Agriculture)	1
통신/정보(Communications/Information)	1
문화/유산(Culture/Heritage)	2
교육(Education)	6
환경(Environment)	3
재정/예산/재무(Finance/Budget/Treasury)	5
외무(Foreign Affairs)	1
보건(Health)	7
내무(Interior)	2
법무(Justice/Legal Affairs)	4
노동(Labour/Employment)	3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1
사회(Social Affairs)	2
State Reform	1
교통(Transport)	1
기타(Other)	
총계(Total)	41

4. 최근 5년간의 동향과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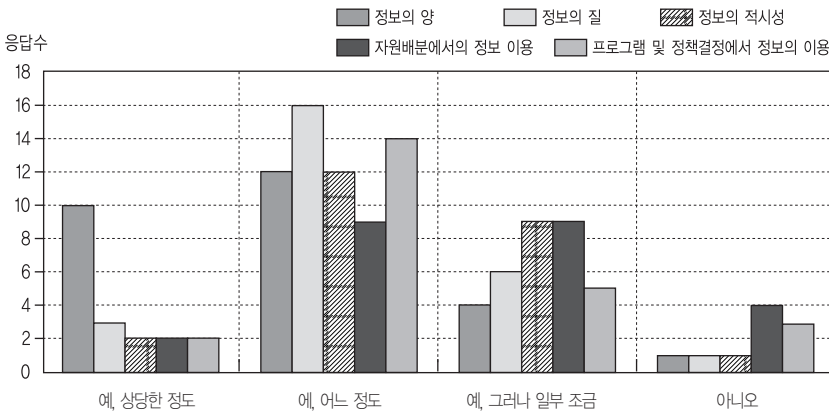
최근 5년간의 각국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 거의 75%의 국가에서 성과관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 75%가 아직 산출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 52%의 국가가 결과정보로 옮겨가고 있다.

[그림 7]은 데이터의 양, 질 그리고 적시성 문제와 성과정보의 자원배분과정에서의 이용이나 프로그램이나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이용에 관해, 최근 5년간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결과이다.

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되는 성과정보의 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과도한 양의 성과정보는 오히려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7] 지난 5년 동안 아래의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는가?



주: 28 개국 중 27개국 응답

데이터 양의 문제는 상당히 개선, 질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 그리고 적시성 문제는 그 보다는 작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으나, 자원배분에서는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되는 성과정보의 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과도한 양의 성과정보는 오히려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04와 2005 SBO Meeting에서 제기된 문제임). 우리나라의 시범사업에도 발견된 일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중요한 정보를 구분할 수 어렵게 만들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되기 어렵다. 영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해서 한가지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경우, 1998년 CSR 도입시에는 600여 개의 성과목표가 있었으나, 2004 Spending Review에서는 110개로 감소했다.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를 식별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이용

이 장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정보가 활용되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성과정보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환경에 대한 점검도 포함되어 있다. 설문 결과를 정리하기 전에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성과정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활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 보자.

1.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정의 및 분류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성과정보의 활용방식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형식적인 연계: 여기서는 성과정보가 예산서에 포함된 배경정보의 역할만 할 뿐이다. 성과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으며 원래 이용할 것으로 의도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간접적인 연계: 이것은 성과정보에 바탕을 둔 제도라고 이해될 수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정보와 더불어 성과정보가 중요한 정보의 하나로 활용되는 경우이다. 성과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과정보 자체가 반드시 재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과정보에 주어지는 가중치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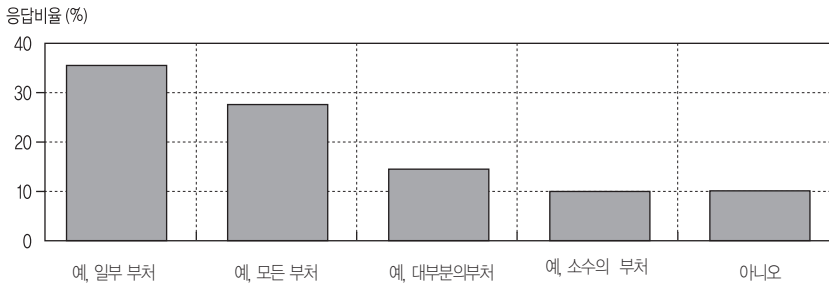
직접적인 연계: 성과단위에 예산배정이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예산 배정이 구체적인 성과지표에 근거한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이다. 이런 형태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제한된 OECD 국가의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고등교육의 경우, 특정 시험을 통과한 학생의 수에 근거하여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2. 예산과정에서 성과지표들의 이용

위에서 정의한 분류에 따라 OECD 국가들에서 성과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림 8]에 따르면, 79%의 국가에서 성과정보가 예산당국과 일부 또는 모든 일선부처 사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성과관리예산제도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2/3의 국가가 성과달성도가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답을 하고 있다.

[그림 8] 성과결과가 예산당국과 일선부처 사이의 예산에 관한 논의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는가?



주: 28 개국 중 27개국 응답

형식적인 성과관리 예산제도(Presentational performance budgeting): 아주 소수의 국가만 이 분류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성과관리제도 도입 초기의 국가이던지, 평가를 주로 활용하는 국가이다. 예외적인 경우로 아이슬란드가 있다. 아이슬란드는 성과정보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다. 성과정보는 책무성 제고나 일선부처를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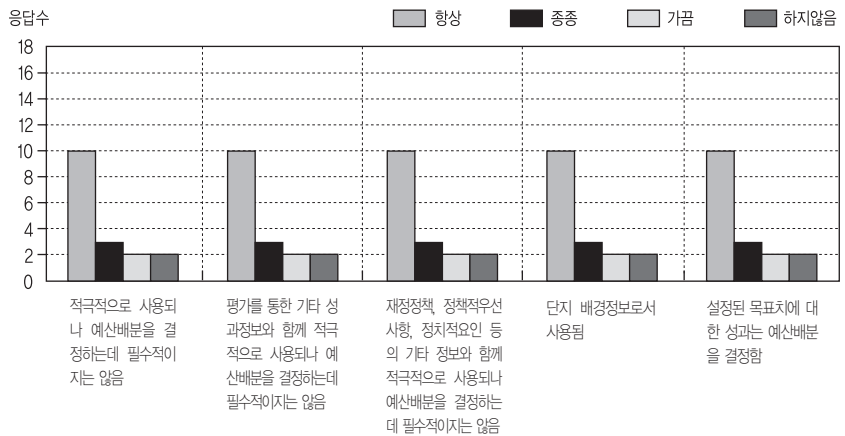
간접적인 성과관리 예산제도(Performance informed or indirect performance budgeting): 성과정보 자체가 예산편성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속한다.

직접적인 성과관리 예산제도(Direct performance budgeting): 직접적인 성과관리예산제도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2/3의 국가가 성과달성도가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답을 하고 있다. 이 방법은 소수의 국가가 주로 활용하고 분야도 교육과 보건 의료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표 4>는 직접적인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활용되는 국가와 분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는 성과정보의 활용 방식과 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9] 산출/결과지표 들은 예산당국에 의해 예산편성과정 중 언제 사용되고, 어떻게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



주: 28개국 중 26개국 응답

<표 4> 직접적인 성과예산제도를 사용하는 부처와 프로그램

국가	분야	부처	프로그램
칠레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Voucher system for child car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grants (direct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덴마크	보건	Ministry of Health	Diagnosis Related Grouping (DRG) in hospitals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Per capita funding for local clinics (primary health care)
핀란드	교육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echnical schools
헝가리	보건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	Hospitals
아이슬란드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education, occupational education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노르웨이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Teaching in colleges/universities
	보건	Ministry of Health	Nursing homes
포르투갈	병원	Ministry of Health	Financing of hospitals (DRG system)
스웨덴	대학	Ministry of Research and Education	Financing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교육	Education Ministry	Financing of universities
영국	교육	Ministry of Education	Production of basic academic exams
	무역/산업	Ministry of Industry	Swedish Patent Office
	무역/산업	Ministry of Industry	Swedish Company Registration Office
	무역/산업	Ministry of Industry	National Land Survey: The Cadastre Service
	보건	Department of Health	Primary care trusts
	노동/고용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The New Deal

직접적인 연계가 활용되는 경우는 산출이나 결과가 분명히 양적으로 표시될 수 있고, 지표와 비용에 대해 예산당국과 사업부처가 동의할 경우이다. 대부분의 정부 전체 차원의 성과관리제도에서는 간접적인 연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간접적인 연계의 문제점은 성과정보에 충분한 가중치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6년 SBO meeting에서의 주요 쟁점은 성과정보가 고위 의사결정자나 정치인에 의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였다. 체계적으로 성과정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되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성과정보가 무시되는 경우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예산당국이 가진 수단은 재정적 유인, 자율권 부여, 공적인 인정 등이 있을 수 있다. 재정적 유인은 성과에 따라 부처에 재정적인 보상이나 별칙을 주는 경우이다.

3. 예산당국이 활용하는 유인체계

여기서는 예산당국이 일선부처에게 성과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유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예산당국이 가진 수단은 재정적 유인, 자율권 부여, 공적인 인정 등이 있을 수 있다.

재정적 유인은 성과에 따라 부처에 재정적인 보상이나 별칙을 주는 경우이다. 자율권 부여는 부처에게 지출, 구매, 인력활용에 있어서의 통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권 신장과 연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원래 정신이지만, 현실에서는 성과 개선을 통하여 획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견해도 있다. 공적인 인정은 비교 가능한 사업이나 부처와의 성과비교 또는 자신의 과거 성과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국민이나 국회에 공개하는 것이다.

OECD설문은 재정적 유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과가 나쁜 사업이나 부처에 별칙을 주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성과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업의 성과가 나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하게 예산을 삭감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과정보의 개발이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난제임을 고려할 때, 이 위험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성과가 좋은 사업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적 상황과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긴축기라면 예산을 성과정보에 의해서만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어떤 나라의 예산당국에서는 일선 부처가 성과정보를 이용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려는 시도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의 증액이건 감액이건 간에, 강한 재정적 유인은 일선부처의 행동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성과정보를 감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위험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인의 문제뿐 아니라, 성과정보와 비용을 연계시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적절



성과정보를 통하여 미흡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당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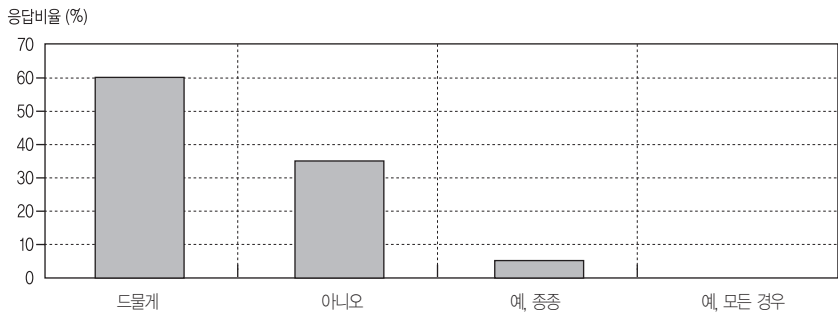
한 비용회계체계가 없이는 이런 연계가 곤란하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과정보를 활용해서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성과정보의 예산 배정에서의 활용

[그림 10]은 96%의 국가가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예산당국이 폐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직 세 나라만이 미흡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을 종종 폐지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스라엘, 폴란드와 한국이다. 11개 국가는 담당 부처의 결정 사항이지 예산당국의 결정 사항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그림 10] 예산당국은 미흡한 성과가 나타날 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가?



주: 28 개국 중 25개국 응답.

미흡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로 각국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담당 부처의 결정사항이다.
- 성과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의 하나이다.
- 정치적 저항이 있다.
- 사업이 정치적인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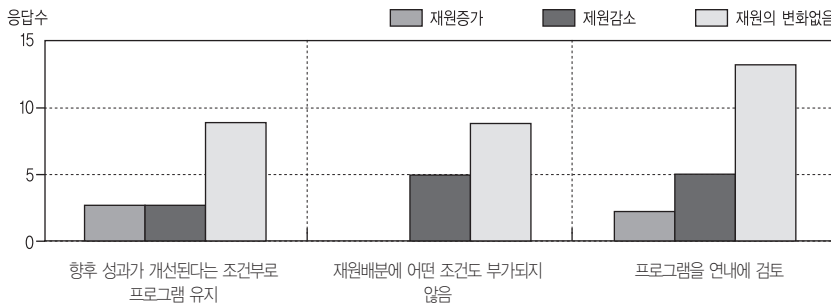
성과정보를 통하여 미흡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당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예산 삭감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78%의 국가에서 예산당국이 성과정보를 이용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성과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이나 조직의 수장의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예외적인 국가는 덴마크와 영국이다.

그렇다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그림 11]이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경우 예산은 현 상태로 유지되고 연중에 재검토를 받게 된다. 그 다음으로 빈번한 조치는 미래의 성과를 조건부로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그림 11] 만약 미흡한 성과결과가 나온 프로그램이 예산당국에 의해 폐지되지 않는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는?



주: 28개국 중 22개국 응답

성과정보를 예산과 기계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아직 많은 국가들이 성과정보 개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부정확한 정보와 예산을 기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기계적인 연계가 일선 부처에게 성과 향상을 위한 바른 유인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기계적 연계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이 일선부처의 성과 개선을 위해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성과정보 활용이나 활용 미비의 요인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 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한 정치적 지원(압력)
-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의 종류

기계적 연계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이 일선부처의 성과 개선을 위해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형태는 예산과 성과정보의 간접적인 연계이다. 성과정보 자체가 예산 배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요소의 하나라는 것이다.

기여하는 요인 중 부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해당 분야의 재정 압박
- 정보의 질

정치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부각되고 있다.

반대로 예산당국이 성과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 성과정보를 예산편성과정에 연계 시키는 메커니즘의 부재

부차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의 부적절성
- 목표의 불명확성

설문조사 결과는, 성과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요소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정보 활용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와 성과정보의 적절성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5. 부처들에 의한 성과정보의 이용

지금까지는 예산당국에 의한 성과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 성과정보 활용의 목적이 사업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선부처의 활용이 중요하다. 실제 많은 국가에 있어서 부처가 주된 성과정보의 개발자와 활용자이다. 부처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정보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부처와 그 산하기관과의 관계에서의 성과협약에서 뚜렷이 발견되고 있다.

부처의 성과정보 활용도를 결정하는 요인도 위에서 언급한 예산당국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서비스와 재화의 종류와 부처 내의 최고 의사결정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성과정보를 개발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형태는 예산과 성과정보의 간접적인 연계이다. 성과정보 자체가 예산 배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요소의 하나라는 것이다.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부처에게 재정적 유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는 드물다. 예산당국이 직접적인 연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소로, 정치적 의지의 결핍과 예산당국의 제도적 권한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예산당국이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데 신중한 이유는, 기술적인 이유 이외에도 부처의 행동에 미칠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2006 SBO 회의에서도 덴마크의 교육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활동에 근거한 예산편성

(activity based budgeting)인 taximeter 모형을 제외하고는, 성과정보와 예산편성을 직접 연계시키는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도 예외적인 국가 중의 하나다. 예산과 성과정보 간의 기계적인 연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과정보 활용의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한 활용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많은 주목을 끌었다. 미국의 PART의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평가점수를 예산에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결과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최근에는 성과정보와 예산 간의 상관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는 점수나 등급으로 평가결과를 환원시키는 데에도 있다고 보여진다. 성과지표가 다양하게 제시되는 경우 보다 점수나 순위 등을 통해 성과정보가 제시될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되기 용이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런 결과가 바람직한지는 다른 변수를 고려한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최근에는 성과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한 곳에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모아서 공개하고, 미국의 경우는 PART 결과를 공개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비효과적인 프로그램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과의 연계 외에 정보를 공개하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OECD 국가들의 현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유용한 성과정보의 개발에는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경험이 있는 국가도 계속된 투자와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 성공적인 성과정보의 개발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최고 의사결정자의 리더십이다. 최고 의사결정자의 정치적 지원이 없이는 성과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무시되기 쉽다. 더불어 입법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 성과 정보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성과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영국에서는 성과정보 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성과정보와 연계된 유인이 커질수록 성과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성과정보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채 성과정보와 연계된 유인이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과정보 활용의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한 활용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많은 주목을 끌었다.



정책토론투리포트

■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 본 원고는 2006년 6월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정책토론회 개요

□ 일시: 2006. 6. 22(목) 15:00~17:30

□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5:00~15:10 인사말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5:15~17:15 주제발표 및 토론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표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희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운찬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이병대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단장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 순)

17:15~17: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30 폐회

I. EITC 도입 배경

1. 배경 및 필요성

-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층의 문제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발전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
- 국가는 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 등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하여야 함
- 동시에 저소득층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4대 사회보험과 절대빈곤층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이원화
-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상당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으로 노령·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으로 보호
- 그러나,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취약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면서 탈빈곤을 지원할 필요
- 이에 2004년 이후 정부차원에서 EITC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도입을 결정
 -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기존의 재정지출 정책과 조세지원 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노동유인과 행정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가 가능
- 구체적인 EITC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관련 제도 구축방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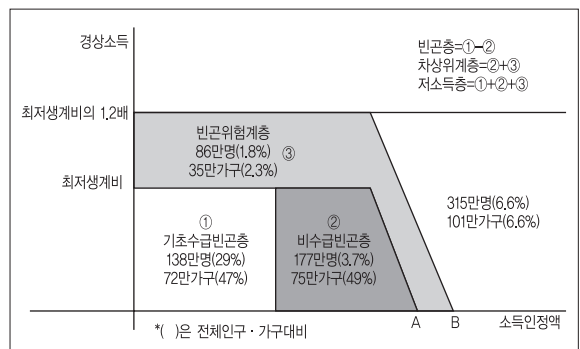
가. 저소득층 실태

- 2003년말 현재 최저생계의 1.2배 이하인 저소득층은

전체인구의 8.4%인 401만명, 182만 가구로 추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은 138만명, 72만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전체 인구의 5.5%인 263만명, 110만 가구

[그림]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저소득층 규모



A : 소득인정액(소득평균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자료: 2005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상위계층의 경제활동 실태

- 차상위계층 가구주 중 취업자 비율은 48%로 일반층의 91%보다 낮은 수준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기초수급자) 33%보다 높은 수준

<표> 가구주의 경제활동 실태

(단위: 원)

	합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일 반 층	100	91.1	63.2	27.9	1.2	7.7
차상위계층	100	47.7	26.5	21.2	4.5	47.8
기초수급자	100	32.9	23.7	9.2	3.3	63.7

주: 일반층은 전체 계층 중에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을 제외한 가구

- 차상위계층의 임금근로자는 임시·일용직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일반층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과 고용 불안 겪고 있음

〈표〉 소득계층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원)

	일반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가구
상용직(%)	73.5	2.8	15.2
임시직(%)	13.9	28.1	27
일용직(%)	12.5	58.9	67.7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률이 낮음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각각 29%, 25%만 가입되어 있어 일반층의 63%, 44%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수준
 -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가입률도 차상위계층이 각각 50%, 99%로 일반층의 75%, 100%보다 낮은 수준
 - 특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고용주와 분담하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

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현황

- 현재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최저생활을 보장받음
- 동 제도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
 -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 교육 · 의료 · 주거비용 등을 지원
 - 최저생계비는 2006년 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이후 수급인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예산은 증가 추세
 - 부양가족 기준 적용 등으로 수급인원이 제한되나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표〉 기초수급자 추이

(단위: 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급인원 (만명)	147	135	138	143	147
지원예산 (조원)	3.2	3.4	3.5	3.8	4.4
1인당 월지원액(천원)	221	251	254	236	299

- 기초수급자와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차상위계

층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비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대부분

- 의료비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과 희귀난치병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며 2006년 예산은 738억원으로 10만명을 대상으로 함
- 「희망 한국 21」계획에 의해 차상위계층 일부에 의료급여를 단계적 · 선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일반 차상위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근로연계형 지원제도(EITC)를 도입하여 근로를 통한 능력개발 등 중장기적 빈곤탈출을 지원할 필요
- 정책급여의 소득지원보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 사회적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이 대체적 연구결과

2. 외국 EITC 운영사례

-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서 시행중으로 각국의 사회보장체계, 도입목적 등에 따라 차이를 보임

가. 미국 EITC

-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보장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1975년 도입
- EITC는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진보 ·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
 - 복지재원 증가에 따른 국민적 지지확보에도 유리하였기 때문
- 클린턴 행정부(1990년대)에서 급여수준과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소득지원 기능을 강화

〈표〉 소득계층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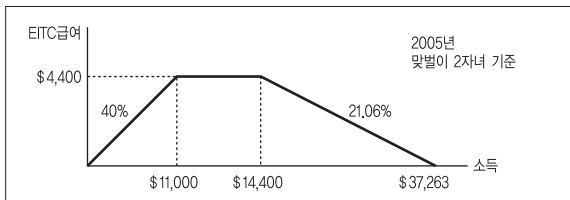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1975년	2005년	비고
최대급여액	400 달러	4,400 달러	11.0배
최대 적용범위	8,000 달러	37,263 달러	4.7배
적용 가구	620만 가구(8.5%)	2,100만 가구(18.6%)	3.4배
예산 규모	12억5천만 달러(0.38%)	380억 달러(0.89%)	30.4배

주: ()는 전체 가구·예산대비 비율, 적용가구 및 예산규모는 1975년과 2004년 비교치



- 모형형태는 노동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1978년 이후 점증-평탄-점감구간으로 구성
- 시행초기에는 평탄구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점증-점감 변화구간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평탄구간 도입
- 2005년 맞벌이 2자녀 부양기준으로 최대급여는 연 \$4,400수준이며 최대적용 소득은 연 \$37,263임
- 소득증가에 따른 급여증가율을 나타내는 점증률은 40%, 점감률은 노동유인 저해효과를 고려하여 이 보다 낮은 21.06%수준
- 2005년 회계연도 EITC 신청금액은 397억달러이며 환급액은 346억달러



나. 영국 WTC

-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3년에 기존의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WTC(Working Tax Credit)와 CTC(Child Tax Credit)로 개편하고 기존 아동수당, 실업수당 등과 통합 운영
- 빈곤아동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아동관련 수당 등이 중요한 소득지원의 역할을 수행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미국의 경우와 달리 WTC제도는 최소 근로시간요건을 두고 있음
 - 즉 부양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 기타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필요로 함
- 급여산정방식
 - 연소득 £5,220까지 최대급여액 지급, 이후 구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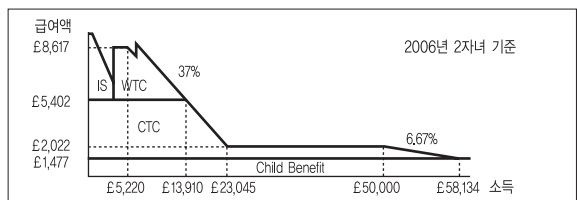
37%씩 급여 감소

- 보육료 지원 : 맞벌이 부부 자녀보육료의 70%(주당 £300한도)

〈표〉 WTC 구성요소와 급여액(2006)

구 성 요 소	지급액(연간)
기본 요소	£1,620
부부(편부모) 요소	£1,595
30시간 이상 근로	£660
장애 요소	£2,165

- 2006년 기준 WTC 최대급여액은 연 £3,875로 설정되었으며 수혜 대상가구는 135만 가구(2004년), 소요예산은 연 £47억(2004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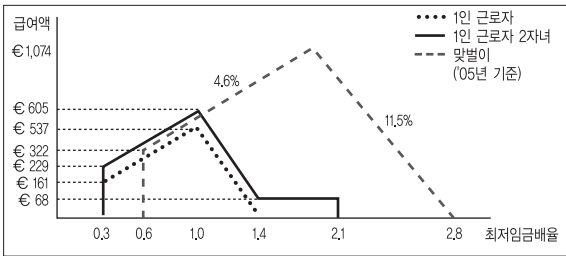
* IS(Income Support) : 최대급여 연 £4,540
 * CTC(Child Tax Credit) : 최대급여 연 £3,925
 * Child Benefit : 첫 아동 연 £884, 둘째 이후 연£593

다. 프랑스 PPE

- 복지 수혜자들의 취업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2002년에 PPE(Prime pour l'Emploi)를 도입
- 모형 형태
 - 최저임금으로 일할 때 연간 얻을 수 있는 소득 수준에서 최대급여를 지급하고, 최소 소득구간을 설정하여 근로유인을 제고
 - 비생계형 소득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최소 소득구간을 설정
 - 평탄구간 없이 점증·점감으로 구성된 기본형에 아동 1인당 정액급부(1자녀당 연 €34)를 합한 모형
 - 최저임금 0.3배(연 €3,507) 이하 소득 : 지급대상에서

제외

- 최저임금 0.3배~1.0배(연 €11,689)소득 : 점증률 4.6% 적용 (최저임금 1.0배 소득 수준에서 최대급여 연 €537)
- 최저임금 1.0배~1.4배(연 €11,689~€16,364) : (연 €16,364-실제소득)×11.5%
- 최저임금 1.4배~2.1배(연 €16,364~€24,547) : 아동 1인당 정액급여(연 €34)
- 최대급여 수준은 아동 2인 기준 연 €605이며 2004년 기준 대상가구 수는 900만 가구, 소요예산 연 €22억 수준



<참고> 각국 제도의 비교

	미국 EITC	영국 EITC	프랑스 EITC
도입연도	1975년	2003년(WFTC를 대체)	2002년
재산기준	· 이자·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 연 \$2,700 이하	없음 * WFTC는 이자· 배당소득 연 £8,000 이하	없음
최대적용 소득구간 (1인당 GNI대비)	연 \$35,458(04년) (89.0%)	연 £13,910(04년) (69.9%)	연 €24,547(04년) (92.0%)
최대급여 소득구간 (1인당 GNI대비)	연 \$10,750~\$15,040(04년) (27.0%~37.8%)	연 £5,220까지(04년) (26.2%)	연 €11,689(04년) (43.8%)
최대급여 아동2인기준 (1인당 GNI대비)	연 \$4,300(04년) (10.8%)	연 £3,875(04년) (19.5%)	연 €605(04년) (2.3%)
점증률	40%	점증구간 없음	4.6%
점감률	21.06%	37%	11.5%
수급가구 (2004년)	2,100만 가구 (전체가구의 18.6%)	135만 가구 (전체가구의 5%)	900만 가구 (전체가구의 26.5%)
소요예산 (총정부지출대비율) (2004년)	\$380억 (0.89%)	£47억 (1.72%)	€22억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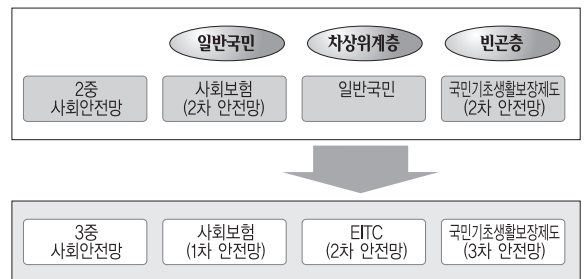
3. EITC 제도 도입의 의의

-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중점지원
- 차상위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사회안전망체제를 2중(2-Tier)구조에서 3중(3-Tier)구조로 확충
- 현행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조에 EITC 추가

- ① 일반국민은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을 1차적으로 보호
- ② 차상위계층은 EITC를 통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빈곤층과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활 보장

- 기존의 소득지원형 복지정책(Welfare)에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Workfare)으로 개편





II. EITC 도입 방안

1. 적용대상

- EITC제도 도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객관적인 소득과 악 여부이므로 이를 고려한 적용대상 설정이 필요
-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을 주된 기준으로 이용함에 따라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제도 전체의 신뢰성을 결정
- 제도시행을 위해서 적용대상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과악이 필요
- 소득과악여건은 근로자, 사업자, 자영농어민 등 근로 유형에 따라 편차가 커 일괄적인 시행에 어려움 존재
- 시행초기에는 소득과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과악률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가. 근로자

- 임금근로자 1,489만명 중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1,073만명으로 2004년 기준 72% 수준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소득과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내역과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조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소득과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초기단계부터 적용

나. 사업자

- 2004년 개인사업자 436만명 중 기장에 의한 신고자는 114만명(26.1%)으로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비율이 낮아 현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 개인사업자의 소득과악률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EITC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표〉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현황(2004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납세인원)	확정신고대상			과세미달 무신고자	
	계	기장신고	추계신고		비사업자등
436만명	229만명	114만명	99만명	16만명	207만명
(100.0%)	(52.5%)	(26.1%)	(22.7%)	(3.7%)	(47.5%)

다. 특수직 사업자

- 특수직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분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자라 할 수 있음
-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등을 특수직 사업자로 통칭
 -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로 보는 견해도 있음
-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과악이 어려움
- 2006.1월부터 사업장제공자에게 특수직 사업자(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등 8개 업종)의 과세자료(소득금액 등)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 소득과악정도에 따라 사업자 적용단계에서 EITC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라. 농·어민

- 영세 농업구조로서 소득과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과악을 전제로 하는 EITC 적용이 곤란
- 농민의 60% 이상이 1ha 미만을 경작하고 있으며 작물 재배업의 경우 현재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 현재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동 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도 필요
 - 2005~2009년 5년간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면제하

고 있으며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업직불제 등 소득 지원제도 존재

- 중장기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소득과약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농어민 지원정책의 방향,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마.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2005년말 기준 약 34만명 수준
-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EITC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보호대상을 내국인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내국인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근로자가구로 한정하여 시행함을 반영
- 도입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EITC 정착단계에서 확대 여부 검토
- 2005년 외국인과 혼인은 4.3만건
- 외국의 경우에도 나라별로 적용에 차이
- 미국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취업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배우자가 내국인(영주권자)인 경우로 제한
- 캐나다는 배우자가 내국인(영주권자)인 경우 적용
- 영국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표〉 외국인 근로자 현황(2005)

(단위: 만명, %)

	계	취업가능 가족동반능력		취업가능 가족동반 불가능		불법 체류자
		전문기술인력	비전문취업자	연수취업자	산업연수생 등	
근로자수	34	2	5	5	4	18
비율	100	5.9	14.7	14.7	11.8	52.9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 수급 자격

- EITC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규모가 결정되나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 기준외 부가적인 기준을 이용
- 정부지원 필요성과 출산율 정책 등의 지원을 위한 아동 수 기준
- 가구의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총소득 기준
- 소득과약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산기준
 - 주택기준과 일반재산 기준을 동시에 적용

가. 아동 수 기준

-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 2인 이상 부양 가구로 한정
- 아동 2인 이상 부양 근로자가구는 233만 가구로 전체 근로자가구 857만 가구의 27.1%

〈표〉 부양아동별 근로자가구 현황(2004)

전체 근로자가구	18세 미만 부양아동 없는 가구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			
		합계	아동 1인 가구	아동 2인 가구	아동 3인 이상 가구
857만가구	471만가구	386만가구	153만가구	205만가구	28만가구
100%	55%	45%	17.7%	23.9%	3.2%

- 외국의 경우 아동부양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최근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경우에도 지원액은 미미
- 미국의 경우 1975년~1993년 기간동안 아동 있는 가구만 적용
 - 1991년부터 아동 1인,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1994년 이후에는 아동 없는 가구도 적용
- 영국은 1971년~2002년기간 동안 아동 있는 가구만 적용
 - 2003년 이후에는 아동 없는 가구도 적용



- 프랑스는 아동 없는 가구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의 주 목적이 소득보전이러기 보다 근로유인에 있기 때문
- 호주·뉴질랜드는 아동 부양가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
- 부양아동의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
- 아동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상 연령기준과 통일
-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적용
- 미국의 경우 아동연령조건은 19세 미만(학생은 24세 미만)이며 영국은 16세 미만(학생은 18세 미만)으로 규정
-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

나. 총소득 기준

1) EITC 적용 최대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 최대소득범위는 상대적 빈곤층의 범위,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1인당 GN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의 경우 적용 최대소득은 최초 시행한 1975년 연 \$8,000로 설정하고 10년간 연 \$8,000~10,000 수준을 유지
- 1994~1996년간 적용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1997년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
- 적용 최대소득은 1인당 GNI의 90~100%수준에서 안정적 변동
 - 2005년 적용 최대소득은 연 \$37,263(아동 2인 부양 부합산신고 기준)로 1인당 GNI 대비 89% 수준

〈표〉 EITC 최대적용소득과 1인당 GNI 비교

(단위 : \$, %)

	1975	1975	1975	1975	1975	1975	1975	1975
최대적용소득	\$8,000	\$11,000	\$18,576	\$21,250	\$25,296	\$28,495	\$34,178	\$37,263
최대적용소득 / 1인당 GNI	105.7%	97.1%	88.3%	90.5%	95.8%	99.1%	90.9%	89.0% ('04년)

주: 아동 2인 부양 부부합산신고 기준

- 적용 최대소득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대비 비중 등을 감안하여 연 1,700만원 수준이 바람직
- 전국가구 중위소득(3,380만원)의 50%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과 유사
 - EITC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
 - OECD 소득분류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을 포함
 - 2007년 예상 1인당 GNI(1,805만원)의 94% 수준으로 미국의 현재수준을 소폭 상회

〈표〉 전국가구 소득계층별 분류

분류	중위소득기준 (OECD 기준)	2007년 예상 전국가구 중위 소득(3,380만원 기준)
상류층	150% 이상	5,070만원 이상
중상층	70~150%	2,366만원~5,070만원
중하층	50~70%	1,690~2,399만원
상대적 빈곤층	50% 미만	1,690만원 미만

주: 2005년 전국가구 중위소득 연 3,063만원을 과거 2년간 평균증가율(5%)을 반영하여 추정

2) 총소득의 범위

- EITC 적용 여부 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하여 산정
-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는 것은 대부분 실비변상적 성격과 공공부조적 성격인 점을 감안
- 총소득에는 사업·근로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 및 사업소득 성격인 산림소득이 포함
-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불과하고 고액인 경우 재산기준에 의해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

■ 소득종류별 총소득 산정기준

-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총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총수입금액

을 총소득으로 함

- 미국의 경우도 EITC 적용 기준이 되는 “조정된 총소득”(AGI : Adjusted Gross Income) 산정시 사업용 경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교육비공제·보험료공제·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는 차감하지 않음

다. 재산기준

- EITC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유인형 복지 제도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재산기준보다는 자본소득을 부가적인 지표로 이용
- 미국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투자소득 규모가 연 \$2,700 초과할 경우 적용 제외(05년 기준)
- 영국은 2003년까지 시행한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에서는 £8,000의 금융재산 기준이 있었으나 WTC 개편시 폐지

- 소득과약이 미흡한 우리 현실 등을 감안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재산기준 필요
- 재산기준은 주택과 일반재산으로 분리하여 적용

1) 주택보유 여부

-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무주택가구를 지원
- EITC 도입 초기에는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부양아동이 있는 총 근로자가구(386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170만 가구로 44.5%에 해당

〈표〉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대상가구의 변화

구분	이동수	총대상가구	소득 1,700만원
			이하 가구
부양아동 있는	1인이상	386만 가구	99만 가구
총 근로자가구	2인이상	233만 가구	56만 가구
국민주택규모 이하 보유	1인이상	356만 가구	91만 가구
근로자가구 (무주택 포함)	2인이상	214만 가구	53만 가구
무주택	1인이상	170만 가구	54만 가구
근로자가구	2인이상	97만 가구	31만 가구

2) 재산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직접 배제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으나 복잡한 소득환산과정이 필요한 문제점

〈표〉 재산만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4인가구 대도시 기준)

재산종류	재산가액 ①	공제액 ②	소득환산율(월) (년 기준) ③	재산환산소득(월) (년 기준) (①-②)×③
일반재산 (주택, 토지)	7,100만원	3,800만원	4.17% (50.0%)	140만원 (1,700만원)
금융재산	6,600만원	4,400만원	6.26% (75.1%)	140만원 (1,700만원)
자동차	139만원	-	100% (1,200%)	140만원 (1,700만원)

- 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인 가구로 EITC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대상 재산만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1억원 수준
 - 일반재산 상한선 7,100만원과 평균부채 수준 2,800만원을 고려할 경우 차상위계층의 재산기준 상한은 약 1억원
- 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 기준)이 9,269만원 수준임을 감안

〈표〉 전국 중소형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2006년 1월)

구분	50㎡~60㎡ (15~18평)	60㎡~85㎡ (18~25.7평)
전체	7,247만원	9,269만원
아파트	8,314만원	10,269만원
연립	3,794만원	4,967만원

주 : 전국 871만호의 주택중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582만호(67%)

3. 수급 단위 및 수급액 결정

가. 수급단위 : 가구단위 운영



- 가구단위로 운영하여 가구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외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가구단위 제도 운영
- 개인단위 소득세 체계라도 EITC제도는 가구단위 제도 운영 가능
 - 우리나라는 개인단위 과세체계이나 EITC를 가구단위로 운영하더라도 국제청 전산능력을 확충하면 집행상 큰 어려움 없음
 - 다른 국가에서도 과세단위와 EITC 급여 단위는 별개로 운영
 - 영국 : 과세체계는 개인단위, EITC 운영은 가구 단위
- 부부와 부양아동으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구 포함)를 EITC 적용대상 가구로 봄
 - 성인 부부의 근로에 의한 아동 부양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가구분리 가능성을 고려
 - 외국도 가구 구성원을 부부와 부양아동으로 규정
 - 아동의 부양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상 기준에 따름
 - 단, 재산기준은 재산분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대단위 적용

나. EITC 급여 결정 방법

- 부부의 근로소득 합산액을 기준으로 EITC 급여 결정
- EITC 급여산정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한정
 -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사회보험료 부과기준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되어 2008년부터 시행 예정
 - 미국·영국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으로 EITC 급여 산정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경우
 - EITC 급여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
 -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EITC 초기 시행단계의 제도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산도 간편
 - 사업소득은 총소득에 포함하여 EITC 배제기준 해당 여부 결정에 이용
 - 사업소득이 배제기준으로만 작용하므로, 사업소득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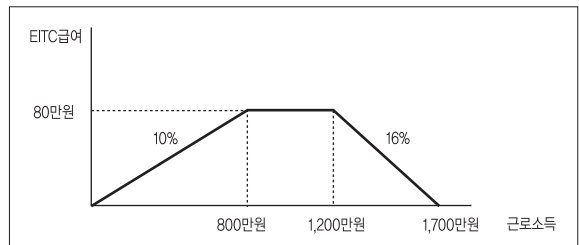
뢰도가 낮은 현 단계에서 EITC 급여액에 대한 마찰을 완화

III. EITC 도입 모형 설계

1. 도입 모형

가. 모형 형태

- EITC 시행국들은 EITC의 정책 목적과 사회보장제도와 의 관계,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상이한 모형
 - 근로유인을 위해 점증구간 설치 : 미국, 프랑스
 -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 점증구간 없이 평탄 - 점감 형태의 모형 운용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 - 평탄 - 점감 형태의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
 - 영국·호주 등은 점증구간이 없고, 일정수준의 최대급여 후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를 삭감하는 점감구간만 있어 근로유인 미약
 - 프랑스는 점증구간이 있으나 가구 구성원별로 급여를 산출하는 등 제도가 복잡하여 채택하기 어려움



나. 적용 최대소득 구간

- 적용 최대소득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대비 비중 등을 감안하여 연 1,700만원 수준이 바람직
- 전국가구 중위소득(3,380만원*)의 50%수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과 유사
 - * 2005년 전국가구 중위소득 3,063만원을 과거 2년간

평균증가율(5%)을 반영하여 추정

- EITC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
- OECD 소득분류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을 포함

다. 점증구간 상한소득 및 평탄구간 상한소득

- 근로자 평균임금의 40%~60% 수준인 상대적 저소득 근로자가 최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800만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법정 최대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 수준(2007년 예상)
- 1,200만원은 가구당 평균 근로인원 1.5명이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수준
- 점증구간 상한소득과 평탄구간 상한소득은 1인당 GNI 대비 44%, 66%수준으로 미국(27%, 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표〉 점증구간·평탄구간 분석(아동 2인 가구 기준)

점증구간 상한소득(A)	평탄구간 상한소득(B)	점증구간, 평탄구간비교 (B/A)	최저임금(C)과의 비교 (2007년 800만원 가정, 주 40시간 근무기준)		1인당 GNI*와의 비교 (2007년 1,805만원 (D))	
			A/C	B/C	A/D	B/C
800만원 (\$11,000)	1,200만원 (\$16,370)	150% (149%)	100% (85%)	150% (114%)	44% (27%)	66% (36%)

주 1: 2007년 1인당 GNI : '05년 1인당 GNI(1,669만원)에 '06~'07년간 연평균 4% 증가 가정
 2 ()은 2005년 미국 아동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기준

라. 점증률과 최대급여액·점감률

- 점증률 10%, 최대급여액 80만원
- 점증률은 근로자 사회보험료(7.2%) 수준 등을 감안하여 10%로 설정
 -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 7.19%(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24, 고용보험 0.45)
- 최대급여액은 점증구간 상한소득에 점증률을 곱하여 산정
 - 80만원(점증구간 상한소득 800만원×점증률 10%)
 - 2007년 1인당 GNI(예상) 대비 4.4%, 최저임금 연간소

득 대비 10% 수준

- 시행 초기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최소금액 수준으로 설정하여 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하고 비적용자와의 불형평 문제 완화
- 시행초기 최대급여가 커지면 부정수급 등 부작용 우려 (EITC를 30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부정수급이 총지급액의 약 30%에 달한다는 조사 보고)
- 향후 사업자 계층으로의 제도 확대에 따라 사업자의 사회보험료 수준을 감안하여 점증률을 점차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
- 미국도 1975년 시행후 10년간은 사회보험료 보전 수준에서 점증률을 10%로 유지했으며 1994년 이후부터 점증률을 인상하여 소득지원 강화

〈표〉 미국 EITC의 점증률과 사회보험료율 비교

	1975	1979	1987	1993	1996	2005
점증률(A)	10%	10.0%	14.0%	19.5%	40.0%	40.0%
사회보장세(B)	11.7%	12.26%	14.3%	15.3%	15.3%	15.3%
A/B	85.5%	81.6%	97.9%	127.5%	261.0%	261.0%

- 점감률 : 근로저해 효과 완화를 위해서 낮은 점감률이 바람직하나 시행초기 예산제약 등을 고려
- EITC 적용 최대소득을 1,700만원으로 하고, 평탄구간을 800만원~1,200만원으로 하는 경우 점증구간폭(800만원)보다 점감구간폭(500만원)이 짧아 점감률이 점증률보다 높아지게 됨
- 평탄구간 상한소득 1,200만원, 적용 최대소득 1,700만원, 최대급여 80만원인 경우 점감률은 16%
 - 80만원 ÷ (1,700만원 - 1,200만원) = 16%
- 점감률은 20% 수준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점감률이 20% 이상일 경우 점감구간 내에 위치한 근로자의 한계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35%)보다 높게 될 가능성
 - 점감률 20%시 한계세율 = 점감률 20% + 사회보험료 7.2% + 소득세율 8% = 35.2%



〈표〉 미국 EITC 아동 2인 가구 기준 점감률 변화

(단위: %)

	1975~ 1978	1979~ 1984	1985~ □1986	1991	1993	1995	1996~
점감률	10	12.5	12.22	12.36	13.93	20.22	21.06

마. 소요예산

- 제시된 EITC 도입 모형을 적용할 경우 대상가구수는 약 31만 가구, 소요예산은 연 1,500억원 수준

2. 제도 확대 및 소요재원 조달

- 제도 확대의 우선순위는 소득과약 측면, 형평성 측면, 급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소득과약은 EITC 적용대상·급여수준 결정 등에 필요한 전제요건
 - 제도의 형평성은 합리적인 적용대상의 설정으로 높일 수 있으며 EITC 조기정착을 위해 중요
 - 급여의 실효성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EITC 급여의 충분성
- 요소별 상대적 중요성은 형평성이 급여수준보다 우선
 - 근로를 통한 복지제도에서의 탈피유인 제공,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등을 위해 적용대상의 확대가 우선 요구됨
 - 형평하지 못한 급여인상은 EITC제도 정착에 불리
 -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양아동 수 제한 및 재산기준의 완화가 필요
 - 무주택 요건의 폐지 등 재산기준의 완화와 모든 부양아동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구로의 제도 확대가 우선 시행될 필요
 - 사업자로의 확대는 소득과약을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
- 다만 무자녀가구로의 확대는 성인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지원의 당위성이 낮으므로 사업자까지 제도 확대 이후에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성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득지원의 필요성이 낮음

- 지원하더라도 근로유인 제고측면의 낮은 급여수준 설정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노동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필요
- 급여인상은 사업자로의 확대시기 이후가 바람직
- 충분한 급여지급은 저소득가구의 사회보험료를 보전하고 나아가 소득지원 효과를 강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에 대해 EITC를 시행(1975년)한 미국의 경우에도 실질급여의 유의미한 인상(1987년 550\$→ 851\$)과 무자녀가구로의 확대(1994년)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
- 소요재원은 적용대상 범위와 급여수준에 따라 증가
 - 부양아동이 2인 이상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단계에서는 연간 1천 5백억원 수준 재원소요 전망
 - 부양아동 1인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고 무주택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연간 4천억원 소요예산
 - 적용대상을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매년 약 1조원 이상 소요 전망

〈표〉 제도확대에 따른 예산규모

재산종류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7~'09년)	2단계 ('10년~'12년)	3단계 ('13년부터)	4단계
근로자				→
자 명	무주택자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사업자	아동 2인 이상	-		→
특수직	-	-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사업자	-	-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전체가구 대)	약 31만 가구 (1.8%)	약 90만 가구 (5.3%)	약 150만 가구 (8.8%)	약 360만 가구 (21.2%)
비)	약 1천5백억원 (0.02%)	약 4천억원 (0.05%)	약 1조원 (0.12%)	약 2조 5천억원 (0.30%)
연간 소요예산 ('05년 GNI대비)	• 과세미달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소득과 약을 제고	• 근로자, 사업재(특수 직 포함) 소득과약 률 제고	• 사업재(특수직 포함) 소득과약을 제고	• 사업재(특수직 포함) 소득과약을 제고
역점 추진				

주: 2005년 GNI : 805조원

- EITC 적용단계별로 재원조달방법을 다양화
- 근로자 적용단계(1, 2단계)에서는 소득세 자연증가분을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재원조달 가능
- 사업자 시행단계 이후(3, 4단계)에는 비과세·감면의 축소·폐지 등 별도 대책 마련 필요

IV.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EITC 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운영방식
 - 소득이 최저생계비(2006년 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생계비 미달액을 보충해주는 소득지원 제도
 - 현금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선)에 미달하는 만큼을 보충지원
 - 근로유인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사업 참여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2006년 2만명, 216억원)
 -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10% 자활장려금 제도는 미실시
 - 2종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와 5종의 현물급여(교육·의료·자활·해산·장제)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급여방식
 - 기초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면 현금·현물급여 중단
- 기초수급가구 현황
 - 2005.12월 현재 기초수급가구 81만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약 20만 가구
 - 이중 18세 미만을 아동을 부양하는 수급가구는 약 11만 가구이며, 아동 2인 이상 부양 가구는 약 5만 5천 가구

기초수급 가구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19세 미만 이상 아동 부양 가구	아동 2인 이상 부양	
81만 가구	20만 가구	11만 가구	5만 5천 가구

2.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검토

- EITC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장단점 검토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제외 방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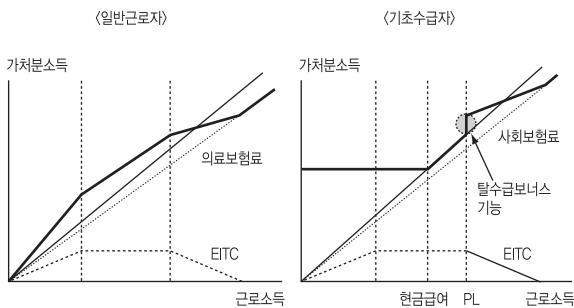
가. 제1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제외 방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제외시 장점은 다음과 같음
 - 기초수급자의 경우 탈수급 시점부터 EITC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되므로 차상위계층으로의 도약을 위한 근로유인 제고
 - 탈수급시 나타나는 소득감소(현물급여 상실 등)를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빈곤의 함정문제를 완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유인 제고
 -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의 필요성에 부합하며 중복지원에 따른 비판에서 자유로움
 -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주안을 두는 시행초기 여건에 부합
- 반면 기초수급자 적용 제외시 단점은 다음과 같음.
 - EITC 급여액이 적은 시행 초기에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에 한계
 -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수급시 상실되는 현물급여 등 가치(연간 약 200만원) 이상의 EITC 지급이 필요
 - 같은 근로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EITC 적용이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



- 기초보장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절차 복잡
- 기초수급자의 일반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자활장려금(10%) 적용 요구 가능성
- 기초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곤란

[그림]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제외



나. 제2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방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시 장점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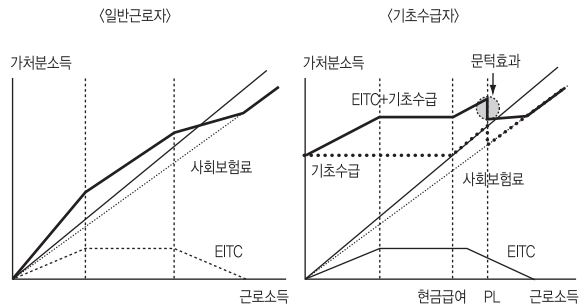
- 보충급여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근로비유인 구조의 문제에 대응하여 이들의 취업과 근로를 장려할 수 있음
 - 현재 기초수급자의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자활장려금(10%) 시행이 유예되고 있으며, 자활장려금 보다 EITC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
- 지원 필요성이 많은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 일반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초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EITC 적용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시 단점은 다음과 같음

- EITC를 지급하더라도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효과는 없음
 - 탈수급 시점에서 현물급여가 중단되고 사회보험료(소득의 7.2% 수준)가 부과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턱효과(소득역전현상)를 없애기 어려움

- EITC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탈수급 저해효과가 커짐

[그림]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표>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에 따른 효과

	제1안 (기초수급자 EITC 적용제외)	제2안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지원 대상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계층 외 기초수급자도 포함
근로유인 측면	· EITC만큼 소득이 추가되어 근로유인 효과 큼	· 보충급여 방식에 따른 일하는 기초수급자 근로유인 문제 해소
소득지원 측면	· 사회보험료 수준의 EITC 지급으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보장 외에 EITC 지급으로 근로유인 강화
탈수급 측면	·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시점부터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EITC로 보전받아 탈수급 유인 제공 (다만, 급여수준이 낮은 초·단기에서는 탈수급 유인에 한계)	· 탈수급시 중단되는 현물급여 상실로 인한 문턱효과 해결이 여전히 과제
예산 측면	· 시행초기에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재정부담 완화	· EITC 적용을 통해 현재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자활장려금 소요 예산 대체
형평성 측면	·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EITC로 지원함으로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형평성 제고	· 보충급여 방식의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세율(100%)이 점증구간에서 점증율만큼 감소
집행 측면	· 시행초기에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관리가능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정수급 등 집행상 문제점 최소화	·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소득자의 근로소득 파악을 국세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제도개선방향과 부합

V.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

1. 신청주의

- 종합소득세 신고시 EITC를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지급
- EITC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이므로 일반 환급과 같이 신청자에 한하여 EITC 적용
- EITC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내역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상호확인되는 경우에만 EITC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
- EITC 지급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부동산·금융재산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전 신청 필요
- EITC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도 신청을 전제로 EITC 급여 지급
 -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 신청방법의 용이화
- EITC 신청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신청장치 등 마련
- 자원봉사단체 등 EITC 신청 협조기관의 활동 장려
 -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Program : VITA) 등이 저소득층의 EITC 신청을 무료로 지원

2. 지급방법

-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연 1회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
- 일시에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급여수령자의 만족도가 크고 행정의 편의성도 확보
 - 미국(연 1회 지급) : 수급자들의 EITC 급여 사용처가 식료품 구입, 자녀 교육비, 신용카드 빚 청산 등 주로 생활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3. 부정수급자 제재

-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급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 EITC 급여액 환수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예 : 10년 또는 5년) 지급제한

4. EITC 급여 지급액의 회계처리

- EITC 급여는 납부할 세액과 상계되는 부분과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분
- EITC는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조세지출로 처리(환급)
 - EITC 지급시 일반 조세의 환급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편리
 - 기존의 조세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EITC 지급이 상대적으로 간편

* 외국의 사례

- 미국 : 세액과 상계부분은 조세지출, 현금지급부분은 정부지출로 처리
- 프랑스 : 전액 조세지출로 처리

5. EITC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 EITC 집행업무는 그동안 국세청이 담당하던 세수관리에 중점을 둔 징세행정과 성격이 다른 업무
 - 저소득자 소득파악, 수급자 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필요한 집행인력 확충과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



정책토론회 토론 요약

정책 실효성 확보 위해 지급수준 확대해야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희대 교수)

EITC 도입시 기초수급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논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병행하여 논의한 후 제도화하였다더라면 훨씬 이상적인 제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EITC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실상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이 제도를 통해 기초수급자들이 과연 그들의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울러 EITC는 절대 빈곤층이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은 어렵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지원제도임을 생각해 볼 때 EITC 수급자 범위에서 기초수급자들을 제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재정이 취약하고,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도입 초기에 정책 실효성의 담보가 어려워 비교적 낮게 급여수준(1년에 최대 80만원까지)이 결정된 것 같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시장경제 차원에서도 지급수준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일용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EITC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들에 의한 소득신고가 사실상 여의치 않아, 이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의 환골탈태적인 협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급자 지급액 낮아 제도 효과 달성 의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EITC 제도 도입 방안이 작년에도 이미 논의된 바 있는데, 오늘 제시된 방안은 그 때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측면에서 작년에는 각각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의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당시 1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바에 의하면 약 50만원 수준으로 안이 후퇴하였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지급액으로 EITC제도 도입의 소기의 효과 달성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두 번째, 2005년에는 수급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한 EITC 제도의 시행일정을 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오늘 안에서는 포괄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EITC제도의 시행 일정의 조정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2005년에는 EITC제도 적용대상에 기초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오늘은 기초수급자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2가지 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이 잡힌 것처럼 보여진다.

수급 대상과 범주에 대한 연구 더 필요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토론자는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EITC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보다는 국제청의 소득과약 능력과 역할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모형과 관련해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 지는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미, 영, 프)과의 비교에 있어 우리 현실에 보다 적합한 선진국 모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특히 미국 외 다른 나라는 소득을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에 대해 EITC를 적용하고 있어, 선택하는 국가별 모형에 따라 소득수준에 대한 논의부터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또한 벨기에의 경우, EITC 도입 후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EITC 급여 지급시기가 제도 도입 후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이후 발생하여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도입시기와 실제 지급되는 시기상의 차이로 인한 정책효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끝으로, EITC제도에 기초수급자를 배제시키는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묻고 싶다. 첫째, EITC 제도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가 목적이라 해서 기초수급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둘째,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약 1,400만원으로 이들은 국민연금 등급상 중간 이상(24-25등급)인데, 그 밑의 등급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아울러 수급자 범주에 대한 언급이 어느 한 방향으로 유

도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현실적인 모형 개발이 필요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보고서의 EITC 제도 지급방안의 특징은 우선, 소득 과약 가능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려 한다는 것과, 다음으로 재정소요 측면을 고려해 제도 방안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시된 방안이 과거 논의된 내용보다 상당히 후퇴하였는데,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급대상 가구가 96만가구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31만가구로 축소되어 혼란스럽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실시방안은 원칙적으로 소요예산과 적용대상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수급자격이 매우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로 아동 수를 1인으로 할지 2인으로 할지, 수급조건에서 재산기준의 설정, 즉 주택소유 및 재산가액 1억원으로 할지에 따라 수급적용 대상이 축소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수급적용 대상의 축소를 전제로 본 보고서 방안이 설계된 듯한 인상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계된 방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측면에서 소득상한선, 최대소득구간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EITC제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한 가지 예로, 수급대상자 소득구간을 최저생계비의 120%로 할 것인지 160%로 할 것인지에 따라 급여수준 등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의 120%로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시행되는 경



우, 정부보고서 간의 용어에 대한 개념 일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희망한국 21C"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의 130% 범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된 것과는 불일치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모형선택과 관련해 기준 설정시, 최대소득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점증구간의 상한소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통일시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형에서 설정한 점증률 수준에 따라 예산 소요액이 달라지는데, 본 방안에서 점증률을 10%로 잡은 것은 미국에서 제도 도입 초기에 사회보장률 수준이 11.7%였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이 7.2%이므로 이의 절충점인 10%로 설정된 듯 하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사회보장세 11.7%가 개인의 부담분인지, 사용자의 부담까지 포함한 총부담분인지 기준이 모호하며, 만일 미국이 총부담분이라면 우리나라 역시 총부담분을 기준으로 일치시켜 점증률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총부담분이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15.8%이며,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점증률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의 일치를 언급하기 이전에 30년전 미국 도입초기 모형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EITC 모형이 출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제도를 너무나 제한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EITC 수급 대상에 재원조달 측면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재원조달 가능성 측면에서도 기초수급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데,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던 비용이 절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수급자를 EITC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10% 소득공제 부분을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밖에 예상치 못했던 다른 비용이 증가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재원조달 측면만을 이유로 기초수급자를 제외시키기 이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EITC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모형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소득과약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시 기초보장제도 개편이 수반되어야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ITC 제도는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많은 검증이 이론·실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EITC는 ‘조세환급을 통한 보조’이므로 소득과약이 핵심이며, 이에 따라 소득과약 수준이 높으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의견이 일반적인 것 같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소득과약 수준에 머물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별로 소개되지 않은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 즉, 복지제도를 둘러싼 환경 및 이런 환경하에서 EITC 제도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토론자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하에서 EITC 도입은 ‘최적’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가 비용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분명한 사업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행위를 잘 이해하고 행위의 변화를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단지 우리가 선호하는 개념만 선별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2층 보장제도'에서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의 복지를 더하면 3층의 보장제도가 되기 때문에 복지가 확대된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실상 차상위 계층과 기초보장 빈곤층은 백지 한 장 차이일 뿐 동일 소득이면서도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는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다. 즉, 양 그룹이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은 여건에서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기초보장제도 범주에 포함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여러 상호작용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부분 행정력에 의존하여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그룹을 구분하고 있지만, 향후 행정력에만 의존한 제도 운영에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경우 실상 차상위계층이 기초보장수급자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기초보장수급자에게 EITC가 지급된다면 더욱 이러한 행위의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개개인의 행위의 결정요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정책목표 자체 간에 충돌이 유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의욕 제고 측면이 취약하여 과거 근로를 제공하던 기초수급자마저 일손을 놓는 폐단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충되는 인센티브를 가진 EITC를 시행하게 되면 제도간 상호작용으로 서로의 장단점이 상충·희석되어 이렇다할 의도한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제도만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요점은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재원이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EITC는 실시 예정중인 제도이므로 마치 별개의 제도인양 구분지어 살피는 것보다는 두 제도가 사실상 도입 초기에 있으므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여 그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행정을 위한 제도설계는 곤란한데 근로자의 소득과약이 용이하므로 이들에 대해 먼저 EITC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소득과약이 어려운 영세자영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되어 다른 식의 지원형태가 요구될 것이다. 제도는 여건을 갖추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 여건을 무시하게 되면 제도의 난립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한 목표가 제도간 상충으로 효과의 상쇄를 가져오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된 근로의욕 저하 문제는 동 제도의 수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기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재정학자 입장에서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EITC 도입에 따른 중복급여 허용은 기초수급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 추가적인 EITC 수당이 주어지고 차상위계층은 EITC 수당만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EITC 도입 이전에는 기초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만 주어지고 차상위계층은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결국 EITC 도입 이전과 이후의 사회적 차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근로시 수반되는 고정비용을 고려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유인을 통한 빈곤 탈출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으려는 유인이 더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중복급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 재산요건 1억원은 미국의 자산기준을 고려하면 시행 초기에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 아닌지 의심스

러우며, 점증률 %는 시행초기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유인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제도도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EITC 도입시 기초보장제도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도 검토해야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

EITC 추진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협의 이후 큰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하고 타당성에 대한 결론만이 도출되었다.

시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인프라, 특히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모형들을 제시하였는데 실제 제도의 시행을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다.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하였을 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적용대상에 대하여 많은 제약조건을 둬으로써 대상은 좁게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급자와 수급대상 희망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우선 첫째로 적용대상 소득 1,700만원이 과연 적절

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시작부터 너무 과도한 기준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700만원이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소득이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은폐소득이 있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금액이 과세대상 신고소득금액이라는 점에서 목표보다 높은 소득수준의 가구를 대상으로 할 우려가 있다.

이를 제어하는 기술적인 방안이 근로자의 신고금액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일용직근로자들과 같은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지급조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사용자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을 때 형평성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지원이라는 목적에서 볼 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급여의 현금지급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지급이 가장 유리하지만 EITC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겠는가의 문제가 있다. 즉, EITC 급여지원시 사회보험료를 우선적으로 공제하는 등의 정책이 효과가 높을 것이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두 제도를 혼용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두 제도를 같이 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EITC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EITC와 최저임금과의 충돌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유인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

여야 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과의 충돌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보육복지지원 등 새로 정부에서 도입하는 복지정책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의 부작용까지도 고려해야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ITC의 제도 자체는 선진국에서도 많은 효과가 입증된 좋은 제도로 보인다. 다만 처음으로 도입하다 보니 매우 조심스러운 것 같다.

우선 제도의 도입 1단계에서 약 31만가구를 대상으로 1,50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효과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있지만, 세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8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목적이 근로유인이나 복지의 강조냐의 문제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 중복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EITC 도입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 소득파악, 세원확보의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환경 개선 없이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올 때에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공평과세도 침해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영세사업자들은 지급하는 급여의 명세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만약 EITC가 도입되면 저소득근로자들의 소득 신고 유인이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영세사업자들의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이 결국에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EITC가 오히려 고용확대를 저하시키는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고용인의 임금파악은 물론 EITC의 적용대상을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다.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금융실명제와 카드사용이 많이 확대된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소득파악이 그리 힘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신용불량자들과 관련하여 신용불량자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저소득근로자라 할 때 이들의 신분과 소득의 노출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급여를 압류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EITC가 오히려 저소득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현실에 맞게 EITC 범위를 좁게 설정해야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EITC 제도 자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10조의 효과를 원할 때 13조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유는 근로유인효과 때문이다. 즉, 노동공급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EITC 제도는 전체적인 파이를 늘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시하고 있는 안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EITC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마다 다르다. 현재 EITC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은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EITC의 도입을 위해서는 EITC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야 한다.

EITC의 수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면 할수록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EITC의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EITC 제도의 기본 목표는 근로의욕의 고취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할 능력과 상관없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EITC는 소득금액이 기준이 아닌 일할 능력이 있느냐에 관점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큰 틀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대상만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세금의 낭비가 증대되고, 일하지 않는 데 대한 비용만이 증가할 뿐이다.

소득과약에 따른 애로사항 많아

이병대 국세청 소득과약인프라추진단 단장

모든 제도의 도입에는 이론적인 배경과 그 제도를 집행하는 행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EITC를 직접 집행할 국세청의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겠다.

실제로 소득과약이 매우 힘들다. 소득과약은 납세자의 신고자료와 주어진 인력만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파악 가능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우선 시행 대상자를 근로자로 한정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비율이 28%에 달하고 있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이며, EITC의 적용대상이 될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소득 파악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우선시행하는 것이 옳다.

현재 미국의 경우 EITC를 시행한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정수급률이 30%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하여 100% 소득과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급조서의 간소화와 같은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ITC의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치산정문제와 결부되므로 실제 주택의 가치산정이 매우 어려워 시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EITC의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과 EITC의 병행에 대하여는 각각의 소득기준이 다르고, 각 행정관청의 존중의 입장에서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EITC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시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적용 범위와 급여수준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

백운찬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EITC의 시행규모, 적용대상의 소득금액인 1,700만원의 타당성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적용여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규모면에서는 EITC를 도입하는 초기이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행가능성과 형평의 문제에 비추어 보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EITC는 점차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입초기에 무리하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초수급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의 두 제도를 중복하여 지원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중복적용이 제도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중복지원이 근로유인 효과와 탈수급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



-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박상원 · 김 진
- 조세 ·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병목 · 장용성
-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노영훈 · 김현숙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 안종석
-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국 · 박 훈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

박상원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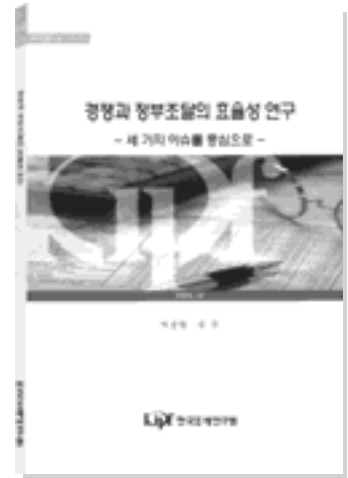
본 연구는 경쟁이 정부조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최저가낙찰제도”, “자신신고자 감면제도”는 모두 최근에 도입되었거나 제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들이며, 이들에 대한 연구는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위해 경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물품조달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다루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하나의 물품을 여러 수요기관이 소비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수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모형을 통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제도 이용의 범위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이 제도는 여러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품목단일화의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자들의 독점적 위치로 인해 가격경쟁이 완화되어 가격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수요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나 규격화하기가 어려운 제품인 경우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유용성이 커진다. 또한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정확한 시장조사, 가격상승 억제 및 계약이행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더욱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제Ⅲ장에서는 대규모 공공시설공사 조달의 최저가낙찰제도를 제도적 · 이론적 ·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저가낙찰제는 PQ자격검사를 통과한 시공업체 응찰자 중에서 최저가로 계약비용을 제시하는 업체에 낙찰을 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 최고가격경매제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이를 이용하여 낙찰률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발주자의 행위와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받음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낙찰률을 결정하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회귀결과는 최저가낙찰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사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발전소 공종더미와 예정가격, 그리고 심사통과자 수가 낙찰률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시사점으로는 먼저 공종의 차이에 따라 낙찰제도를 구체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고려할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격심사와 기술심사를 강화 또는 현실화하여 최저가낙찰제의 가격경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예정가격의 낙찰률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비용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적용기준을 낮추는 것도 유의미할 수 있음을 밝혔다. 공정의 복잡도가 큰 공종에 대해 가격신호만을 이용하는 최저가낙찰제보다 다양한 신호를 이용하는 자격심사제 또는 최고가격낙찰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도 제시되었다.

셋째, 제Ⅳ장에서는 담합이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어떻게 저해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담합 형성의 유인구조를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어떻게 담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와 함께 당사자의 유인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행위를 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비롯한 처벌을 감면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담합을 입증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담합의 와해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담합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사전적으로 담합 형성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담합의 이탈자에게 신고를 통해 보복하고 자신은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섬세한 제도의 디자인과 시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 외에도 정부조달이 담합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정가격의 합리화, 감면제도 이용시 담합 주도와 이탈자의 구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달의 분권화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세 가지 이슈는, 경쟁이 정부조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맥락에서 함께 살펴볼 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세 가지 이슈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른 문제도 폭넓게 적용되는 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KIPF**



B5변형/145면/2005. 12/
값 6,000원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5-04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조세 ·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장용성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과거 조세부담률이 낮았던 시기에는 소득세 등 조세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확충에 따라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 등에 의한 노동시장의 왜곡축소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급속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질적 변화와 함께 노동공급의 절대적 감소가 향후 경제성장에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대책마련의 주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지원과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EITC와 같은 환급가능한 조세제도의 운영이 검토되고 있는바, 세후임금의 변화가 초래하는 저소득근로자의 노동공급 행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보고서는 조세정책 및 재정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들이 개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기타 거시경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본다. 분석의 접근방법도 조세 혹은 재정정책이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 방향으로 살펴보는 부분균형 분석과 함께 동 재정정책들이 미칠 수 있는 간접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일반균형 분석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부분균형분석은 제도의 세밀한 변화가 경제활동 참가율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는 성장 등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큰 틀에서 제도 변화가 각종 거시변수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인 조세정책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이며 재정정책은 부분균형분석에서는 연금, 일반균형분석에서는 이전소득(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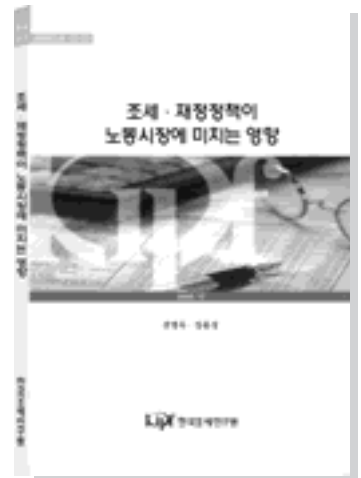
부분균형분석모형에서는 소득세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소득과 소득효과를 나타내는 비노동소득의 영향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향후 제도의 성숙에 따라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는 연금제도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경제활동 참가 여부가 소득자료의 유무로 인해 구분되는 quasi-complete binary data 문제로 인하여 기대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교육수준 혹은 주택소유 여부를 소득과 재산소득의 대리변수로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접근방법은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자료의 내생성문제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대 노동소득의 추정을 통해 quasi-complete binary data 문제를 해결하고 기대노동소득 및 비노동소득의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명시적으로 조세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의 부과가 결과적으로 세후소득의 감소로 나타나므로 이에 근거하여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경우 기대노동소득은 경제활동 참가를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절대적 크기도 연령(Age)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노동소득은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임금상승 등을 통한 기대소득 증가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경우 세후소득의 증가를 유도하므로 기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재정수요 증대가 예상될 수 있다.

한편 소득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도입한 비노동소득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여주어 비노동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확률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경제활동 참가확률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크기는 기대소득변수보다는 작게 나타나 intensive margin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노동소득 영향은 비가구주의 경제활동 참가확률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높을수록 비가구주 성인의 경제활동 참가확률은 낮아지고 그 상대적 크기 또한 비노동소득의 영향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소득의 경제활동 참가유인에의 영향이 비노동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구주의 노동소득 영향이 소비단위를 형성하는 가구 구성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경직화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B5변형/133면/2005.12/
값 6,000원

의 임금차이가 큰 우리의 현실은 향후 비가구주의 경제활동 참가유도가 쉽지 않음을 짐작케 해준다. 45세 이상 연령구간별 분석에서는 기대노동소득변수의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연령변수의 영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게 증가하여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결정에 가장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가능연령인 55~59세의 경우 노령연금의 수급이 경제활동 참가를 유의미하게 낮추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령연금의 지급으로 노후소득 획득의 부담이 줄어들어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유인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수급대상이 늘어날 경우 동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지급구조가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연금자산의 변화 혹은 기대소득과 연금자산 변화의 합이라는 두 변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기대연금자산의 변화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55~59세 구간에 있어 경제활동 참가확률과 동일

한 방향으로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하게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추가적인 노동으로 인해 미래 기대연금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증가하고 감소하게 되면 줄어들어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기본연금보다 감액된 재직자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60~64세 구간에서도 기대연금자산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는 경제활동 참가결정에 10%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추가적인 노동으로 인한 노동소득을 기대연금 변화액에 더한 변수(기대소득)를 이용할 경우 두 분석대상 연령구간대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대연금의 추정과정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동 연령계층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자리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기대연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수급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가능자(55~64세)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별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기대연금자산 변화(passch) 변수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1.6%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낮은 감액률로 인해 추가노동에 대한 개인의 기대연금자산 변화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을 지나치게 낮게 적용하여 동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어 주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률 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 동일한 감액률이 적용되는 연령별 감액구조의 변경을 통해 조기은퇴 유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고령 계층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결합되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의 경우, 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소득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되는 경우, 두 가지 재정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검토된 재정정책은 조성된 재원이 경제 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이전되는 방안과 조성된 재원이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EITC 방안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Lump-sum 형태로 공평하게 세수를 나누어주는 방안하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참가율이 줄어든다. 모형의 경우 고용률이 60%에서 58.8%로 감소하였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고용량 감소는 생산 및 자본 축적의 감소로도 이어져 전체적으로 국민총생산은 약 1%, 총자본량은 1.5% 감소하였다. 또한 고용은 재산보유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였다.

인상된 세율로 인해 증가한 세수를 고용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상한액에 따라 EITC 정책은 다양한 효과를 보였다. 연간소득 1,558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율의 2%포인트 상승에서 오는 세수는 근로자 1인당 292만원을 주는 수준에서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었다.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로 고용은 61.7%로 증가한다. 특히 재산 보유가 경제 내 최하위 20% 그룹의 경우 노동시장 참가율이 87.2%에서 96.6%로 상승한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재산이 상위 40%)은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후근로소득 감소로 노동시장 참가율이 다소 감소했다. 생산성이 높은 고소득 계층의 노동공급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은 0.5%, 총자본량은 3% 감소하였다.

고용장려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시킬수록(즉 EITC 소득상한이 높아질수록) 수혜대상이 늘어나 고용을 증가시키나 균형재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인당 장려금의 크기는 줄어들어 전체 고용을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고용장려금 수혜의 범위가 연간 소득 2천만

원일 때 고용은 62.5%로 극대화되었으며 수혜범위가 더 확대되면 경제 전체 고용량은 서서히 감소하였다. 한편 수혜범위가 확대될 때 국민총생산 및 자본형성은 수혜범위가 연간소득 3,500만원일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촉진되어, 고용이 다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효율단위로 측정된 노동투입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EITC와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 재원을 소득세로 마련할 경우 전체적인 노동시장참가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을 보여주어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절대적 노동공급 감소에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조금 재정 마련을 위해 지나치게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세율인상에 따라 자본축적이 저해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총생산 증대에 기여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시에 본 분석결과는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개인의 노동공급시간(intensive margin)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EITC정책 수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 정책이 실시될 경우 개별 근로자의 고용 여부, 소득의 파악 등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을 고려할 때, EITC정책이 빈곤층의 고용기회 확대 등 분배개선의 정책으로는 효과가 기대되나, 국민총생산을 극대화시키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5-05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요약

한 경제 내 구성원들의 경제적 처지나 입장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계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부)과 같은 경제적 능력의 분포 현황, 추세, 그리고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자료 제약의 한계로 인해 표본 자료에 입각하여 가계의 소득분포를 파악하는 데 국한되었거나 금융자산을 비롯한 일부 자산의 선택에 대한 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2003년 단년도에 한해 가계조사자료 표본의 소득자료와 부동산 보유과세자료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모자료의 주택자산 소유정보를 개인 및 가구정보를 이용하여 개인별, 나아가 가구별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가계의 경제적 능력을 분석한다. 통합된 자료에 근거하여 가계의 소득과 주택자산의 결합분포로부터 얻은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정상소득에 주택소유로부터 암묵적으로 수반되는 귀속임대소득을 더하여 가구 간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귀속임대소득을 더한 가구의 포괄적 소득에 기초한 경우의 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소득에만 기초한 경우의 불평등도보다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자영업자가구나 무직가구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은 낮으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 높은 가구가 반드시 높은 주택자산가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소득과 주택의 결합분포를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은 무직가구의 경우 가구의 총소득 수준은 낮지만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등이 있어 가구가 속한 소득분위와 주택자산분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과 주택자산가액 분위를 5분위로 구성할 경우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 중 10%를 초과하는 가구가 주택자산가액은 5분위에 해당되었으며,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14.5%가 주택자산가액 1분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주의 연령별로 소득과 주택자산의 결합분포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은 가구주의 소득수준은 높은 반면, 주택소유비율이나 소유한 주택자산가액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이 정점을 이루는 연령은 40대 후반인 반면, 주택자산가액이 정점을 이루는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다. 비록



B5변형/191면/2005. 12/
값 8,000원

2003년 단년도 자료를 이용하므로 한 가구의 소득과 자산 소유형태의 시간적 흐름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의 축적이 자산형태로 실현되어 30~40대에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50대 이후에 보다 높은 가액의 주택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예측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넷째, 가구주의 학력별 주택자산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가구주가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에 가장 높은 주택자산가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학력자 가구주의 경우가 오히려 고등학교와 전문대졸 학력자 가구주의 경우보다 높은 주택자산가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보유하는 주택자산의 가치도 커지는 경향은 있지만 가구주 학력과 보유한 주택자산가액의 관계가 가구주 학력과 가구 소득처럼 정비례관계는 아님을 시사한다.

다섯째,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가구의 주택소유 여부와 소유한 주택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남자 가구주, 가구주 학력이 모두 많거나 높을수

록 주택소유비율도 높고 보유한 주택자산가액도 큰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구유형별로 볼 때, 자영업자가구가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고 보유한 주택자산가액도 높음을 확인하였다.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주택소유비율은 낮으나, 주택을 소유한 서울거주 가구는 다른 지역보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구의 소득세 및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형평성을 비교하기 위해 가구의 세후 가처분소득을 구한 후 포괄적 소득에 대한 세후 가처분소득과 비교하였다.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가구유형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이 근로자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신 포괄적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두 가구유형 간에 세부담의 차이는 저분위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고분위의 경우, 9분위를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포괄적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실효세부담은 가구의 분위별 누진도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전체의 실효세 부담도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괄적 소득과 이에 따라 가구의 세부담을 측정할 경우, 가구의 유형별 세부담의 차이는 감소하고, 분위별 세부담의 차이도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소득-(주택)자산 결합자료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통합된 기초자료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및 가구의 경상소득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가구의 불평등도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분석하던 기존의 논의를 주택자산을 포함한 자산의 불평등도와 주택자산 관련 조세의 소득재분배적 기능까

지 고려하여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주택자산 외에 다른 형태의 자산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으로부터 개인 및 가구의 경상소득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가구의 불평등도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분석하던 기존의 논의를 주택자산을 포함한 자산의 불평등도와 주택자산 관련 조세의 소득재분배적 기능까지 고려하여 확장하게 되면 가구의 경제적 처지의 불평등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조세정책도 보다 종합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003년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가구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주택자산가액 대비 0.098%로 낮은 수준이며, 소득분위별로 볼 때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나 포괄적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새롭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되어 2003년에 비해 비교적 시가를 잘 반영하고 세율도 조정되었으므로 2005년의 과세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적어도 (소득)재분배기능에 있어서는 200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프로파일이 연령별,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의 소유사실에 근거한 주택보유단계에서의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보유세 강화정책은 보유세가 경상소득으로 납부해야 하는 납부세액확보문제(liquidity problem)를 야기하게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가구주가 무직자이거나 은퇴기의 고령계층일 경우 총소득은 낮은 수준에 있으면서도 현금성이 떨어지는 주택자산으로 생애저축을 축적한 경우 납세자의 경상소득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주택보유세 강화정책은 큰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5-06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안종석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 문제만큼 지속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온 이슈는 많지 않다. 과세형평성 문제는 주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낮은 소득과약률에 기인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부담의 회피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로서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란 원칙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와 국민의 납세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근로자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영업부문의 상대적 과도한 노동공급이 소득과약률 제고 등 조세환경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낮은 소득과약률은 조세형평성 유지 차원뿐만 아니라 기타 복지정책 수행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부담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 제외되어 왔던 것은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대한 고려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적·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이러한 소득변동 위험이 낮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은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위험요인은 보험시장을 통해 회피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험회피적(Risk-averse)인 개인을 가정할 경우, 두 직업 사이의 위험도 차이가 소득세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개인의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까지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세가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로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론적 차원에서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노동시장 구성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차별과세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서베이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과약률을 추정하여 소득종류별 세부담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그 중에서 소득과약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실효소득세부담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한 회귀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부담에 대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소득세부담의 경우 자본축적의 저해, 탈세 가능성 등으로 유도하는 자영업자 감소효과가 탈세유인 증가로 대변되는 자영업자 증가요인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임금일자리가 많지 않는 등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하는바, 향후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행정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영업자 1인당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비슷한 시기에 OECD에 가입한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체코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문별로는 단순경비율제도의 경우 비용구조가 아닌 경기에 따른 경비율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차별적인 소득세제도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적 소득세 구조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며 시장조정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추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소득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으로써 동 부분으로부터 자영업자 유출을 억제하였으며 보건업의 경우 소득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으로써 자영업자 유입을 억제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자 소득세정책은 기장에 의한 소득신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단순경비율 등의 조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방식보다는 산업별 비용구조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자영업주가 되고자 하는 개인적 선호와 자영업부문에 존재하는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 개인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노동구성이 사회적 최적상태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최적 피용자 비중은 0.6759로 나타나 현재의 0.7044보다 약 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즉, 회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한 자영업자로의 이동 제한효과가 개인의 자영업자 선호요인보다 크게 작용하여 최적수준보다 피용자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기존 연구에 따른 소득과약을 수준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자영업자 비중이 총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자영업자 비



B5변형/157면/2005. 12/ 값 7,000원

중은 자영업자로의 전환에 상당한 자본축적과 경험 등의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인 최적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영국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개인별 직업선택결과를 최적상태로 이행케 하는 차등조세정책이 추진될 경우, 소득자별로 적용될 차등소득세율은 개인의 위험기피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실효세부담은 0.6~1.7%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는 위험기피도에 따라 1.3~3.5%포인트로 회피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조세 측면에서 제공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값들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일률적인 변화는 피용자의 비중이 최적수준보다 높다는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영업자 혹은 피용자 일방의 노동탄력성이 증가할 경우(혹은 감소할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변동하였다. 소득과약을 변화 가능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과약을 수준이 낮아질수록 최적피용자 비중이 낮아

짐을 알 수 있으며 그 변화폭도 소득과약을 상승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자와 피용자에 대한 차별적 소득세제는 노동시장의 직업선택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소득자를 우대하는 소득세제는 노동자 구성 측면에서 볼 때 우대규모가 균형수준보다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균형수준보다 높은 피용자규모 축소를 위해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등의 정책은 그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률이 높아질수록 최적 피용자 비중이 높아지므로 세수증대 등의 추가적 편익을 달성할 수 있는 소득과약을 제고정책에 대한 노력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소득과약을 제고정책을 통해 충분한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개인의 직업선택결정과 연계된 소득세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자료의 한계로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가정된 자영업부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부문과 법인부문의 근로자당 자본량이 다를 것이며 이러한 자본량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모형에서 이용되는 모수 β 의 변화는 β 의 변화를 초래하며 두 모수의 변화는 균형근로소득자 비중을 변화시키게 되어 향후 동부문의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탈세로 인한 평균 세부담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세부담률이 근로자평균 3.34~6.84%, 사업소득자평균 13.96%인 데 비해 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2004년 세부담률은 근로자평균 2.69(전체가구)~3.35(납세자가구)%, 자영업자 0.78~2.9%로 자영업자가구가 상당히 낮다. 뿐만 아니라 가계조사 자료상의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실제소득의 70% 내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과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라면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부담을 사업소득자의 평균적인 세부담보다 낮게 유지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암묵적으로 모든 자영업자가 탈세를 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탈세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5-0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국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 훈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세구제제도에는 과세관청의 자기시정기능,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기능이 요구되는데,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과세관청의 자기시정기능이 강조된다면 행정소송 이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에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사법심과는 다른 불복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기능이 강조된다면 불복절차에 사법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의 도입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시정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은 불복절차마다 강조하는 기능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각각의 불복절차마다 한 쪽의 기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법심처럼 권리구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행정심으로서 자기시정기능도 확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불복제도를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아래와 같은 조세심급구조의 단순화 및 조세구제제도의 전문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소송, 신속한 결정 및 철저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청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청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

는 경우 그리고 예상고지세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2항에서 규정한 것(납기전징수사유, 수시부과사유, 조세범칙사건 조사 등) 이외에는 청구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과 청구제외대상에 대한 논의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의 경우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관세법에서도 국세기본법과 통일되게 법령에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청구대상과 청구제외대상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세·관세의 경우 20일, 지방세의 경우 30일로 되어 있는 청구기간을 60일로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고, 외부위원의 수를 내부위원의 수보다 확대하며, 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처럼 화해 또는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모색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는 시기상조이다.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조세법 체계 내에서는 협의나 화해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합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기존 행정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양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의 자기시정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성을 보다 확립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세심판원의 이러한 독립성 확보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관세를 아우르는 조세심판원의 설치라는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넷째, 국세·지방세 및 관세를 모두 다루는 조세심판원의 설치가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세에 대해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지방세심판원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세나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채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그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을 설치할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 단위로 조세심판원의 지부를 설치하고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가 아닌 제3기관 소속 아래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원 심사청구가 폐지되더라도 감사원은 행정청의 감사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 **KIPF**



B5변형/163면/2005. 12/
값 7,000원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5-04 『조세구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t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

日, 경기 좋을 때 세금 더 걷는다

일본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국가 부채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3일 '세입 · 세출 일체 개혁회의'를 열고 5년 후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개편 방침(세입 증대, 세출 삭감)을 확정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소비세를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해서는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른 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세 인상에 대한 납세자 반발이 클 것을 고려해 소비세 증세분 사용처를 사회보장 분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 · 고령화대책 차원에서 사회보장 급부에만 쓰겠다고 밝히면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자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각료회의를 열어 소비세의 목적세화 등 세제 개편안을 담은 '경제재정 운용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 · 여당이 세제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가 있다. 일본 국가채무는 올해 말 775조엔 규모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 동안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임기중에 재정 재건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마지막 개혁 작업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폭이나 인상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종합적인 세제개편 작업은 차기정권 과제로 떠넘겨졌다. 그런 만큼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전에서도 세제 개편안이 후보들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집권 자민당 증진 정치인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들어 소득세나 상속세의 최고세율도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나카가와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 2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세 인상과 병행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합쳐 현재 50%인 최고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니가키 재무상도 같은 날 이바라키현에서 개최된 한 강연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소비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상속세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조세조사사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 히로미쓰 씨도 현행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그 동안 몇 차례 표명했다. 그만큼 제도개편 실권을 쥐고 있는 집권 여당과 정부 수뇌부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됐다는 비난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자 이를 의식해 소득 · 재산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자는 발언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매일경제 2006-07-05]

부가세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유럽에서 가장 낮은 15%의 부가세율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등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현재 ‘소비지 과세’로 이뤄지는 부가세제를 ‘생산지 과세’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룩셈부르크, 독일 등이 반대해 질충에 실패했다.

이전에는 식당의 부가세를 프랑스가 인하하려 했으나 독일이 반대해 수포로 돌아갔었다.

[서울신문 2006-07-05]

EU, 기저귀稅 논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기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VAT)를 물리는 문제를 놓고 분열됐다고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5개 EU 회원국 가운데 기저귀의 부가세 면제를 찬성하는 측은 낮은 출생률로 고전하는 유럽이 부모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세 면제를 반대하는 측은 기저귀는 필수적 의료용품이 아니므로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몰타 등 5개 회원국이 아기용 기저귀에 부가세 최저세율인 15%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제재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위원 등은 “기저귀 세율을 올리면 그러지 않아도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이 EU 가입 당시 노인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스피들라 위원측은 “노인용 기저귀는 부가세 인하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기용 기저귀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늘어나자 코바치 위원은 지난주 집행위 정례회의 당시 의제에서 기저귀 부가세율 위반 문제를 막판에 제외했다. EU가 부가세를 놓고 분열양상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내 부가세는 15~25%로 회원국별로 다양하다. 코바치 집행위원은 “부가세율이 낮은 회원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자국의 높은 부가세를 추가해 판매하는 부가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독일, 총리 전격 세금인상… 온국민이 월드컵에 빠져있는 사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민들이 월드컵 열기에 빠진 사이 기습적으로 세금 등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고 독일 일간 빌트가 3일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사민당 연정은 세금 인상 방안이 포함된 2007년도 연방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내 다수인 두 당은 사전 합의에 따라 4일 오후(현지시간) 독일과 이탈리아가 월드컵 4강전을 벌이는 시각에 이를 승인할 방침이다.

그동안 연정 파트너인 두 당은 아동과 노인들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사민당측 제안을 놓고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사민당측은 “기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정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기민당 보수파와 야당, 기업들은 “안그래도 재정 위기인 복지 비용을 무작정 늘리면 국민 부담만 심해지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월드컵 열기를 이용해 골칫거리를 해결했다.

제야당인 자유민주당은 즉각 “늘고 먹는 노령인구를 위해 젊은이들이 더 피땀을 짜게 해서는 안된다.”며 비난 성명을 냈다. 대기업들 역시 “곧바로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정부의 세금 인상 조치는 재정 개혁이 아니라 경제의 숨통

을 죄는 계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빌트는 "독일 축구 대표팀이 이탈리아에 진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지갑 두께를 더 얇게 만든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일보 2006-07-04]

버핏, 상속세 폐지 반대

재산 370억달러(약 35조원)를 자선단체에 기부키로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75)은 "부의 왕조적 세습에 반대한다"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폐지 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버핏은 2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웨라톤 호텔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50) 부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버핏은 "상속세는 매우 공정한 세금"이라며 "상속세 폐지 시도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상속세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버핏은 "재산의 기부 방침에 자식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식들은 재산 처분에 관한 나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버핏은 평소 유산보다는 성과에 의해 성공이 좌우되는 사회를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상속세 철폐 움직임에 대해서는 "마치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장남들로 2020년 올림픽팀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반대해 왔다.

[한국경제 2006-06-28]

美하원, 상속세 감면안 통과

부시행정부 "상속세는 이중과세... 경제 악영향"

반대론자들은 "불로소득에 과세는 당연" 반발

미국에서 상속세 폐지 논란이 뜨겁다. 폐지 반대론자들은 재정적자 악화와 빈부 격차의 고착화·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폐지 찬성론자들은 부당한 이중과세와 경제 활성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과세대상 줄이고 세율도 낮춰

미 하원은 22일 오는 2011년부터 상속세 추정 대상을 대폭 줄이는 상속세 감면안을 269대156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유산이 개인 200만달러·부부 합산 4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최고 46%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면안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를 개인 500만달러, 부부 합산 1,000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15%로 낮췄다. 특히 2,500만달러 이상의 유산에 대해서는 30%만 과세하도록 했다.

상원이 추진할 경우 현재 전국민의 2%인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다. 하원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1년 내놓은 감세안 때문에 2011년 한 해 동안 상속세가 전면 폐지됐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속세 폐지 공방

상속세 영구 폐지를 주도해온 부시 행정부는 상속세가 이중과세라고 주장해 왔다. 소득세를 낸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또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망세(Death Tax)'로 불린다. 부시 행정부는 또 상속세가 투자나 경영 확대 의욕을 꺾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를 폐지하면 역대 최저 수준인 저축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부시 행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상속 재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바에는 죽기 전에 다 써버리지는 부자들의 심리를 되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상속세 폐지 반대론자들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폐지할 경우 빈부격차가 더욱 더 심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美) 재계가 대체적으로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지만, 세계 1·2위 갑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불로소득 계층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좋을 게 없다는 주장이다.

◆ 상속세 현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가 상속세를 폐지했다. 상속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고, 경제 왜곡 현상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국세청(IR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40만명이었다. 이중 2.2%에 달하는 5만2000명만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징수액은 244억달러였고, 징수액의 54%는 500만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06-06-24]

중국, 외국기업 감세혜택 줄인다

중국 당국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오던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는 취지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내자기업의 세금을 낮춰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내·외자 기업 소득세 단일화 제안'이 중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1호 제안으로 상정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외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이 중국에 들어온 후 1~2년엔 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에는 세금의 절반을 경감해 주고 있다. 또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은 최저 15%로,

내자기업 33%의 절반 수준이다.

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부장은 "이번 제안은 중국 정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내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다른 쪽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혔다.

그동안 중국 내에선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해 내자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커져왔다. 또 외자기업들의 세금 탈루가 심각해 이들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매년 외자기업의 세금 탈루액은 1270억 위안(약 15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올 초 중국 국세심판위원회 왕리(王麗) 부위원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제공해온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국제관행에 맞지 않고 국내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최근 중국 당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도 중국 내에 달러화가 넘쳐나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는 등 중국의 달라진 경제위상도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 감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 정책을 바꾸게 된 것은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수록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8월 시작해 올해 안에 3차례의 심의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연말께 수정된 감세정책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2006-06-20]

독일, 경제회생 위해 법인세 낮춘다… 2008년부터 세율 30% 이하로

경제 회생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독일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36.8%인 법인세율을 2008년부터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법인세율이 낮은 동유럽 국가들이 2004년 유럽연합(EU)에 대거 가입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일도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폴란드의 법인세율은 17.4%이며 아일랜드는 15%에 불과하다.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7일 의회 폐회 전까지 법인세율 인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페르 스타인브루에크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안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BDI와 독일상공회의소는 일자리를 해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2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6개 주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변수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주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인세는 주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정부들의 협

조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주정부의 전문가들이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메르켈 정부는 현재 16%인 부가가치세율을 내년부터 19%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또 쾰른 소재 IW연구소는 독일 기업들이 올해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경제 성장에 따라 작년보다 6.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 2006-06-21]

영국 하원, "밀수담배로 연간 29억 파운드 세수 손실 발생"

영국 하원은 20일 밀수담배로 인해 연간 29억 파운드의 부가가치세 징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하원 공공회계위원회는 "밀수되고 있는 약 120억 개비의 담배는 영국인의 건강에 대한 위험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저질 밀수담배의 위험성을 공개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레이(Edward Leigh) 공공회계위원장은 "담배 밀수업자들은 납세자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동아시아나 동유럽에서 만든 저질 담배를 국내에 유통시킴으로써 흡연자들의 건강을 더욱 위험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일일해외신문, BBC 2006-06-21]



재정정책 ·

역만장자 CEO의 미국경제 경영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CEO)로 미국 재무장관에 지명돼 화제를 뿌렸던 헨리 폴슨(60)이 6월 28일 미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미국의 제74대 재무장관으로 집무를 시작했다.

폴슨 장관은 인준 통과 직후 “세금 인하와 투자유치, 미국상품에 대한 대외시장 개방정책을 강력히 끌고 가겠다.”며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일치하는 취임 일성을 남겨 성장론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부시 행정부 들어 세 번째 재무장관인 폴슨 장관은 전임자들과 달리 34년간 월가에서 활동해온 금융전문가다. 이 때문에 그는 금융시장에 대해 높은 친화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과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처음 폴슨이 장관에 지명됐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심을 보였다. 우선 기록적으로 늘어난 미국의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고 중국 정·재계 실력자들과 막역한 친분을 가진 그가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지도 관심거리였다. 또 백만장자 투자가로서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폴슨 장관은 취임 이후 세금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부시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일시적 감세 정책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재정 압박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건강보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외교역의 공정성을 촉진하고 대미 투자는 물론 미국상품 수출시장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구해 미국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중국을

70회 이상 방문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요인들과 친분관계를 갖는 등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가 전임자보다 더욱 정교하게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미국 정부의 대변자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가 중국의 금융개혁을 지켜보고 조언까지 했던 인물임을 들어 친중파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런 그가 6월 27일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중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그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개방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 정부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방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며 중국 내부의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출신인 그는 아이비리그 명문 다트머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MBA)을 거쳤다. 대학시절에는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하며 아이비리그 올스타 라인맨에 선정되기도 했다.

1970년 금융계에 투신한 그는 골드만삭스에서만 20년 동안 투자경험을 쌓았으며 1988년부터 8년간 회장으로 재직하며 조직 규모를 2배 이상 키웠다. 지난해에는 사상최대인 56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뛰어난 수완을 과시하기도 했다.

폴슨 장관은 골드만삭스 주식 323만 주(4억8500만 달러)를 비롯한 각종 주식과 채권 등 최소 5억 달러(475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뉴스메이커 2006-07-07]

日, 2011년 재정 흑자 목표 기본방침 결정

일본 정부는 세출을 최대 14조 3천억엔 줄여 2011년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명목성장률은 3%를 유지할 계획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16조 5천억엔중 11조 4천억~14조 3천억엔은 세출삭감으로 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2조 6천억엔, 사회보장비 1조 6천억엔, 공공사업비 최대 5조 6천억엔 등 분야별 세출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7일 임시 각료회의를 이런 내용의 경제재정정책 운영 기본방침인 '골대방침 2006'을 결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 차입금 부분을 제외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해 최대 14조 3천억엔의 세출삭감을 추진한다. 소비세를 사회보장목적세화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대 관심사인 소비세는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를 합해 800조엔에 가까운 장기채무를 축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차기 정부로 넘겼다. 중·장기 목표로 2010년 중반까지 국가와 지방의 채무잔액의 대(對)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안정적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국가자산은 매각 등을 통해 향후 10년동안에 140조엔 정도 축소키로 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5.7% '순감'을 추진한다.

계획은 이밖에 "경제성장전략대강"에 입각, 성장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규제개혁도 계속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보장번호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 확대와 영·유아 교육 무료화도 장래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2006-07-07]

美, 감세 강화 · 재정지출 억제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미국 경제의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해 감세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폴슨 지명자는 27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감세 정책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나는 감세정책이 미국 경제를 지금까지 성장시켰다고 믿는다"며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거스르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감세정책을 지속시키고 조세구조를 개선해서 세금을 보다 간단하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거두는 것은 장래 미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서 세금을 올리자는 발상은 큰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먼 삭스 회장 출신인 폴슨 지명자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윌스트리트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소비자심리·투자심리를 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폴슨 지명자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재정지출을 억제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역의 공정성을 촉진하며, 대미 투자와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규제 확대로 인해 미국내 일자리와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일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및 건강의료 재정 부담이 미 경제의 큰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70차례나 방문할 만큼 중국 통으로 꼽히는 폴슨 지명자는 "중국이 중기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이 좀 더 빨리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6-06-28]

中, 전 국민 최저사회보장 능력 갖췄다

"중국은 이미 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국민복지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경신보(北京晨報)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손꼽히는 경제학자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우징롄(吳敬璉) 연구원은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경제학 50인 포럼'에서 중국이 전국민 최저사회보장 능력을 갖출 만큼 경제규모가 성장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그동안 전 국민 사회보장제도 실시에 관한 토론들이 많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다.

우 연구원의 이번 발언은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만큼 경제규모가 성장했다는 중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우 연구원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에 대해 "국가가 사회보장 재원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활용하면 이들 지역(농촌)의 최저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적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시장경제의 구조가 기본적인 형태를 갖췄다"며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원은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로 인해 국민간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민경제연구소의 판 강(樊綱) 소장도 "정부 공공정책의 결여가 국민간 소득격차 확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6-06-28]

日, 현 출산율 유지될 경우 연금수령액 줄어든 것

일본이 사상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년 안에 연금수령액을 줄일 예정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후생성 추정치를 인용,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현재 현역시절 급여의 50%를 보장하고 있는 연금수령액이 2023년부터 현역시절 급여의 48%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1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낳은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5명으로 1947년 출산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출산율 저하와 일본 인구의 고령화는 연금수급자 증가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세계 제2의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30일 2005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에 도달, 이탈리아의 20%를 제치고 세계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5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13.6%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지난해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700만명으로 1945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일본의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바이지만 일본 인구가 2005년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2년 빠른 것이다.

[뉴시스 2006-07-02]

일본, 고령자세대 800만 세대 넘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세대가 작년 처음으로 800만 세대를 넘어 834만 세대에 달했음이 후생노동성이 28일 발표한 2005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밝혀졌다. 연금이나 은급을 받고 있는 고령자세대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도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4,704만 세대 중 65세 이상의 가족이 있는 세대는 1,853만 세대(39.4%)이고 이 중 64세까지의 일할 사람이 없는 '고령자세대'가 834만 세대(17.7%)로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 한편 자녀가 있는 세대는 1,236만 세대(26.3%)로 과거 최저를 기록하였다.

세대의 소득은 전 세대 평균이 580만 4천엔(전년비 0.1% 증가)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고령자세대는 평균 296만 1천엔, 자녀가 있는 세대는 평균 174만 9천엔으로 모두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그러나 생활의식으로는 "어렵다"고 답한 세대가 전체의 56.2%에 달해 과거 최고였고, 소득이 늘어났을 터인 고령자세대에서도 54.7%, 자녀가 있는 가족도 60.1%가 "어렵다"고 하였다.

[국회일일해외신문 산케이신문 2006-06-29]

獨, 경제 6년만에 고성장... 수상은 국가부도 경고

월드컵을 통한 내수 부양효과, 실업률 감소 및 6~7% 정도의 수출성장을 통해 2006년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01년 이후 최고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6월 23일 Merkel 독일 연방수상은 독일이 국가부도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Merkel 수상의 발언은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은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사민당은 경제가 회복되고 독일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국가지도자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독일, 왜 국가부도 상황이란 언급이 나왔나?

6월 25일 독일 연방국회는 총2,616억유로 상당의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이 중 381억 9천만유로를 신규부채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번 신규부채를 포함해 독일의 총부채

는 1조 5천억유로에 달하며 이는 국민 개인당 2만유로(한화 약 2,4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조 5천억유로의 부채는 독일의 전체 GDP의 68%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며, 이는 EU의 국가부채 허용치인 6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금액이다.

아울러 독일 헌법 115조에 따르면 신규부채는 독일연방정부의 투자액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는데, 2006년중 독일 예산안은 국가투자액을 제외하고도 150억 유로의 신규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독일 부채 왜 이렇게 급증했나?

먼저 노령화로 인한 독일의 사회안정보장제도 시스템이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연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연간 예산의 1/3가량이 연금, 실업자 구제 등 사회안정보장비용을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 정권인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이 추진한 노동개혁안인 Hartz 4의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막대하다.

두번째로는 기존 부채의 이자지급 금액의 급증으로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가 불가피한 점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1조 5천억유로의 이자지급 금액으로 매일 1억 7,500만유로를 지출하고 있어 신규 부채가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번째로는 Elterngeld(부모보조금), Erziehungsgeld(교육보조금), Kindergeld(아이보조금) 등의 고령화 사회방정책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에 기반한다. 그러나 독일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지원책이 없이는 저출산율 문제와 경제 부양이 불가능한 상태로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 독일 부채 위기 해결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현행 16%에서 19%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추가 세입금을 통해 독일 예산안의 균형을 꾀하고 자 하는 것이 독일 대연정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독일 철도망의 민영화 및 독일 고속도로망의 유료화 등이 향후 수년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수증진을 위한 상점개폐법(백화점 및 상점



의 일요일 영업금지법)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독일정부는 2006년 중 독일 내수증진 및 수출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확대되고 전반적인 영업환경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세수 역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독일 Merkel수상의 국가부도위기 발언은 실제적으로 독일의 현 상황이 부도위기가 아닌 국민들과 정치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미래 독일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고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독일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 2007년 정부 투자액과 신규부채액이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EU차원의 신규부채 GDP대비 3% 이하 역시 지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독일의 경제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경제무역정보 2006-06-27]

정책 흐름



-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재정경제부)
-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기획예산처)
- 200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기획예산처)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이 원고는 2006년 7월 5일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지난해말(05.12.28) 마련된 금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상반기중 정책 추진상황,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 및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각 부처·연구기관과의 협의,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음
 - 그간 각 부처·연구기관의 정책과제 제출(5.12~5.31), 설문조사 (전문가·일반인 대상, 6.5~9),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 거시경제점검회의(연구기관·관계부처 참석, 6.14) 등을 토대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였고,
 - 연구기관장 간담회(6.28), 경제단체장 간담회(6.28)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6.30), 당정 협의(7.5) 등을 거쳤음

I.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과 평가

1. 경제운용 실적

- ◇ 상반기중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 (I) 거시정책의 탄력운용 등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 (II)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개방을 위한 제도 개선
 - (III) 사회안전망 확충과 미래 위험대비에 중점을 두어 정책 추진
- ◇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마련한 대책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과제는 의견조율 등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

(1)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조성

-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 운용
 - 재정은 금년도 경기흐름 전망(上高下低)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간에 고르게 집행(재정집행 진도율(1~5월간) : 42.8%)
 - 통화정책의 경우 경기 회복세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중 2차례 콜금리 인상(3.75%(05.12월) → 4.00% (06.2월) → 4.25%(6월))
-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안정노력 강화
 - 장기국채 발행(06.1월 이후 20년물) 등 채권시장 수급 기반을 확충하고 가계·중소기업대출의 적정화 등 금융시장 안정 도모
 -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 8.31후속대책 마련(06.3.30)

- 에너지효율화 등 고유가대책 마련, 외환시장 수급안정 노력 등 유가·환율을 비롯한 대외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2)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시스템 선진화·개방

-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중소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06.4.6),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06.4.14),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06.6.8) 등을 마련
 - * 중소기업 투자관련 실태조사 실시,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 교수·연구원 창업활성화,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 등
 - 서비스 경쟁력강화를 위한 7대 중점과제*를 선정(06.3월)하여 추진
 - * 지식기반서비스, 교육, 의료,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
- 금융·재정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 강화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 마련(06.2월),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추진 등 금융시스템 개혁 추진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및 국유잡종지 전수실태조사 실시, 민간위탁 확대 등 국유재산 관리혁신 추진
- 대외개방 확대 및 동북아 금융·물류허브기반 확충
 - 한·미 FTA 협상 개시(06.6월 1차협상), 멕시코·ASEAN과의 FTA 협상 진행 등 능동적인 대외개방 추진
 - 금융허브추진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금융전문대학원 개원(06.3월) 등 전문인력 양성노력 강화
 -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화와 함께, 인천공항 2단계사업 추진, 부산항 신항 조기 개장(06.1월) 등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

(3) 동반성장 노력 강화 및 미래 대비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 장애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서비스 강화 등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

-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先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 (06.3월)
- 사회적 일자리 확대, 고용지원 인프라 강화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 (당정 공동특위 개최, 7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성과공유제, 기술·인력교류 촉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협력 대상범위 확대 등 상생협력 확산에 역점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06.3월)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착실히 대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06.6월)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노력을 체계화
-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등을 반영
-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적보증 방식의 역모기지 도입방안을 마련 (06.2월)
- 중장기 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제공할 국가재정법 제정을 추진(국회 계류중)하고 국가채무관리체계 개선 노력 지속

2. 경제운용 평가

- 유가 상승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잠재수준의 성장세 유지
 - 1/4분기 성장률이 6.1%를 기록하였고,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내수와 수출간의 균형을 시현
 - * 실질 GDP(%) : (05.1/4)2.7→(2/4)3.2→(3/4)4.5→(4/4)5.3→(06.1/4)6.1
 - * 민간소비(%) : (05.1/4)1.6→(2/4)3.0→(3/4)4.0→(4/4)4.2→(06.1/4)4.8
 - * 수출(통관) : (06.1)3.5→(2)16.6→(3)12.1→(4)11.7→(5)20.3→(6)19.2
-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한 선제적이고 신속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등으로 거시경제의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 최근의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정책적 대응노력이 필요
- 부동산 시장은 8.31대책 및 후속대책의 시행 초기단계

로 정책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경제 저변을 구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
 - 유가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GDP와 소득지표(GNI)간 괴리가 지속

실질 GDP와 실질 GNI 추이(전년동기 대비, %)

	05년					06.1/4
	1/4	2/4	3/4	4/4		
· 실질 GDP	4.0	4.0	4.0	4.0	4.0	4.0
· 실질 GNI	0.5	0.5	0.5	0.5	0.5	0.5

-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구조적 어려움(낮은 생산성, 공급과잉 등)이 지속되어 경기회복 확산에 한계
- IT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 (1~5월중 평균 31.7만명 증가)
- 구조개혁 과제의 성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성장여지가 큰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부문도 구조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
 -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개혁 과제의 경우 입법 지연 등으로 성과가 미흡
 - 한·미 FTA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

- 경기회복,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의 개선이 미진한 상황*
 -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자활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서민층의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음
- *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전국 가구) 추이 : 7.23(03) → 7.35(04) → 7.56(05) → 8.36(06.1/4)



□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부

진하고, 노사관계 등의 분야는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율 등의 과정에서 추진이 다소 지연

⇒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II. 경제여건 점검 및 전망

1. 대내외 여건

- ◇ 하반기에는 대외여건의 변동성이 상반기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 국제유가,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 소지,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 조정 가능성 등 불확실요인이 상존

- (세계경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 미국과 중국 경제는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과 유로 지역은 견실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잠재 성장률 ¹⁾	2005 ²⁾	2005 ³⁾			
			IMF		OECD ³⁾	
			(06.4)	(05.9)	(06.5)	(05.11)
· 세계경제성장률	2.4% 수준	4.8	4.9	4.4	3.1	2.9
(미 국)	2.9~3.0%	3.5	3.4	3.5	3.6	3.5
(유 로)	1.9% 수준	1.3	2.0	2.0	2.2	2.1
(일 본)	1.2~1.4%	2.7	2.8	1.7	2.8	2.0
(중 국)	-	9.9	9.5	8.5	9.7	9.4
· 세계 교역량	-	7.3	8.0	7.4	9.3	9.1

(주) 1) OECD 추정(06.5), 2) IMF기준, 3)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 기준

-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유가급등세는 진정되고 있으나 배럴당 60\$대의(Dubai油 기준)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여타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

- * 로이터지수(17개 원자재 가중평균) : (06.1)1,862, (3)1,924, (5)2,026, (6)1,995
- 고유가,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석유수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원유 수급의 불균형과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기관별 국제유가 전망 (Dubai 기준, 기간평균, \$/b)

전망 시기	04년	05년	06년	
	실적	실적	05.12월	06.5월
英 세계에너지 연구센터(CGES)	33.6	49.4	52.4	62.7
美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			52.3	61.7
美 에너지정보청(EIA)			56.3	62.7

- (국제 금융시장) 인플레이 압력 증가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축소 및 위험회피 경향 강화 등이 나타날 소지
 - 중국 위안화의 큰 폭 절상 가능성은 낮으나 미국 경사수지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주요국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소지
- (세계 IT경기) 메모리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과잉 해소, 수요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주요 예측기관 IT경기 전망

	(증가율, %)		
	2004	2005	2006 ^e
· 반도체(WSTS, 06.5)	28.0	6.8	10.1
· D램(WSTS, 06.5)	60.9	△4.7	11.4
· 플래시메모리(WSTS, 06.5)	33.0	19.0	20.5
· 휴대폰(Gartner, 06.1)	29.6	20.5	10.4

(주) 반도체, D램, 플래시메모리는 매출액 기준, 휴대폰은 물량 기준,
 (출처) WSTS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Gartner : 정보기술산업 연구조사기관

- (대내여건) 경제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가격 움직임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 고유가 등으로 가계·기업의 경제심리가 다소 위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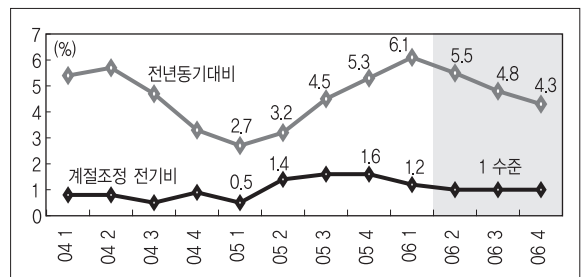
고 있으며,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경제성과 부진으로 이어질 소지

- * 소비자자기대지수(통계청) : (06.1)104.5 → (2)103.4 → (3)103.4 → (4)100.6 → (5)98.0
- * 기업경기실사지수(한은) : (06.1)90 → (2)92 → (3)95 → (4)97 → (5)94 → (6)86
- 8.31 정책과 후속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
-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 등이 지속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영향을 받을 소지

2. 경제전망

- (성장) 유가·환율 등 하방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대로 잠재수준(5%)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上低下高 성장의 반사효과등으로 하반기 4% 중반 전망
 - * 2/4분기 이후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률이 1% 수준을 지속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5%를 소폭 상회 예상
 - 민간소비는 고용과 임금 등 소득여건의 완만한 개선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설비투자는 내수 회복과 환율하락에 따른 자본재 수입 가격 하락 등으로 개선흐름을 지속할 전망
 -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추이, 건설경기 순환국면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전망
 - 수출은 세계수요 호조와 우리 제품의 비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두자리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참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합의 전망(Consensus forecast)

: 평균(Mean) 전망치 5.1%, 중위(Median) 전망치 5.2%

- 경기회복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금년도 5% 내외의 성장에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 IMF

IMF ('06.6)	OECD ('06.5)	World Bank ('06.3)	Global Insight ('06.5)	한국은행 ('06.7)
5.5	5.2	5.0	6.0	5.0
KDI ('06.4)	금융研 ('06.7)	삼성研 ('06.5)	LG研 ('06.4)	
5.3	5.2	4.8	4.7	

〈주〉 합의 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 전망치 중에서 최
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의 단순 평균치와 중위치를 사용

- (고용) 당초 전망보다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35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전망
 -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가 추세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고용 개선폭을 제약
- (물가) 소비자물가는 3% 이내에서 안정될 전망
 - 하반기로 갈수록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압력이 커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당초 전망(150억불)보다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연간 30~50억불(GDP의 0.5% 내외) 수준 흑자 전망
 -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내수회복과 유가상승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
 - * 유가상승으로 인한 흑자 감소폭 : 80억불 내외
- 2005년 원유도입물량(8.4억 배럴) × 유가상승분(배럴당 9\$: 당초 금년 유가 전망 54\$/b → 수정 전망 63\$/b)

2006년 경제전망 요약

	2005년 실적	2006년 전망	
		당초(05.12)	수정(06.7)
• 경제 성장률(%)	4.0	5 내외	5 내외
• 취업자 증가(만명)	30	35~40	35 내외
• 소비자 물가(%)	2.7	3 수준	3 이내
• 경상수지(억불)	166	150 내외	30~50

- (내년 전망)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및 고용 증가세 예상
- 다만,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위험요인이 있으므로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필요

III.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기본방향〉

◇ 대내외 여건 변화와 상반기 정책 추진성과를 감안하여 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되,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경제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 하반기에는 금년 연간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구조개혁에 중점

* 경제운용 목표 :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기반의 구축

* 5대 과제 : 안정적인 거시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시스템 선진화,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 준비

i) 우선,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꺾이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거시차원의 경기관리노력과 부문별 대책 추진

ii)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부문 지원 중심의 미시대책을 병행

-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면서 인적·물적자원 투자 확대,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경주
-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구조조정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등 동반성장 노력 강화

iii) 구조개혁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시스템 혁신과 대외개방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제고

(참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경부-KDI 공동으로 전문가(227명, 학자·기업인 등), 일반 국민(481명, 재경부 PCRM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① 하반기 경제전망 :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경기가 나빠질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전문가는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 일반 국민은 경제불안 심리를 지적

	대외여건 악화	수출둔화	기업투자 부진	경제불안심리
경제전문가	43.8	21.3	10.6	21.9
일반 국민	24.2	9.2	11.7	39.2

②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 :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응답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	안국화 완화 등 사회통합	부동산 시장 및 물가안정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전문가	60.8	2.6	15.4	21.1
일반 국민	58.2	10.1	16.0	11.1

③ 경기활성화 방안 : 투자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규제개혁을, 소비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응답

〈투자〉	정책일관성유지	규제개혁	금융·세제지원	노동유연성제고
경제전문가	41.4	41.4	4.8	6.6
일반 국민	32.8	42.6	6.8	6.8

〈소비〉	일자리창출	부동산·시장안정	복지확대	가계부채조정지원
경제전문가	70.0	22.0	0.9	4.0
일반 국민	53.3	29.0	4.3	9.2

④ 안국화 대응 방안 : 일자리 창출을 가장 긴요한 과제로 응답

	일자리창출	부동산·시장안정	중·장기·세제지원	사회안전망확충
경제전문가	52.0	19.4	13.2	7.5
일반 국민	39.7	10.6	13.8	15.6

◇ 하반기 경제운용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경제불안심리 해소에도 노력할 필요

• 경제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추진

1. 경기회복세의 지속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 경기회복세의 지속성 강화

□ 잠재 수준의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 운용

-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을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
- 재정은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이 큰 상황이므로,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금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중점

* 주요사업비 하반기 지출 : (05년) 67.3조원 → (06년 계획) 88.8조원

- 세계경기, 국제유가 등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위한 기반 확충

- 관광·레저시설 확충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유도하는 등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노력 강화
-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노력 강화
-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해외마케팅·수출금융 지원 등을 추진

□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

- 원활한 기업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기업도시 전담추진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 제한 완화를 통해 대기업 참여를 유인
- 외국기업·중소기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전담추진기업 출자기준(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을 일부 완화
- 전담추진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이연
-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 등 절차 간소화
- 혁신도시는 기 발표된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하반기)

- BTL, BTO 등 민자사업의 내실화 및 투자 확대 추진
- 학교복합시설 투자를 위한 시범사업(06.4월 8개 선정) 및 금융기관의 간접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BTL 참여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자사업 증장기 발전전략' 수립
- * BTL사업은 상반기중 시설유형별 표준모델 정립 등 사업조건 구체화, 사업참여 부담완화 등 제도개선을 旣 추진

(2) 부동산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기반 강화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과 거래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 추진 가속화
- 06.9월까지 2~3개를 포함, 07년 상반기까지 총 3~4개의 시범지구 지정 추진
-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지구제도의 통합·개선 추진
-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반기), 단계적 시행
- * 청약 예·부금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를 현행 추첨방식에서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
-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 공급 등 다자녀가구 청약우대
- 공공부문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주거복지의 획기적 증진과 '소유'에서 '거주' 중심의 주거문화 정착 방안 마련 추진
-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를 감안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2.5%, 취득세 1.5%, 등록세 1%)와 개인·법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4%, 취득세 2%, 등록세 2%)의 세율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강구
-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기준)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현행 50%에서 5%(3억원 이하) 또는 10%(3~6억원)로 하향조정 추진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노력 강화
 -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 분산 등 중앙-지방간 협의를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추진
 - 최근의 물가안정 기조를 감안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07년 이후에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도 보완
 - * 물가안정목표제도는 韓銀法에 의하여 韓銀이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현행 韓銀 중기물가안정목표 : 04~06년 평균 근원인플레이션 2.5~3.5%)

2.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투자 활성화

-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3/4분기중 방안 마련)
 - 법인 설립절차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절차를 축소·폐지하고, 표준화·On-line화하는 방안 추진
 - * 최저자본금제 폐지, 정관·의사록 등 법인설립 관련서류 표준화 등 추진
 - 공장 설립절차는 입지 및 건축 인·허가 단계별로 담당기관·구비서류·관련법규·소요기간·비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규제 개선
- 입지·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
 - 저가의 임대료로 장기(50년간) 임대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인 'NewBizPark' (연간 평당 5000원 내외)를 하반기에 최초 공급
 - * 06.6.13일 총 62만평(영남권 27만평, 호남권 35만평)을 예비 지정하였으며, 6개월간 입주 희망기업의 청약을 받을 예정
 - 관리지역내 '공장설립가능지역'에서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 신·증설 촉진
 - 시장·군수가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전 또는 지정시에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완료하고, 개별공장 설립시에는 당해 절차를 면제
 -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 등 외국인력제도 검토·보완

*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로 활용

□ 금융·세계 지원 여건 개선

• 벤처캐피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창투조합 투자에 대한 세계 지원

- 기관투자자에게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자펀드 출자 기능을 부여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자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혜택 부여

* 현재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에 비과세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06년말 → 08년말)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06년말 → 09년말)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

•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10년 → 5년)를 단축하여 설비투자 확대 지원 (7월중 시행)

* LCD 제조업과 동일하게 제조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초기 자금부담 완화

•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 5,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하반기)

* 설비투자 현황, 투자결정 요인, R&D 투자, 퇴출장벽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R&D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현행 5백만불 이상 투자) 완화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05.6월)*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 보증료(0.1~0.3%p 감면)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중소벤처창업, 경영혁신, 구조조정 자금 등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자금구조로 개편(하반기중 개편하여 07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 06년 계획 : 대출 2.9조원(1~5월 실적 1.2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보증공급 16.7조원(1~5월 실적 7.3조원, 신·기보)

• 수출용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3/4분기)

•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하반기중 4,500억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을 통해 자금 지원(06.7월, 산업은행 1,000억원)

* Mezzanine Financing :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금리 외에 성공보수(추가 금리 또는 주식)를 받는 금융상품

•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기업평가 및 자금지원이 연계된 공공구매론 시행 (하반기)

•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지역신보 보증공급(억원) : (05년 실적) 2.1조원 → (06년 계획) 2.2조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06.3월) 및 시행령(06.6월) 개정으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규정(금융기관 중소기업대출금의 1천분의 0.2±0.0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상생협력법 관련법령 제정,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완비

• 성과공유제를 10대~30대 그룹으로 확산, 수급기업편

드를 2·3차 협력업체까지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등 상생협력 다양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강구
- 시설공사·물품구매 등 정부조달 입찰시 상생협력 우수 기업에 대해 실효성있는 가점 부여 등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시행(06.9.4일) 과 함께 관련규정 정비 등을 추진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 (06.8월 설치 예정)를 통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 컨설팅, 자금, 종업원 교육, 유희설비 매각 등 다양한 시책을 연계하여 지원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검토
-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경감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물류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 주는 제도의 일몰시한(금년말) 연장
-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토지·건물 등)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신설 등

(3)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을 차별하고 있는 잔존 장애요인을 발굴·해소

- 제조업에 비해 세부담이 높은 특정한 서비스업*(호텔업, 물류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의 재산세 과세현황, 과세대상 토지분류의 적정성 및 업종별 세부담 증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검토
-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읍면·산업단지·공업지역소재) : 재산세 분리과세(0.2%)
- * 서비스업 건축물 부속토지 등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0.2%~0.4%)와 중부세 과세(0.6%~1.6%)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집중 육성할 서비스업종을 선정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 아울러, 서비스산업 대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서비스 유형별 특화된 경쟁력 강화 추진

〈 지식기반서비스업 〉

- (법률) 외국변호사의 건전한 국내활동 보장을 위해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추진)
- (디자인) 디자인 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중점 추진, 해외수출 지원 등 국내 디자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방송·방송광고) 외주제작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외주제작을 활성화하고, '방송광고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
- *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주제작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4/4분기)
- (공연예술) 민간자금과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한 공연예술 전문 투자펀드 조성 추진(약 100억원)
- (귀금속·보석) 유통구조 개선 등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4/4분기)
- (게임·영화산업)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2010 게임산업 육성 세부전략'을 마련(4/4분기)하고 영화산업 투자환경 개선 등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4/4분기)

〈 사회서비스업 〉

- (의료 서비스) 의료수가체제 유연화*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공급적정화와 경쟁력 강화 유도
- *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활성화와 의료기관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수가체제로 전환하고, 영세 중소병원의 장기요양병상 전환 유도를 위한 요양형 수가를 개발
- 아울러, 공보험 보장성 확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가운데 첨단의료기술 발전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상품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
- (교육 서비스) 공영형 혁신학교(가칭) 시범운영 추진 등

학교운영방법을 혁신하고,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 간, 유사학과간 통·폐합 등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촉진 등을 추진

〈 관광·레저업 〉

-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관광단지 제도의 개선,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평가·환류체계 마련 등을 위해 '관광자원개발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서해안 관광벨트 및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06.12월) 등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4)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성과 제고
 - 저소득층의 '방과후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프로그램 수강권을 지급하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및 전문대 근로장학금 확대방안 마련
 -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강화하여 개인의 참여 인센티브를 제고
-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대학 등 교육기관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 (06년말 → 08년말)
 - * 교육기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시 전액 손비 인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 연장(06년말 → 09년말)
 - * 연구·개발비용의 일정액(예 : 중소기업의 경우 지출액의 15% 또는 4년 평균 대비 초과지출액의 50%)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 연장(06년말 → 09년말)
 - *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위한 설비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산학협력 활성화
 - 대학교수의 산학협력 실적을 교수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교원 보상실적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추진

- 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검토

(5) 일자리창출 인프라 확충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
 -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주도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인증·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법안(3.23일 국회 제출)의 조기 입법 추진
 -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에 맞추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연계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손비 인정 추진
 - *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과는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업
 - 사회적 일자리 예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의 정비, 유사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연계형 사업 확대 추진
- 고용지원인프라 확충
 -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고용알선, 능력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센터·인력공단·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3/4분기) 하여 취업지원 서비스의 연계 강화
-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출산여성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06.7월), 채용·승진·해고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 추진
 - 50대 이상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대책을 마련 (7월중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발표 예정)
 -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를 시범 운영 (06.10~12월)
 - *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개인카드 형식으로 수령하여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음

3.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1) 경제시스템 선진화

- 금융·외환시스템 선진화
 - 현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하반기중 국회에 법률안 제출)
 -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대차 거래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특별규정 신설 (7월 시행)
 - * 채권대차거래는 채권보유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제3자는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제공하며 약정기간내 동종·동량의 채권을 반환하는 거래임
 - 금융규제 기능별(업무영역·지배구조·제재 등)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
 - * 분쟁발생시 책임분담,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규율 및 금융감독당국간공조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외 선물거래소와의 원화 선물 상장, 비거주자의 원화자산 투자여건 개선* 등 원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 추진
 - *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세제 개편 추진
 - 금년에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와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의 정비에 중점을 두어 입법화 추진
 - * 현금거래 노출 강화, 장기기장을 통한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성실사업자 우대 등
 - 다만,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제도는 일몰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등 선별적으로 추진
-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포함하는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 시장경제 기능 강화에 맞추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검토
 - * 7월부터 '시장경제 선진화 T/F' 를 구성·운영하여 금

년내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작업을 착수 하되,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

- 연금제도 등 사회보험 개혁
 - 국민연금의 증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추진
 - * 국민연금법 개정안(03.9월/04.6월 국회 상정), 복지부 수정안 마련(06.6월)
 - 금년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에 따라 국고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중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 국고지원 방식 개선 :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
→ (개선안) 직장·지역 구분없이 전체 예상보험료 수입의 20%(5년한시)
 -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을 적정화하고 재정 소요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 단기적으로 진료비 심사강화, 수급권자 사례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치의 도입, 지불제도 개선 등을 검토
 - 고용·산재보험의 보험요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
- 선진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을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가 보다 내실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
 - * 주요 내용 :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직권중재제도 합리화, 부당해고 구제 절차 다양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 한·미 FTA 협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 등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마련
 - 하반기중 한·EFTA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비준 등을 마무리하는 한편, 멕시코·ASEAN과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캐나다·인도 등과도 07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 ‘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체계화하고,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4분기)
 -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 개시(3/4분기),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의 해소 등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종합물류업 인증제(06.1월 시행)의 정착, 물류전문대학원 개원(06.9월), 물류정책기본법 제정(하반기) 등을 통해 물류산업 선진화기반 마련
 - 개발사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송도 국제업무단지 주요 프로젝트 착공, 외국학교·병원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 대외 경제협력 강화
 -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
 - * 06년 신규사업(단위:배럴) : 러시아(서갑차카, 14억), 나이지리아(2개광구, 12억), 예멘(3개광구, 15억), 아제르바이잔(이남광구, 4억), 캐나다(오일샌드, 2.5억)
 - 07~09년간 ODA 중기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유·무상 및 다자간 협력계획을 포괄하여 개도국과의 체계적인 개발협력 추진

4.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

(1) 재래시장·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대책

-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비전 및 성과지표를 취약부문별로 제시하고,
 - 성과 이행 중심의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실적을 정례적으로 점검
- 취약부문별로 경영개선 및 구조개혁 등 차별화된 지원

〈재래시장〉

- 품목별 ‘공동구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인의 상품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주차장 등 상업기반시설 확충(하반기 506억원 배정)

- 재래시장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시장을 지정(06년 25개)하여 경영혁신 모범사례 발굴·확산

〈영세자영업자〉

-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소매·음식업 등의 체인화·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컨설팅지원 확대(06년 3천명) 및 직업훈련(06년 5천명)을 추진

〈택시·화물(택배)·덤프트럭등 운송업〉

- 과잉공급 해소방안과 함께 운송업계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검토 (3/4분기)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 추진과 함께, 관련법령 제·개정, 차별시정위원회 설립 등 후속조치 준비
- 비정규직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하여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 (06.7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 *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항(산재보험 적용 등)은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출

(2) 사회안전망 확충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최저생계비의 120%미만 → 130%미만)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확대 (06.7월 시행)
 -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치매·중풍노인 등에 대한 보호 강화(06년 노인요양시설 102개소, 그룹홈 155개소 등)
 - 각종 장애인 지원대책(소득보전, 이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의 통합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 제고
 -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사업 및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과 함께, 부도 임대아파트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사업 : 15년까지 각각 연

간 4.5천호 공급

- 서민 주거실태조사(06년 하반기) 결과 등을 반영, 공급물량 추가확대 검토
- *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 06년 2.5만호

-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탈빈곤 지원
 -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EITC 도입 추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 * 시행 초기에는 소득과약이 가능한 근로자계층부터 시행하고, 소득과약 정도를 보아가면서 적용대상과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자활근로유형 개선(단순 근로유지형 → 시장진입형), 자활후견기관 차등지원 등을 통해 자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서민·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
 - (서민)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시한(금년말) 연장 검토
 - (근로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 검토
 - (자영업자)세원투명화 등으로 인하여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 (06년말 → 08년말)
 - (농어민)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법인세·양도세 면제 등)의 일몰시한(금년말) 연장 검토

(3)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
 -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계획 : (05년) 1,473개소 → (06년) 1,623개소
 - * 보육료 지원 확대 : (05년) 41만명/2,671억원 → (06년) 61만명/4,386억원
-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역모기지 보증기금' 제정

을 설치하는 등 공적보증 방식의 역모기지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

- * 하반기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07년 역모기지 시행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조기 입법(05.11월 국회 제출) 및 관련법령 제정 추진

(4) 부문간 균형발전의 추진 가속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마련(06.7월), 토지 취득의 마무리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본격화
- 농어업 지원 및 체질강화 대책 추진
 -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06.5월)을 차질없이 추진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 마련(06.12월), Inno-biz인증 업종에 농업 분야 신설(06.8월) 등을 추진
 -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2010년까지 1천억원 규모)을 통한 투자 확대와 함께,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 119조(04~13년) 투융자 계획을 재점검·조정하여 한·미 FTA 피해대책을 비롯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대책을 마련 (06.12월)
 -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마련 (06.12월)
 -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 확산(자율관리공동체 확대 등)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
-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산업·경제여건에 맞는 새로운 추진방식을 마련
 - 균형위를 중심으로 산자부 등 관련부처, 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등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

◇ 이상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부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 이 원고는 2006년 6월 29일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에서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07년 요구안 현황

-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37.0조원으로 금년보다 6.8% 증가
-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7.6%, 기금은 4.7% 증가

< '07년 요구현황 >

(조원)

	'06예산	'07계획 ¹⁾	%	'07요구 ²⁾	%
총지출	222.0	234.8	5.8	237.0	6.8
○ 예산	155.3	166.0	6.9	167.1	7.6
• 일반회계	114.6	123.7	7.9	126.1	10.0
• 특별회계	40.6	42.3	4.2	41.0	0.9
○ 기금	66.7	68.8	3.1	69.8	4.7

* 1,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규모

2, 6.20일까지 60개 중앙관서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

- 분야별로는 국방(9.9%), 사회복지·보건(9.1%), 교육(8.1%) 분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 수송교통·지역개발(△3.5%)과 산업·중소기업(△0.8%) 분야는 지난해 보다 축소 요구
-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중 '07년 예산요구시 지출한도를 준수한 기관은 38개 부처('05년 32개 부처)
- 부처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지출한도 미준수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삭감 등의 방안 검토

< 지출한도 준수 현황 >

계(부처수)	지출한도 준수	지출한도 미준수	지출한도 미통보
60	38	16	6

2. '07년 요구안 주요특징

① 요구 증가율 현저히 둔화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전 2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던 과다요구 관행 탈피
- 또한,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요구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경향

< 예산요구 증가율 추이 >

계(부처수)	제도 도입전				제도 도입후		
	'01	'02	'03	'04	'05	'06	'07
요구 증가율(%)	25.3	24.5	28.6	24.9	9.4	7.0	6.8

* '01~'04년 : 예산총계 기준 증가율 적용

② 세출구조조정 지속 추진

- 세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실적이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
 - '07년 요구안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4.5조원** 수준

• 구조조정 규모(조원)	'06예산	'06예산	'07요구
	△2.4	△4.2	△4.5

-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감액 요구하는 사업도 다수 발생

(조원)

사업명	'04요구	'05요구	'06요구	'07요구	증가율
• 일반국도	12,500	13,912	9,354	8,849	△5.4
• 광역상수도	2,290	3,493	3,367	769	△77.2
• 중규모용수개발	3,217	2,844	2,618	2,170	△17.1
• 국가어항건설	1,800	1,735	1,368	1,098	△19.7

③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요구

- 기존 품목별·회계별 통제위주의 예산체계를 정책·성과 위주로 개편
- 유사·중복사업을 정책목표 중심으로 통합합·단순화 하여 예산 요구 → 사업별 칸막이 축소로 효율성 제고

* (예시) 산자부 : 45개 → 19개(△26개)

반도체연구기반혁신(80)+나노기술클러스터 조성(210)+광양자빔연구시설구축(75) ⇒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기반구축(325억원)

3. 향후 예산편성 계획

-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
- 예산안 편성지침(유형·비목별 지침)과 자원배분 12대 원칙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공통기준 등을 적용하여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

□ 향후 주요일정

• 6월 20일까지	• 각 부처, 예산안 요구
• 7~9월	• 부처 예산요구안 협의·보완
• 9월말	• 정부안 확정
• 10.2일까지	• 국회 제출

참고 1 '07년 분야별 요구 현황(총지출 기준, 예산+기금)

(조원 %)

분야	'06년	'07요구	증가율
1. 사회복지·보건	56.0	61.1	9.1
2. 교육	28.8	31.1	8.1
3. 수송·교통·지역개발	17.8	17.1	△3.5
4. 농림·해양수산	15.1	15.2	0.6
5. 산업·중소기업	12.4	12.3	△0.8
6. 환경보호	3.8	3.9	3.5
7. 문화·관광	2.9	2.8	△1.3
8. 국방	22.5	24.8	9.9
9. 공공질서·안전	10.2	10.9	6.6
10. 통일·외교	2.6	2.7	3.5
11. 과학기술·통신	9.0	9.3	3.0
12. 일반공공행정	38.8	42.4	9.2
(지방교부금)	(21.4)	(24.1)	(12.7)
(국공채인수·이자상환)	(10.0)	(10.3)	(7.1)

【 사회복지·보건 】 56.0 → 61.1조원 (9.1%)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기초생활보장급여	23,412	25,777
• 의료급여	26,623	35,895
• 4대 연금 지급	134,226	151,065
• 국민임대주택 지원	8,989	9,288
• 자활지원사업	2,618	3,234
• 장애수당	1,119	1,730
• 경로연금	2,155	2,177
•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86	6,135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38,277	39,817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578	626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노인 돌보미 배우처	375	• 수요자 중심의 노인 복지 확대
• 실업계고교 취업지원	48	• 실업계 고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선택 지원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종합 지원	13	• 한부모가족 교육, 상담, 양육 등
• 혈액안전 감시	28	• 수혈부작용 조사 및 혈액정보 관리 등

【 교육 】 28.8 → 31.1조원 (8.1%)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대학구조개혁	700	700
• 유아교육 지원	1,997	3,967
• 대학특성화 지원	600	600
• 장애아교육지원	133	139
• 농산어촌교육여건 개선	454	504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1,490	2,282
• 외국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바로 알리기	94	353
• 산학협력력제체 활성화 지원	500	500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방과후 학교 지원	1,455	• 농산어촌 683, 저소득층 450, 도시 초등보육 지원 70, 대학생 멘토링 지원 252
• 농산어촌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	20	• 농산어촌 100개 유치원 지원
• 법학전문대 제도 도입 및 운영	9	• 법학적성시험 개발비 8, 대학원인가 심사비 1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14	• 자녀교육 활성화 지원 10, 다문화교육 연구센터 지원 4

【 수송 · 교통 · 지역개발 】 17.8 → 17.1조원 (Δ3.5%)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부산신항 · 광양항	7,323	7,798
• 국도 건설	33,594	27,671
• 민자유치건설 보조금	10,002	12,621
• 호남고속철도 건설	300	502
• 산업단지 진입도로	2,700	2,000
• 국지도 건설	5,574	5,954
• 하천정비	6,710	6,285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부산~김해 경전철	480	• 부산~김해간의 교통수요 대비
•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	5	• 양산시의 교통난 해소설계비
• 강릉~제진 철도건설	10	• 동해안 간선철도망 구축 및 대륙 철도연계 기반구축을 위한 설계비
• 용달화물차량 탐장착 비용 지원	32	• 과잉공급된 용달화물의 택배용 탐장착 차 량으로의 구조변경 지원
•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원	40	•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 농림해양수산 】 15.1 → 15.2조원 (0.6%)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5,780	6,869
• 수리시설개보수	3,454	3,500
• 농어민건강보험료	1,359	1,272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534	1,200
•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157	271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67	609
• 쌀소득보전변동직불	9,096	13,112
• 후계농업인 육성	228	308
•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	150	250
•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249	286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고품질쌀브랜드 육성 지원	530	· 쌀배달단계에서 수확후 관리까지 종합관리
· 농촌여성결혼이민자기족 지원	19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응교육
· 가락도매시장 현대화	396	· 가락시장 현대화 시설자금 지원

【 산업 · 중소기업 】 12.4 → 12.3조원 (△0.8%)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인프라 구축	5	20
· 자유무역지역 조성	206	234
· 산업기반기술 개발	1,350	2,539
·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2,520	2,652
· 유전개발사업 출자	1,645	2,944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1,010	1,149
· 신재생에너지 보급	410	530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1,596	2,565
· 신학연 공동기술개발	461	1,530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저소득층에너지시설 효율 개선	100	·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기저재 보급 지원
· 한 · 알제리 경제협력사업	20	· 양국 경협증진방안 수립, 알제리 산업경쟁력 분석 등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구축	15	·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체험관 설계,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 환경보호 】 3.8 → 3.9조원 (3.5%)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하수도시설 확충	12,216	12,320
· 4대강 수질개선 대책	115	179
·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2,082	2,638
·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1,728	1,934
· 자연형하천정화 사업	570	580
· 생물자원보존종합 대책	64	74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급수체계재조정방안 구축	15	· 전국의 급수체계를 권역별로 구분, 권역내 최 적급수체계 마련
· 공공수역건강성 보전	18	· 공공수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전 · 회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수행 및 대책
· 폐기물처리시설	30	· 소각폐기물을 열원으로 활용

【 문화 및 관광 】 2.9 → 2.8조원 (△1.3%)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85	121
·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추진 * 부지매입 및 보상비 제외	455	703
· 국립디지털 도서관 건립	86	425
· 문화산업 핵심역량 강화	192	216
·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2,702	2,431
·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원	6	74
· 장애인 국제체육교류 지원	9	21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영화산업 지원금	1,000	· 총규모 4,000억원(국고 2,000, 모금 2,000)
• 민족문화원형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	14	· 신화, 무속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등
• 한류사업 증진	11	· 중동, 유럽, 북중미 등 지역으로 한류 확산 사업
• 민속박물관 유물보존 건물물 설치	10	· 현재 수장고 포화상태로 인한 추가건물 확보

【 공공질서 및 안전 】 10.2 → 10.9조원 (6.6%)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외국인 체류관리	93	113
• 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보호	242	267
• 교도소 운영	643	851
• 해경 노후함정 대체건조	577	698
• 항공기 도입	230	242
• 재해위험지구 정비	1,165	1,282
• 과학수사장비 보강	57	58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압수물 관리시스템 구축	7	· 압수물 처리·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프로그램 및 서버 구축
• 이민국행정물센터 운영	10	· 업무처리정보(상담 DB)와 고객 정보를 연계 하는 콜센터 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업무의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 통일외교 】 2.6 → 2.7조원 (3.5%)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남북협력기금출연	6,500	6,500
• 새터민 후원회 지원	17	16
• 국제기구 분담금	1,567	2,292
• 한국국제협력단 지원	1,970	2,250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개성공단 인력수급 지원	980	·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숙소 건립
• 외규장각 도서 반환	1	·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연구 및 반환협상 지원 - 도서표림 운영, 디지털화 사업, 반환 협상 지원 등
• 전자여권(생체인식여권) 발행	8	· 지문, 홍채정보 등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 발급

【 과학기술 · 통신 】 9.0 → 9.3조원 (3.0%)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	1,443	1,475
• 우주발사체개발	968	1,370
• 정부출연(연)육성 지원	10,900	11,427
• u-T 허브 구축 사업	201	646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제 구축	92	95
• 정보격차 해소	315	303
• u-T 클러스터 구축	1,001	1,046
• IT기업 성장환경 조성	795	1,012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모바일 특구 조성	120	· 전세계 이동통신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GSM 서비스의 시험·체감이 가능한 필드 테스트 기반 조성
• 기술개발투자 지원	150	· IT 기술개발투자조합 결성 지원
• u-Defence 협력사업	50	· IT839 신기술 국방분야 시범 적용
• u-City 조성	35	· IT839 신기술 도시지역 시범 적용
• 위성항법시스템국시스템 및 탐색구조 단말기 개발	30	· 위치7만 서비스 및 재난시 신속한 탐색구조 서비스 제공 (갈릴레오 프로젝트)

【 일반공공행정 】 38.8 → 42.4조원 (9.2%)

〈 계속사업 〉

(억원)

	'06예산	'07요구
• 지방교부금	213,665	240,814
• 전자정부사업 지원	2,757	2,957
• 공직선거 관리	144	2,259
• 소도읍 육성	617	769
•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86	1,589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2,307	2,359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	1,000

〈 신규사업 〉

(억원)

	요구액	비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5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 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300	· 기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 편의시설 정비 등
• 소득피약 인프라 구축	194	· ETC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등

참고 2 이색사업 사례

① 노인 돌보미 바우처

(보건복지부, 복지재정과 장운정사무관)

- 차상위 중증노인에 대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 *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혜택, 노인 생활시설 입소 등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차상위 중증노인 중심 바우처 지급
- 요구액 : 375억원 (총사업비 : '07~'10년간 1,584억원)
 - * 재가노인 22,000명, 월 20만원
- 시행방법 : 지자체 수행 (70% 국고보조)

②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재정과 장운정사무관)

-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 기초영어, 보건위생, 가정방문 등의 복지교사를 사회적 일자리로 파견
 - * 교사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와 일자리를 원하는 자를 연결해 사회통합 효과 제고
- 요구액 : 5,473백만원 (총사업비 : '07~'10년간 1,207억원)
 - * 사회적 일자리 3,949백만원 : 400명, 월 82만원
 - 일자리지원 센터 1,014백만원 : 6개소, 연 169백만원
 - 복지교사 훈련비 510백만원 : 400명, 연 1.3백만원
- 시행방법 : 국가 직접수행 (보건복지부)

③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노동부, 노동여성재정과 박문규사무관)

- 취약근로자 권리보호·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
 - 체불임금 청산지원팀, 취약근로자 권리구제강화 전담팀 운영
 - * 방문 민원인 사전접수 전 심층 상담, 임금체불사건 민원서비스 등
 - 비정규직 차별시정 :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따른 전국순회 교육·홍보강화, 기업체 실태조사 및 노사정 포럼 운영
 - 기타 근로자 파견사업 제도 개선(노사 교육·홍보, 파견사업 지도·점검 등),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주 교육, 연소근로자 실태조사 등) 추진 등

- 요구액 : 2,300백만원
 - * 체불입금 청산팀 운영 500, 비정규직 차별시정 홍보 800, 파견사업 제도개선 350, 연소 근로자 보호 450 등
- 시행방법 : 국가 직접수행 (노동부)

4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 (고용보험기금, 노동여성재정과 박문규사무관)
-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훈련비 사전지원으로 훈련비 부담을 해소하고, 직무능력 향상 촉진 도모
 - *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능력개발카드를 발급,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50만원) 지원
 - 요구액 : 43,500백만원
 - * 훈련인원은 87,073명, 지원단가는 인당 50만원
 - 시행방법 : 국가 직접수행 (노동부)

5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 (여성발전기금, 노동여성재정과 심혜영사무관)
- 저소득계층의 18세미만 장애아동에 대하여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자폐,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나 소아희귀병 등 장기적·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돌보는 저소득계층 대상
 - 돌보미 이용권(쿠폰)을 발행, 수혜자에게 배포하여 필요시 사용
 - * 1가구당 4시간 이용권 80매 지원 (총320시간 40일 기준)
 - 요구액 : 2,400백만원 (복권기금 사업비로 운영)
 - * 이용권 소요 1,600(1,000가구, 시간당 5천원), 보험료 200 등
 - 시행방법 : 시·군·구 직접 수행 또는 민간기관 위탁수행 (전액 국고보조)

6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및 운영

- (교육부, 교육문화재정과 계강훈사무관)
-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운영

-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개발 및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심사
 - *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논리적 판단력, 독해력, 추론력 등 법조인이 되는 데 필요한 자질·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학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시험
- 요구액 : 900백만원('07~'08년간 총사업비 68억원)
 - *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 800, 전문대학원 인가심사비 100 등
- 시행방법 : 국가 직접수행(교육부 및 LEET 시행 지정기관)

7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

- (교육부, 교육문화재정과 최한경서기관)
- 말씨, 피부색, 문화, 인종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위한 학습 지원 및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 * 다문화가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총칭
 - 요구액 : 1,394백만원
 - * 시·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활성화 지원(학급운영비, 정보포탈비, 문화행사비 등) 960, 다문화교육 교사 연수센터 지원(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434
 - 시행방법 : 시·도 교육청, 민간 수행(100% 국고보조)

8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해양재정과 김명중서기관)
- 우수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쌀 재배단계에서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종합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육성 지원
 - '10년까지 시·군별 대표브랜드 100여개 육성 및 계약재배 내실화('05년 322천ha → '10년 423)를 통해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외국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 요구액 : 52,960백만원
 - * 우수브랜드 경영체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16,000, (16개소, 개소당 20억원, 국고보조 50%)
 - 우수브랜드 경영체 계약재배 선도금 지원 33,600, (국고용자 30%, 농협자금 70%)

우수브랜드 경영체 브랜드 컨설팅, 농가조직화 교육 · 홍보 3,360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사업, 융자사업

9 농촌지역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해양재정과 김명중서기관)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 조성
- 농촌 특성에 맞게 여성결혼이민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요구액 : 1,923백만원(총사업비 : '06~'11년까지 700억원)
 - * 30개 시·도 대상 : 방문교육 및 상담 1,503, 부부교실·가족캠프 등 가족통합 지원 188, 기타 교재비, 위탁대행비 232
- 시행방법 : 지자체 수행 (70% 국고보조)

10 수목장림 조성 사업

(산림청, 농림해양재정과 김정훈사무관)

- 새로운 장묘문화인 수목장을 시범 조성하여 산림의 훼손 방지 및 국토잡식을 예방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
 - * 매년 약 20만기의 묘지가 새롭게 설치되어 약 600ha의 산림 잡식
- 일반 국민에게 수목장림을 시범조성하여 수목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
 - * 우리나라민의 47~61%가 수목장의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음(산림조합, KBS)
- 요구액 : 700백만원(총사업비 : '07~'10년까지 7개소 49억원)
 - * 수목장림 모델 1개소 : 진입로, 전기·통신시설, 숲가꾸기 등
- 시행방법 : 국가 직접수행 (지방산림청)

11 유비쿼터스 중소기업 정책전달체계(SPI-1357) 구축

(중소기업청, 산업정보재정과 조규산사무관)

-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on/off-line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 개편

• 인터넷 정보포탈(SPI) 시스템(<http://www.spi.go.kr>)

- * 중소기업지원기관(234개)의 정책정보(7,200여개)를 실시간 제공
-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Off-Line)
 - * 증진공, 신·기보 등 74개 기관 6천여명의 「전국단위 전화연계망」 및 「전문상담가 Pool(380명)」 운영
- 요구액 : 3,320백만원
 - * 인터넷정보포탈 시스템(30억원), 중소기업종합상담 콜센터(3.2억원) 등
- 시행방법 : 국가 직접수행(중소기업특별위원회)

12 모바일특구 구축

(통신사업특별회계, 산업정보재정과 박명금사무관)

- 국내 모바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전세계 이동통신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GSM서비스의 시험·체험이 가능한 필드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
 - * 모바일특구(MSD : Mobile Special District) : 다양한 기술·주파수의 사용이 자유롭고,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의 시험 및 체험이 가능한 구역
- 요구액 : 12,000백만원(총사업비 : '07~'10년 460억원)
 - * 장비 및 서버구축 6,200, 기지국 설치 3,700, 관리센터 구축 1,100 등
- 시행방법 : 민간 수행 (100% 국고보조)

13 U-City 구축기반 조성

(정보통신부, 산업정보재정과 박명금사무관)

-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복지·안전도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신산업 창출을 선도
- u-City에 적용될 서비스의 기반과 응용기술에 대한 검증과 표준화를 중점 추진하여 안정되고 효율적인 u-City 구현을 추진
- 요구액 : 3,500백만원(총사업비 : '07~'10년 160억원)
 - * 표준모델 개발(현장시험 등) 3,400, 법·제도 정비 100
- 시행방법 : 국가 직접수행 (한국전산원)

14 U-Defense 협력 사업

(정보통신부, 산업정보재정과 박명금사무관)

- 1개 부대를 u-시범부대로 선정하여 IT신기술 선도시범 사업 실시
 - 국방· 민간분야 모두에 미래 수요가 높은 과제(물류· 시설보호· 의료 등)를 중심으로 시범사업과제를 추진, 사업수행을 통해 기술안정성 검증 및 민간분야로 확산 가능한 Business Model 발굴
 - * u-시범부대의 개념 : IT신기술을 활용하여 ①모든 병력· 장비가 유·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②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수집· 분석· 전파됨으로써 ③ 전투수행 및 군수지원 능력이 극대화된 부대
- 요구액 : 5,000백만원 (총사업비 : '07~'10년 370억원)
 - * 물류시스템 2,000, 무인경계시스템 1,000, 출입관리 시스템 400 등
- 시행방법 : 정부 직접수행 (한국전산원)

15 폐기물전 처리시설 설치

- (환경개선특별회계, 과학환경재정과 김유정사무관)
-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을 분리· 가공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 매립· 소각 대상 폐기물 최소화, 매립지 및 소각시설 수요 저감, 에너지 회수 등 자원 재활용 촉진 효과
 - 요구액 : 3,000백만원('07~'10년간 총사업비 1,500억원)
 - * 수도권 1,000, 경기 부천 450, 강원 강릉 1,400, 전남 부안 150 등
 - 시행방법 : 시· 도 및 시· 군 수행(50% 국고보조)

16 병 전역전 건강검진 제도 시범사업

- (국방부, 국방재정과 김준호사무관)
- 건강하게 입대한 병사를 군 생활 후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병 전역전 건강검진제도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군 건강관리체계 확립
 - '07년 1· 3군 4개소* 시범 실시 후 '08년 전면 시행 예정
 - * 12· 25 사단, 국군양주병원, 국군철정병원 등
 - 요구액 : 300백만원('07~'11년간 총사업비 61억원)
 - * 검진재료비, 검진비품비 구입비 및 분석평가 용역비 등
 - 시행방법 : 정부 직접수행(국방부)

17 외규장각 도서 반환 지원

(외교통상부, 일반행정재정과 박철건사무관)

- 1866년 병인양요시 반출된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협상 및 도서의 디지털화 사업 실시로 문화유산 연구 및 향유 지원
- 사업내용
 -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외규장각 도서포럼 운영 지원
 - 프랑스에 보관중인 외규장각 도서 유일본 30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
 - 정부 대표단의 프랑스 파견 및 해외 문화재 반환사례 조사 등 외규장각 반환 협상 지원
- 요구액 : 80백만원
 - * 도서포럼 운영 10, 디지털화 사업 40, 외규장각 협상 30 등
- 시행방법 : 국가 직접수행 (외교통상부)

18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 (국가보훈처, 노동여성재정과 서중해사무관)
- 대표적 독립 유공자인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남북공동으로 발굴/봉환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 6.21~24)에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사업”을 남· 북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 * 2009년은 안중근의사 의거100주년, 2010년은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
 - * 발굴 예상지역 및 규모 : 중국 대련시 여순구 24,000 m²
 - 요구액 : 1,000백만원
 - * 시굴· 자료 등 조사분석 200, 발굴단 파견 등 300, 토지보상 500
 - 시행방법 : 광복회 등 관련 민간단체(국고보조 사업)

참고 3 세출구조조정 사례

1 농림부(농특회계) 「중규모용수개발」

- 농업생산기반부문 투자축소 방향에 따라 계속지구는 조기완공위주로 지원하고 신규착수는 최대한 축소
 - * 신규착수 지구수 : ('04) 7 → ('05) 5 → ('06) 5 → ('07 요구) 3지구
- 계속지구 조기완공에 필요 최소 소요를 반영하되, 예산 규모는 감축

* 예산 : (04) 3,187 → (05) 2,722 → (06) 2,436 → (07 요구) 2,170억원

② 정보통신부(재특회계) 「홈네트워크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최근 홈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고도화, 민간의 투자여건 성숙, 국회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기 종료
* 예산규모 : (06) 550억원 → (07 요구) 0억원

③ 중소기업청(일반회계) 「정보화혁신클러스터 사업」

- 중소기업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하여 2001년부터 5개년 간 추진목표로 갖고 사업을 수행하여
 - 어느정도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매년 연례답습적 예산 요구
* 예산반영 추이(억원) : (01) 34.6 → (02) 59.5 → (03) 57.5 → (04) 57.5 → (05) 58.5 → (06) 53.0
- 이에 따라 지역정보화 사업 등은 과감히 사업을 폐지하여 예산을 대폭 감액 조정
* 예산규모 : (06) 53억원 → (07 요구) 10억원
- 동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43억원의 여유재원으로 R&D 지원

④ 해양수산부(농특 및 책특회계) 「국가어항 건설」

- 어업인들의 재산과 소득증대를 위한 물양장 등 국가어항 건설사업을 1967년부터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
 - 동 사업은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규모를 조정
* 예산규모 : (06) 1,368 → (07 요구) 1,098억원
-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어항관광단지조성 등 새로운 어촌·어항관광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
* 예산규모 : (06) 191 → (07 요구) 361억원

⑤ 산업자원부(일반회계) 「중장기전략기술개발」

-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중장기 과제인 중기거점기술개발을 분리하고 단기과제 등의 사업 지원규모는 축소
* 예산규모 : (06) 1,244 → (07 요구) 1,105억원 (139억원 감)
-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을 중장기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 예산규모 : (06) 1,785 → (07 요구) 1,926억원 (141억

원 증)

⑥ 관세청(일반회계) 「노후 감시선박 교체」

- 마력수 증가 및 유류비 부담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50톤급 감시정 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
 - 「항만감시 혁신 로드맵」에 의한 저비용·고효율 감시정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업비 축소
* 감시정 건조 및 수리비 : (06) 28 → (07 요구) 3.5억원
 - (05) 50톤급 2척 → (06) 50톤급 1척 → (07 요구) 15톤급 설계비

⑦ 노동부(일반회계) 「자활구인개척」

- 자활구인개척사업은 청년실업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인개척 및 구직활동을 지원
 - 청년실업자에 대한 구인업체 개척사업은 사업참여 미흡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05년 감사원 감사결과)
 - 전문성이 부족한 일용직의 사업참여로 사업 목적 달성 곤란
- 청년실업자에 대한 구인업체 개척사업 중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한정하여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예산규모 : (06) 40 → (07 요구) 14억원

⑧ 산림청(농특회계) 「산림사업종합자금」

- 집행부진으로 '06년 예산편성시 구조조정(744→367억원)되었으나, '06.12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으로 임업인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
 - 용자규모 축소에 대하여 임업인·단체의 불만 초래
- 산림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자금을 활용하여 이차보전소요(20억원)를 '07년 예산안으로 요구
* 예산규모 : (05) 744 → (06) 367 → (07 요구) 220억원 (147억원 감)
- 이차보전소요 20억으로 400억원의 임업정책자금 지원 효과
- 이차보전 지원방식을 통해 확보한 여유재원(147억원)으로 희망한국 21(61억원) 및 사유림 경영촉진 등(86억원)에 활용

'05년 부담금 수 102개로 전년과 동일, 징수규모는 11.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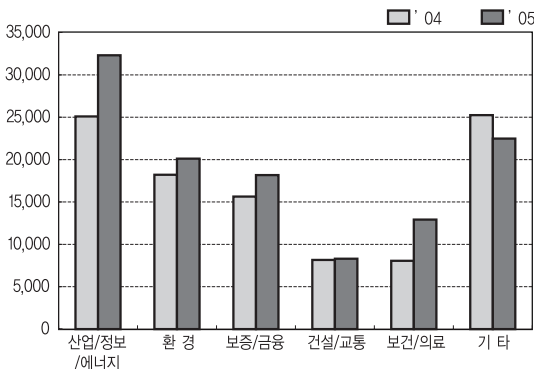
-13개 부담금 폐지 등 21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이 원고는 2006년 6월 28일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기획관실에서 발표한 「200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기획예산처는 '05년도 부담금 수는 102개이고, 총 11.4조원이 징수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6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 '05년에 신설·폐지된 부담금이 각각 1개
 - * (신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06년부터 징수)
 - * (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 부담금 징수액은 11.4조원으로 전년대비 1.4조원 증가
- 부담금의 사용내역은 산업/정보/에너지분야(3.2조원, 28.3%), 환경분야(2조원, 17.6%), 보충/금융분야(1.8조원, 15.9%), 보건/의료분야(1.2조원, 11.3%) 순임



- 부담금 증가액(1.4조원)은 정책적 목적 및 일시적 요인에 따른 5개 부담금 증가(1.7조원)에 기인
 - 5개 부담금을 제외한 97개 부담금의 총액은 전년 대비 2,760억원 감소 (7.3→7.0조원)

〈5개 부담금 증가 사유〉

- 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과율 인상 (150→354원/20개비)에 따라 4,854억원 증가
- ②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은 석유수입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단가환원(14원/l) 및 LNG 부과율 인상(43,778원→62,283원/톤)에 따라 4,479억원 증가
- ③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부담금」은 무선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사업 해당자의 일시적 출현에 따라 2,272억원 증가
- ④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금융기관의 '06년분 선수납 등에 따라 3,815억원 증가
- ⑤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설 증가에 따라 1,221억원 증가

- 증가 폭이 큰 5개 부담금은 흡연 억제·국민건강보험지원,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IT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에 주로 사용됨
- 앞으로는 정부는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06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06.6.13일 기발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중 법령개정 등을 추진
 - * 징수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13개 부담금의 폐지 등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 추진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확대를 억제
 - * 신설되는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 추진

【참고】 1.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요약) 2.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참고 1〉-----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요약)

I. 작성배경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은 부담금의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동 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작성되며, 정기국회 개최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II.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1. 부담금 수 : ('04말)102개 → ('05말)102개

- '05년에는 신설·폐지 각 1개
 - (신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 (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 '90년대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 신설로 부담금 수 급증

-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01. 12월까지 부담금 수의 증가추세가 지속되나, 그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부담금 수 추이〉

	'69	'79	'89	'99	'01	'04	'05
(부담금 수)	7개	14개	34개	95개	101개	102개	102개

2. 부담금 징수규모

- (징수액) 11조 4,296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1.4조원 증)
- (주요증가요인)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개비당 금액 인상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단가환원 및 요율인상 조치
 - 무선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사업 해당자의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 부담금」일시적 출연
 - 건축물 신·증설로 인한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증가
 - 금융기관의 '06년분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선수납(2,245억원)

〈2005년도 주요 부담금 증가현황〉

(단위 : 억원)

분 야	'04실적	'05실적	증감	비 고
건강증진부담금 (보건복지부)	8,061 10,232	12,915 14,711	4,854 4,479	· 부담금 인상(150-354원/20개비, '04.12.30)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산업자원부)				· 석유수입부과금 단가환원 및 LNG 부과금인상 - 석유 : 8원/ℓ → 14원/ℓ ('05.1.1부타) - LNG : 9,750원/톤 → 15,480원/톤 ('05.3.1부타) · 석유판매부과금 단가인상 - LPG : 43,778원/톤 → 62,283원/톤 ('05.7.8부타)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재정경제부)	2,282	6,097	3,815	· '06년분 선수납(2,245억원) 및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이전(1,549억원)으로 인한 증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2,186	4,458	2,272	· 와이브로 사업에 따른 일시적 출연금

분 야	'04실적	'04실적	증감	비 고
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정보통신부)		5,954		납부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환경부))	4,733		1,221	· 건축물 신·증설 증가
소계	27,494	70,161	16,641	· 총액 대비 2,760억원 증가
그 외 97개 부담금	72,921	114,296	△2,760	
총 부담금	100,415		13,881	· 전년 대비 13.8% 증가

3. 부담금 사용내역

- 산업/정보/에너지분야가 28.3%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환경(17.6%), 보증/금융(15.9%) 분야 순으로 사용

〈2005년도 부담금 사용분야별 세부내역〉

	합 계	산업/정보/에너지	환경	보증/금융	건설/교통	보건/의료	기 타
금액(억원)	114,296	32,313	20,113	18,179	8,302	12,915	22,474
비중(%)	100.0	28.3	17.6	15.9	7.3	11.3	19.6

〈참고 2〉-----

부담금의 기능

기능	내 용	해당 부담금(예)
① 공적목적에 위한 재정수입의 확충	·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정인에게 부과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② 의무이행의 확보	·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 기능	· 장애인고용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등
③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 법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를 유도	· 과밀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④ 사회적 손실 교정	· 사회적 손실을 교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	· 혼잡통행료, 배출부과금 등

〈참고 3〉-----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부담금운용평가단)

I. 부담금 평가 추진경위

- 그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 '00. 12월 「준조세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9개 부담금을 폐지
 - '01.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02.1.1일 시행)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부담금 관리시스템 마련
 - '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토대로 부담금 관리의 틀 구축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부담금신설 심사
 - 최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부담금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03년 처음으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실시(근거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
 -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부담금을 폐지
 - 기본법에서 누락되었던 6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
- 금년도에는 부담금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 운용평가단에서 부담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 * '06. 3월 부담금 운용평가단 구성 및 평가작업 개시
 - 이만우교수(고려대, 단장), 오준근교수(경희대), 박영도박사(법제연), 이종훈교수(명지대), 황성현교수(인천대), 정재호박사(조세연)

II. 부담금 평가의견(요약)

분 야	부담금명	평가의견
폐지(13)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 '98년 설치이후 부과세 없으며, 원인지 부담금과 구분이 모호하여 실제로 적용가능성 없고, 향후 운용가능성도 없음
	하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	• '66년 설치이후 부과 징수 실적 없으므로 존치 실의 없음
	도로법상 손괴자부담금	• '61년 설치이후 부과 징수 실적이 없고, 현재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의 법적 근거 및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등의 대안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맹간실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수익자부담금	• '99년 설치이후 부과 징수 실적이 없고, 수도사업자 등 일반용수사용자의 경우 용수사용료 형식으로 부담하고 있어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
	시방사업법상 수익자부담금	• '62년 설치이후 부과 징수 실적이 없고,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당해 공익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현저한 수익을 받을 자를 구별하여 부과하기 어려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상 시설 원인지 이용자부담금	• 시설부담금 : 신규분양시 분양가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관계로 '90년 설치이후 부과실적이 거의 없고, 부과전망도 불투명하여 제도유지의 타당성이 미흡함 • 원인지부담금 : '90년 설치이후 부과 징수 실적이 없고, 지원시설의 설치 필요 하에 하는 다른 공사 또는 행위 하거나 그 시설의 설치의무를 직접 부과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제도유지의 타당성이 미흡함
	유동단지개발촉진법상 시설 원인지 이용자부담금	• 이용자부담금 : '90년 설치이후 부과 징수 실적이 거의 없고, 부과수준을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담금의 타당성 및 제도의 실효성 미흡함 • 시설부담금 : 신규분양시 분양가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관계로 '95년 설치이후 부과 징수 실적이 거의 없으며, 부과전망도 불투명하여 제도유지의 타당성이 미흡함 • 원인지부담금 : '95년 설치이후 부과 징수 실적이 없고, 지원시설의 설치를 필요 하에 하는 다른 공사 또는 행위 하거나 그 시설의 설치의무를 직접 부과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제도유지의 타당성이 미흡함
	아정정화 정비 실시 부담금	• 이용자부담금 : '95년 설치이후 부과 징수 실적이 거의 없고, 부과수준을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담금의 타당성 및 제도의 실효성 미흡함 • '04년 이후 징수 실적이 미미하고, 이미 어업관련 면허, 허가·신고시에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고 있어 존치실의 없음
	도로법상 부대공사비용 부담금	• 비용부담자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관계로 '61년 설치이후 부과징수 실적 없으며, 부과전망도 불투명하여 제도유지의 타당성이 미흡함

분 야	부담금명	평가의견
유시부담금 통합(1)	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	• 손괴자부담금은 수도와 관련된 공사비용 발생의 원인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원인지부담금과 별 차이가 없고, 신·증설시는 원인지부담금, 수선·유지시는 손괴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실익도 거의 없으므로 원인지부담금으로 통합
과태료 사용료 전환(2)	축산폐수배출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허가대상 시설 에는 배출부과금을, 신고대상 시설 에는 과태료를 구분하여 부과하는 실익이 없어 과태료로 제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	•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사용료 성격의 부담금이므로, 사용료 전환이 바람직
부과요율인하(1)	방송발전기금징수금	• '05~'06년의 방송발전기금 사업비는 각각 전년 대비 38.8%, 26.0%나 증가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추진하는 사업들의 타당성과 성과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부담금 부과 요율의 인허 조정 필요
	법령정비(4)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들의 비용부담금	• 법률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징수 근거만 부여하고 있고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기준 등은 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규정원자력관계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 → 포괄적 위임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부과요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 법률에서는 부과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부과요건 등은 하위법령이 아닌 사업자가 정하는 공급규정에 위임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구체적 부과요건을 규정토록 개정
소하천소요공사비용예치금	• 현재 예치요건에 대한 규정을 모두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음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예치금 대상지를 허가신청인 으로 명확화하고, 소요공사비 산출기준을 규정토록 개정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에 '200일상의 남부기간' 을 정하여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사용료 성격의 부담금이므로, 사용료 전환이 바람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 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개방은 선택 아닌 생존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개방을 통한 자유경쟁 환경에서 맞닥뜨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다. 미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방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견은 완전경쟁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력 미흡에 대한 고백으로 요약될 가능성이 높다.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현실은 '개방이 더 이상 선택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이웃들의 외면을 감수하며 나 홀로 문을 걸어잠근 채 상대방 문을 드나들며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방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쇠국의 길을 통해 성공한 국가가 없었던 역사는 개방의 당위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이용해 성공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개방에 이끌려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

96년 유통업 개방 당시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개방 이후 10여 년 동안 국내 업체들은 외국 대형 할인점을 상대로 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과 성장 노하우를 축적해 우리의 유통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보호막에 의지하는 불안한 현실을 벗고 자구 노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당당히 경쟁에 나선 결과, 미래 가치 제고는 물론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한·미 FTA 제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분야별 개방 폭과 관세율, 유예기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제1차 협상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1차 협상인 만큼 양측 입장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 정도의 협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질적 협상은 2차 협상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FTA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산업에서 보듯 서비스 분야도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제조업 등 여타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확산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전방위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 같은 전방위 효과는 특히 정보기술(IT) 부문에서 가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고도화된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바탕으로 다양한 첨단기술을 응용한 IT 비즈니스 솔루션, 제품·서비스 등장은 우리 경제가 21세기 무한경쟁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질 강화에 필수적이다.

한·미 FTA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을 상대로 한 경쟁을 통해 우리의 서비스 분야와 IT 부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IT 부문에서의 쟁점은 통신서비스 쪽

으로 모아진다. 외교통상부의 협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통신사업자들에게 기술표준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즉 정부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 선택의 유연성 조항'의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인정하는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역할을 부인하는 조항이며 우리나라 통신 부문의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아가 제2의 와이브로(Wibro)나 위피(WiP) 같은 최첨단 통신서비스 기술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개방에 따른 고민과 숙제는 존재한다. 한·미 FTA는 여타 FTA와 달리 우리 경제에 미칠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실질적 이해를 고려한 신중한 협상전략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분야별 세심한 보완점 마련도 요구된다. 그러나 고민과 숙제의 난해성을 이유로 변화의 동인인 개방을 피할 수는 없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또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를 강요당하는 시대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을 통해 변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매일경제신문 7월 11일자 '기고'〉)

한-미 FTA, 국회 임무방기 더는 안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어제 서울에서 시작됐다. 이에 맞춰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반대운동도 본격화했다. 내일 서울 도심 반대집회에는 5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에 맞서 220개 기동부대와 12대의 물대포를 동원해 질서유지에 나서기로 했다. 평화적 집회로 치러져야 하겠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물리적인 충돌까지 우려된다.

어떤 사안이건 시민들이 정부와 물리적으로 맞부딪치는 건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임무를 사실상 저버린 채 이 협정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는 탓이 크다. 여야는 지난달 말 임시국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각당의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준비 등을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성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아직 위원장도 정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구성하더라도 국회가 여름철 하한정국에 들어간 만큼 9월 정기국회까지는 사실상 놓게 된다. 참으로 천하태평인 국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우리나라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중대사안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협상 과정부터 나서서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국회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다. 헌법 제60조는 중요한 국제조약에 관한 조약이나 우호통상항해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경우 통상교섭 전 과정을 의회가 관장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국회의 사전·사후 동의절차가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국회가 뒷집지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의 의무 방기 내지는 소극적인 자세를 말해주는 방증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서둘렀다면 깨끗이 해결됐을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통상절차법 제정도 마무리하기 바란다.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국회가 독자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협상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협상이 끝난 뒤 뒷받치는 게 국회의 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할 일 하지 않다가는 국회부터 해산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올지 모른다.

〈한겨레신문 7월 10일자 '사설'〉

새 경제팀에 바란다

참여정부 임기를 1년 반 남기고 새 경제팀이 등장했다. 이번 부총리와 기타 경제부처의 장을 맡은 사람들은 이미 현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서 경제정책수립

과 집행과정에 깊이 관여해왔던 분들이 다. 따라서 각종 정책 현안과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느라고 새삼스럽게 노력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 정책공백이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보면 큰 강점이다.

지금 정부가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사람들이 새 판을 짜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과욕이 될 것이다. 현안을 잘 아는 사람들을 재배치해서 심기일전하고 벌여놓은 과제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발상일지 모른다.

따라서 권오규 부총리 내정자를 정점으로 하는 새 경제팀에게는 현안 과제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힘이 넘치고 시간이 넉넉한 정부라 해도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한 터인데 현 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위 선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바라건대 내수회복세 지속과 한미 FTA의 성공적 마무리가 최우선순위에 선정됐으면 한다.

'내수회복 지속' 최우선 과제

지난 3년간 우리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거시경제적 특징은 외수(外需) 증가가 왕성한 가운데 심각한 내수(內需) 부진이 진행된 것이다. 현 정부 초기에 내수 부진을 '국민의 정부' 말기의 정책 후유증이라 변명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 이후 부진현상에는 참여정부 정책이 기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이후 조짐을 보여온 민간소비 회복세는 한 겨울 꽃보듯이 반가운 일인데 그 견고성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이유로든지 민간소비 회복세가 올 하반기 중 꺾인다면 참여정부의 경제성과는 특이할 정도로 내수가 부진했던 기간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소득분배 개선,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 연금제도 개선 등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과 같이 내수기반이 지속적으로 부실해지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능력이 점점 둔화된다면 앞서 나열한 구조적 문제들의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즉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내수회복세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심적·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부동산 부문을 포함해 각종 세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벼룩 잡느라 포괄적 세부담 증대, 금리인상 등의 초가삼간 태우는 조치에 앞서 수조원의 각종 토지 보상금이 투기자금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먼저 살피는 것이 수순이 돼야 한다. 물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한미 FTA는 우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참여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다. 시민 운동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FTA가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여년간 거의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해온 우리 경제의 모습이야말로 외국과의 교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왜 바람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개방된 대외교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경제로서 직·간접적인 교역을 포함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韓·美 FTA 성공적 마무리를

한미 FTA 추진이 결정되기까지 정부 내부에서 미국과의 교역확대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을 것이다. 이번 경제팀 수장도 이런 판단과정에 관여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기본적 논리에 바탕을 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노력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교역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물 건너간 것이 될 것이다. 아마도 유일한 대안이 포괄적 WTO 다자 협상 타결인데 이를 기대하기보다 진짜 우담바라가 피는 것이 보는 것이 더 빠른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식견이 넓은 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팀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대통령의 전폭적 힘과 행운이 같이하기를 빌어 본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장)
(서울경제신문 7월 4일자 '특별기고')

경제운용, 불씨는 살리되 기름은 붓지 말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와 비슷한 정책들이 나열돼 있지만 조금 달라졌다. 정치권과 기업 쪽의 경기 부양 요구와 인위적 경기 부양은 않겠다는 그간 다짐을 버무리며, 경기 진작에 좀더 힘을 실은 모습이다.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건은 좋지 않다. 경제 불안심리가 내수 퇴조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 유가와 세계적 금리 상승, 자산 거품 조정 소지, 환율 불안 등 안팎으로 불확실한 요인도 많다. 세심한 경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정부도 경기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경제운용 방향에 담고 있다.

예년보다 규모가 큰 하반기 재정지출 계획을 남김 없이 집행하겠다는 것이나, 기업도시나 민자사업 촉진으로 건설 경기를 뒷받침하며,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다. 부작용 소지가 큰 기업도시에 매달리는 등 문제 있는 정책도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그리 과도한 경기정책 전환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기흐름이 미묘한 때인 만큼 거시경제 관리에 힘쓰겠다는 건 정부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상반기된 두 가지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첫번째는 여전히 경기를 낙관하는 듯한 정부 인식이다. 낙관적 진단은 안이함을 낳는다. 긴장 고삐를

좀더 조여야 한다. 두번째는 단기 부양책으로 흐를 가능성이다. 재정 확대와 건설 규제 완화, 출자총액 폐지 등 열린우리당의 경기 부양 요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서라도 '표심'을 사겠다는 여당의 정치논리를 견제하지 못하면 단기 부양책을 반복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 인위적 경기 부양책에 가급적 기대지 않으려 한 건 참여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점이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훗날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라는 명예를 쓸 수 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양극화 완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있긴 하지만, 말미에 구색 맞추기로 끼워둔 인상이 짙다. 새 경제팀은 경제운용 방향을 다시 검토할 게다. 정부와 여당에 서민마저 등을 돌린 건 현 정부 들어서도 양극화가 심화한 탓이 크다는 걸 유념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터이다.

〈한겨레신문 7월 6일자 '사설'〉

기본기 외면한 세계개혁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 세계개혁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

현행 부동산 세제 중에는 조세의 주목적인 재원확보를 도외시키고 조세외적 목적인 '투기억제'에 치중한 세계가

많다. 정부는 세계개혁의 기본 방향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공평하고 원활하게 확보하는 데 뒤야 한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재원 확보에 충실한 세제를 만들려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

첫째, 공평한 세제다.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통 소득, 소비, 재산을 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에서 '소득'이 주 세원(稅源)이고 나머지는 보조 세원에 불과하다.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공평하고 무리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금구조는 주 세원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비중은 낮고 보조 세원인 '소비'와 '재산'에 부과하는 소비세와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라는 세금구조를 가지고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란 어렵다.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금융거래 투명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소득파악 시스템을 정비해 '소득과세'를 강화하고 '소비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50%가 세금 한 푼 안 내는 과세미달자인 것도 문제다. 저소득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과세미달자만 양산하는 '소득공제 확대정책'을 지양

해야 한다. 반면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10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조정, 연간 50만 원에 머물고 있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의 인상 등 현실과 괴리된 세제는 개선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세제다.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특정분야를 지원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감면은 무려 140여 가지에 연간 세액이 18조 원에 이른다. 효율적인 세제운용을 위해 방만한 조세감면을 줄인다는 방침은 옳은 방향이다. 다만 각 국가가 '세금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려 나가야 한다.

셋째, 중립적인 세제다. 조세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에 이르는 과정을 세금으로 옥죄는 부동산세제는 조세가 시장에 과잉 개입한 사례다. 투기억제 목적의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왜곡시켜 '부동산가격 버블'의 원인이 됐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비효율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가격은 양질의 주택공급, 적정한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신속적 운영 등 시장원리에 맞는 수요와 공급 정책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정오다. 또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이 시가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

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참여정부 세제운영 기본방향에도 어긋난다.

(박상근 세무사·명지전문대 겸임교수)

〈동아일보 7월 4일자 '기고'〉

부동산세 불만, 미봉책으로는 풀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주택 재산세 인상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연5%, 3억~6억원은 연10%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것은 5·31 지방선거에서 분출된 부동산세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당정은 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5·31 이후에도 보유세 경감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버티다가 6·29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민심 불만이 심각함을 거듭 확인하고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하겠다'고까지 비유하던 부동산 세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튿날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 발표한 이번 대책은 그러나 집값 양등과 세금폭탄에 대한 국민 불만을 풀어주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9월 정기국회 때 세법을 개정해 소급적용할 계획이라니 이런 미봉책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을 원활히 할 만한 대책으로 다시 다듬기 바란다.

국민의 불만이 왜 높은가. 우선, 공시가격 인상과 거기에 동반하는 세율 인상이 지나치게 가팔라서 응능부담(應能

負擔)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세금을 내자면 1가구 1주택이라도 팔아야 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또 재산세같은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나 등록세 취득세같은 거래세는 낮춰야 하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거래세 부담을 줄일 대책은 또 뒤로 미뤘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균 50%까지 올려도 될 현행세제의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것, 달리 말해 많이 올릴 수 있으나 적게 올려주겠다고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된다.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한 그대로, 당정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해소되고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도록 하자면 지금같은 임기응변의 미봉책이나 소극적 대응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세제를 합리화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균형을 완화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올인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7월 1일자 '사설'〉

거래세 부담 줄이는 게 더 급하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률을 낮춰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주택재산세와 거래세를 줄일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緩和)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1가구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없이 6억원 이상 주택에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표인상까지 겹쳐 세금이 한꺼번에 급증함으로써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는 등 재산세제의 문제가 적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주택 세금에서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은 재산세만 낮추는 것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고율의 양도세와 거래세가 집을 팔고 사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해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세금만 잔뜩 늘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같은 과중한 세금부담이 결국 매수자에게 전가돼 집값을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惡循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보유세 증가추세를 보가며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하지만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실기하기 십상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취득 등록세 등 거

래세 인하는 말할 것도 없고, 투기와 관련없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와 노령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이유다. 차제에 주택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도 이뤄져야 마땅하다.

(한국경제신문 7월 1일자 '사설')

세금 안 써도 규제 풀면 일자리 생긴다

정부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정책을 펴겠다고 레코드 틀듯이 말해 왔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민간 투자가 활발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 써서 만드는 '공공적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중과세(重課稅)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 국민에게 '세금 고생' 덜 시키면서 투자를 복돋워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규제 완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내놓은 '서비스산업 고용확대 방안'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미성숙(未成熟)으로 다른 산업으로부터 고용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외(서비스)소비 증가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 흡수력이 부족한 것도, 우리 국민의 해외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심한 행정규제 탓이 크다.

예를 들어 의료, 교육, 레저 등의 분야에서 최고급 고가(高價)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푼다면 신규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더 생기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결국 돈이 나라 안에서 활발하게 돌게 되니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촉진된다.

이치가 이렇게 간단한데도 정부는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는커녕 규제를 유지하고 심지어 강화해 왔다. 오죽하면 경쟁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부처들의 다중(多重)규제가 너무 많다고 개탄하겠는가.

이러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적 상태다. 지난해 서비스 수지적자는 교육 34억 달러, 의료 4억 달러 등 총 131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에선 2001년 보육원 사업에 대한 민간의 진입기준을 완화한 뒤 2004년엔 보육분야 서비스 매출이 전년보다 49% 늘어났고 재택의료서비스 매출도 20% 증가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지만 그걸 누가 모르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를 행동으로 보여 주지 못한다면 그런 말조차 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 6월 27일자 '사설')

• 1996 •

1996년 7월호(창간호)

〈창간특사〉

열린 토론의 장을 기대하며 / 나용배(부총리 겸 재정
경제원장관)

〈창간사〉

재정정책의 길라잡이가 될 터 / 최 광(한국조세연구
원 원장)

〈한인분석〉

- Flat Tax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 전영준
- 토지초과이득세의 쟁점 / 노영훈
- 1996년 하반기 경제운영관련 주요 정책과제 / 유일호 외

〈정책연구〉

교육재정 확충방안 / 박정수 · 안종석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 현진권

〈정책토론 리포트〉

국세행정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국제조세워크숍
「신경제 장기구상」 세계부문

〈정책흐름〉

1996년 1/4분기 국세실적
1996년 상반기 세법 개정(안) 내용
조세부담률과 1인당 조세부담액

〈재정통계〉

총재정 규모
공공부문 규모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우리나라 세수 구성의 변천
국제체계의 변천

1996년 8월호(통권 제2호)

〈권두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와 정부역할의 변화 / 유일호

〈한인분석〉

- 금융실명제 실시 3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 이인
표 · 정영현
- 미국 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임주영

- 업종전문화 시책의 평가와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
향 / 이기영

〈정책연구〉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임주영

〈정책흐름〉

관세환급제도 전면 개편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현황
간이과세제도 안내
1996 상속세법 개정(안)
〈재정통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재정지출내역의 국제비교
연차별 특별회계 신설 폐지상황

1996년 9월호(통권 제3호)

〈권두언〉

우리 재정이 나아갈 길 / 임주영

〈한인분석〉

-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 / 유일호
- 근로소득분리과세와 Dual Income Tax / 안종범

〈정책연구〉

유형고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 추정 / 현진권

〈정책토론리포트〉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해외동향〉

일본에서의 법인세 개정 논의 / 신기선

〈정책흐름〉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
1996 추경편성 및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개편
1996 세법개정(안)

〈재정통계〉

주요국의 재정제도 비교일람표
주요국의 경제·재정관련 주요지표

1996년 10월호(통권 제4호)

〈권두칼럼〉

조세정책과 정보공개 / 현진권

〈특집 : 1997년도 예산(안)〉

- 1997년도 예산(안), 이렇게 편성했다 / 김성진
- 1997년도 예산(안), 이렇게 본다(Ⅰ) / 윤건영
- 1997년도 예산(안), 이렇게 본다(Ⅱ) / 임주영
- 특별좌담 : 1997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평가

〈정책연구〉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개편방향 / 김유찬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 최흥식 · 김성룡

〈정책토론리포트〉

읍선의 경제적 효과와 거래제도 구축방안

〈해외동향〉

일본에서의 법인세 개정 논의(Ⅱ) / 신기선

〈정책흐름〉

1997년도 예산(안)의 개요 및 분야별 예산 요약

〈재정통계〉

소득세제도의 변천

- 소득세율

- 인적공제 면세점

- 근로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 기부금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배당소득세액공제

1996년 11월호(통권 제5호)

〈권두언〉

OECD 가입과 한국경제 / 홍병교

〈한인분석〉

-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및 자원조달방
안 / 손원익
- 고금리의 원인과 대책 / 이인표
- 지역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 장근호

〈특별기획: 노벨경제학상〉

- 제임스 멀리스의 인간적 면모와 학문적 업적 / 나성린
- 윌리엄 비크리와 그의 학문세계 / 노영훈
- 노벨경제학상을 말한다 / 최 광

〈정책흐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199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
<재정통계>
 소득세관련 통계(Ⅰ)
 - 소득세총괄
 - 소득세 예산 및 징수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 지역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 종합소득세 결정유형별 신고
 - 기장의무자별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1996년 12월호(통권 제6호)

<권두칼럼>
 건전한 납세환경의 조성 / 정영현
<현안분석>
 •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 / 노영훈
 • 외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 최준욱
 • 이코노미스트 - 그들은 별종인가? / 홍범교
<정책연구>
 기업의 차입과 세제 / 손원익
 조세 관련자료 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 현진권
<정책토론포트>
 한일조세조약의 문제점
<해외동향>
 인터넷과 예산 및 조세정보
<정책흐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현황 및 실천과제
 최근의 경제동향과 경쟁력강화 시책 추진현황
 1996년도 3/4분기까지의 국제실적(잠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 조사관리 방향
<재정통계>
 소득세관련 통계(Ⅱ)

• 1997 •

1997년 1월호(통권 제7호)

<권두칼럼>
 한국경제의 현 위치와 당면과제 / 임주영
<현안분석>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 박정수
 • 법인세에 대한 개념의 변화 / 안중석
 • 정보화시대와 조세개념의 재정립 / 정영현
 • 전자지불시스템의 도입과 영향 / 최홍식
<정책연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 한도숙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김유찬
 한국의 분가별 거시경제 모형 / 박종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 안중석 · 박정수
<정책토론포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방향
 / 손원익 · 김홍균
<해외동향>
 LIS 자료의 현황 및 활용방안 / 현진권 · 신기선
 중국의 재정 및 조세체계 / 김인웅
<정책흐름>
 1997년 경제정책방향
 국제발행제도 개선방향 및 1997년도 국제발행계획
 과세적부심사제의 시행성과와 개선안
<재정통계>
 법인세관련 통계(Ⅰ)

1997년 2월호(통권 제8호)

<권두칼럼>
 시장의 질 향상과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역할
 / 박종규
<현안분석>
 • 주요 외국의 지방소득세제 / 박정수
 •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 / 안중석
 • 개정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 박기백
<정책연구>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 김진수
 상속 · 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 한상국 · 배준호 · 이광재
<정책토론포트>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편방향 / 손원익
<정책흐름>
 국제 통합시스템 개통
 1997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방안
 기업상속에 관한 지원 확대
 1996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추정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지분 변동현황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재정통계>
 법인세관련 통계(Ⅱ)

1997년 3월호(통권 제9호)

<권두칼럼>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언 / 손원익
<현안분석>
 • 경상수지적자와 거시경제운영 / 박종규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정부운영 - 국제적 인식과
 평가 / 장근호
 • 최근 환율변동이 수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 김종만
<정책연구>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 유시권
<정책흐름>
 1996년 국제실적(잠정)
 1997년 시행 중소기업 지원세제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91일물 단기국채 발행
 금융개혁의 추진실적과 주요과제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개정(안)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관련 통계

1997년 4월호(통권 제10호)

<권두칼럼>
 조세의 날 그리고 조세와 하루 / 노영훈
<현안분석>
 •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 정부 역할에 대한 실증분
 석 / 장근호
 • OECD의 금융산업 규제 완화 논의 / 홍범교
<정책연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
 구 / 박정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관계 / 김건우
 조세해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 이준

규 · 이태희
 <정책토론회>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 정영현 · 전영준
 <정책흐름>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장관 합동기자
 회견 부총리 발표문
 19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1996 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1996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

1997년 5월호(통권 제11호)

<권두칼럼>
 한보그룹의 부도와 재벌의 자기혁신 / 김진수
 <현안분석>
 • 21세기를 대비한 OECD의 세제개혁 / 박정수
 • 환경세 도입과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 OECD에서
 의 최근 논의 / 최준욱
 • 등소평 사후의 한중 경제협력 / 한상국
 <정책토론회>
 한·EU 주세협 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
 <정책연구>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과 정책과제 / 홍범교
 조세정책과 외국자본 유입의 형태 / 전주성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 전영준
 <정책흐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물가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 실시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관련 통계(1)

1997년 6월호(통권 제12호)

<권두칼럼>
 국제화 · 세계화는 경제정책의 자주성 상실인가?
 / 김종만
 <현안분석>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규제
 조치 / 정영현 · 황현리

• 통합경제와 안구이동: 현황 및 이론 / 김정훈
 • 주요국의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제도 / 전영준
 <정책연구>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김유찬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 박대근 · 이창용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 김종만
 <정책흐름>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 개최
 1996 회계연도 정부결산
 재정자금 배정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1997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영안
 1998년 예산요구 현황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관련 통계(II)

1997년 7월호(통권 제13호)

<권두칼럼>
 틀린 현실과 맞는 이론 / 최 광
 <현안분석>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세제조화 / 김유찬
 •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현황과 지원제도 / 김재진
 • 홍콩의 주권반환과 우리의 대응전략 / 한상국
 <특집 '재정포럼' 창간 1주년>
 • 『재정포럼』에 바란다 I / 차병권
 • 『재정포럼』에 바란다 II / 박우규
 • 『재정포럼』주제별 총목차
 창간호(1996년 7월호)~제12호(1997년 6월호)
 <정책연구>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 안종석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 한상국
 <정책흐름>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선
 1997년 4월까지의 국세실적(잠정)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독립공채상환
 한 · EU WTO 주세협 의 결과
 1997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시 특례자에게 표준신고
 율 적용 없음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

<재정통계>
 주세 관련 통계

1997년 8월호(통권 제14호)

<권두칼럼>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조세정책 / 안종석
 <현안분석>
 • 최근의 경제동향과 1997~1998년도 거시경제 전
 망 / 박종규
 •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 / 국중호
 • 여산전문 금융산업의 특성, 현황 및 개편과제
 / 이기영
 <정책토론회>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정책연구>
 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노영훈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편방향
 / 유시권 외
 <정책흐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수정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위한 금융개혁
 법률 입법예고
 1997년 상반기 세수실적(잠정)
 <재정통계>
 기타 간접세 관련 통계

1997년 9월호(통권 제15호)

<권두칼럼>
 근거과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 박정수
 <현안분석>
 • 기업분할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 김진수
 • 국민의료와 조세정책 · 손원익
 • 비크리 교수의 세제개혁안: 세제의 단순화, 누진화
 그리고 그 공정한 설계 / 노영훈
 <정책토론회>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정책연구>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 가산세와 조
 세형벌의 경제적 분석 / 손광락
 <정책흐름>
 1997 세법 개정안

1997 관세법 개정안
 <재정통계>
 상속세 관련 통계

1997년 10월호(통권 제16호)

<권두칼럼>

경제의 글로벌화와 조세·재정정책 / 김중수

<특집: 1998년도 예산(안)>

19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 정해방

1998년도 예산(안)의 평가(Ⅰ) / 나성린

1998년도 예산(안)의 평가(Ⅱ) / 박기백

좌담:1998년도 예산(안) 어떻게 볼 것인가?

<현안분석>

• 사라지는 납세자들: 개방화의 조세정책적 함의 / 현진권

• 어음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 이기영

<정책토론포르트>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정책흐름>

199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재정통계>

증여세 관련통계

1997년 11월호(통권 제17호)

<권두칼럼>

자본주의 정신과 조세체계의 선택 / 유시권

<현안분석>

• 미국 은행합병의 동향과 전망 / 김진수

• OECD국가들의 민영화 동향과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 / 최준욱

• 국제적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경쟁 이슈 / 한도숙

<특집>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

<정책연구>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 손원익

한일 국제행정의 비교평가 / 유시권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방향 / 성명재

<정책토론포르트>

단일세(토지세)의 경제적 효과

<경제단상>

노벨경제학상 수상(隨想) / 홍범교

<정책흐름>

1998년 국제 세입예산안

199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재정통계>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통계

1997년 12월호(통권 제18호)

<권두칼럼>

금융위기와 국제시장의 활성화 / 최홍식

<현안분석>

• 개방화된 세계 속에서 부각되는 조세정책 과제 / 김유찬

• 관세율 정책과 수입구조의 변화 / 장근호

• 일본세제의 변화와 전망 / 유시권

• OECD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평가 / 국중호

<기획특집: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IMF 구제금융과 재정 / 임주영

IMF 구제금융과 조세 / 성명재

IMF 구제금융과 금융구조 조정 / 홍범교

IMF 구제금융과 산업정책 / 김재준

IMF 구제금융과 외국의 사례 / 박기백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

<정책토론포르트>

동독의 경제재건과 유럽통합

<정책연구>

독일의 재정 / 김유찬

영국의 재정 / 최준욱

<경제단상>

세무당국을 위한 변명 / 신기선

<정책흐름>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재정통계>

목적세 관련통계

• 1998 •

1998년 1월호(통권 제19호)

<권두칼럼>

'큰 정부'와 '작은 정부' / 차병권

<현안분석>

• 예산성과 / 박기백

• 조세경쟁: 유형 및 쟁점 / 김정훈

• 정부의 변호사 시장 규제 / 김상헌

• 유럽통화통합의 의의와 영향 / 홍범교

<기획>

한국 조세정책 50년: 조세정책의 평가

<정책토론포르트>

동남아 국가와 한국의 외환위기

<정책연구>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 노영훈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정책시사점 / 안중석

<경제단상>

새 틀에의 단상(斷想) / 윤중규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 이기영

<문화기행>

이색 박물관을 찾아서: 태백 석탄박물관 / 이 준

<정책흐름>

1997년 수출입 동향(잠정) 및 1998년 전망

금융실명제 보완입법 추진상황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재정통계>

지방세 체계와 변천

1998년 2월호(통권 제20호)

<권두칼럼>

구조조정을 다시 생각함 / 곽태원

<현안분석>

• 주요 OECD국가의 기관투자 현황 / 김재진

• 전자상거래에 대한 OECD의 최근 논의 / 정영헌

•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안과 정부안의 비교 / 전영준

<기획>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윤건영 외

<정책연구>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 / 김진수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 손원익

<경제단상>

IMF시대의 원모심려 / 이전오

군살빼기 / 손병준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화폐박물관 / 이 준

<정책흐름>

우리나라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협상 기본원칙
타결

1998년 추가경정 예산안

1998년 제1회 국세수입 추경예산(안)

〈재정통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1998년 3월호(통권 제21호)

〈권두칼럼〉

정부조직 개편과 국가예산 / 박종기

〈현안분석〉

- 국민연금제도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추계방법론의 고찰 / 현진권 · 이철인 · 전영준 · 정영헌
- 정리해고제와 실업재정 / 이철인

정책토론회리포트

21세기를 향한 선진 세정의 정착

〈정책연구〉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 방향 / 김진수 · 김유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 전영준 · 한도숙
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경쟁력

/ 김종만

〈경제단상〉

글로벌시대의 조세정책 / 정은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최병규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 한국상업박물관 / 이 준

〈정책흐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자산재평가제도 개선

〈재정통계〉

지방세 시도별 분포 및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1998년 4월호(통권 제22호)

〈권두칼럼〉

정책토론의 부실과 경제위기 / 윤건영

〈현안분석〉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과연 필요한가 / 현진권
- 유럽 3개국의 재산과세와 지방재정 - 영국, 프랑스, 독일 / 노영훈
- 국제와 외환보유고 관리 / 이상섭

•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 / 최준욱

〈한국조세의 이해〉

소득세편

〈정책연구〉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기영 외

자료포락분석법 및 그 변형기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 한국 중소도시의 생산성 분석 / 문준걸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우택

〈경제단상〉

조세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 / 엽기웅

실업에 대한 단상(斷想) / 김건수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 농업박물관 / 이 준

〈정책흐름〉

1998년 2월 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개최

1997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재정통계〉

지방세 비교세 · 감면 현황

1998년 5월호(통권 제23호)

〈권두칼럼〉

경제위기, 경제학자, 모럴 해저드 / 나성민

〈현안분석〉

-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방안 / 김유찬
-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제도 / 김재진
- 일본 재벌의 해체과정 / 국중호

〈한국조세의 이해〉

법인세편

〈정책토론회리포트〉

적정조세와 정보

〈경제단상〉

조세고향학 회음법 / 허중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보화 마인드 / 이상근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 한국증권박물관 / 이 준

〈정책흐름〉

199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고통세법시행령 개정(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조정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보도 참고

〈재정통계〉

국제비교자료(1)

1998년 6월호(통권 제24호)

〈권두칼럼〉

구조조정 이후도 염려해야 한다 / 장현준

〈현안분석〉

- 보조비용의 계산 - WTO 논의를 중심으로 / 박기백
- OECD 각국의 국민연금 개혁방향 / 전영준
- 일본 지방세 부문의 개혁방향 / 국중호

〈한국조세의 이해〉

국제조세편

〈정책연구〉

소득 · 소비 · 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 연구 / 국중호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 / 윤건영 · 최영순

〈경제단상〉

합리적 소비? / 우사임

어느 샐러리맨의 자갑 이야기 / 심재진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 용산 전쟁기념관 / 이 준

〈정책흐름〉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

자본 · 외환 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 개선방안

기업과세제도 개편방안

〈재정통계〉

국제비교자료(II)

1998년 7월호(통권 제25호)

〈권두칼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론 / 김용진

〈현안분석〉

-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 한상국
- 일본 지주회사의 해체과정과 해금과정 / 김진수
- 도로교통정책의 경제수단 - 시행의 어려움 및 극복방안 / 김정훈

〈특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

재정운용의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 / 박기백
 주요국의 적자재정 운용사례 / 김상헌

〈한국조세의 이해〉

자산재평가세 / 현진권

〈정책연구〉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소득 추계(1954~1996)

/ 표학길

중앙정부 세출 및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

/ 박종규

〈기획: 한국조세연구원에 바란다〉

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연구 개발을 / 김경원
 차별화·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 구정모
 형평과 효율이 조화로운 정책개발을 / 남상돈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 찾아서: 철도박물관 / 이 준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비교

1998년 8월호(통권 제26호)

〈권두칼럼〉

경제구조의 개혁과 인적자본 / 유일호

〈현안분석〉

- 토지관련 부담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장근호
- 파생금융상품과세 / 홍범교

〈한국조세의 이해〉

재산과세(Ⅰ): 종론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 노영훈

〈정책토론포럼〉

1998년 세제개편방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경제단상〉

종(鍾)아 왜 우노 / 홍순영

변해야 산다 / 성주석

〈정책연구〉

물가지수연계체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타당성 / 이상섭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박태보 선생의 살신성인을 기린 노 강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8년 제2회 국제세입 추경예산(안)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비교(Ⅱ)

〈이런의견 저런 생각〉

비람직한 세제개편 방향 외

1998년 9월호(통권 제27호)

〈권두칼럼〉

인사청문과 납세 성실도 / 최명근

〈현안분석〉

- 재정지출을 통한 실업감축과 재정운영방향

/ 최준욱

- 최근 일본의 항구감세정책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 국중호

〈한국조세의 이해〉

재산과세(Ⅱ): 취득세·등록세, 양도세·특별부가세

/ 노영훈

〈정책토론포럼〉

경제위기와 조세 및 재정운영방향

〈경제단상〉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 이부호

엄마소는 얼룩소 / 김정현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조선조 개혁의 화신, 정암 조광조를 배향한 심곡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8 세제개편안(요약)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비교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내년도 세법개정안 외

1998년 10월호(통권 제28호)

〈권두칼럼〉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확대 / 조윤제

〈현안분석〉

- 부동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방향 / 노영훈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 한도숙

-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 김정훈

〈한국조세의 이해〉

재산과세(Ⅲ): 상속세 및 증여세 / 한상국

〈정책토론포럼〉

경제위기하의 재정정책방향

〈경제단상〉

달한 문 앞에 선 고학력 실업 / 김동철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의 함수관계는? / 김용대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이윤곡 선생을 배향한 파주 지문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비교(Ⅱ)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목적세 폐지 논란 외

1998년 11월호(통권 제29호)

〈권두칼럼〉

세제·세정 개선을 위한 제언 / 최용선

〈현안분석〉

- 복권사업과 재정 / 김상영
- 일본의 신고납세제도 운영과 시사점 / 국중호

〈특집: 1999년도 예산(안)〉

199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김동환

1999년도 예산(안)의 평가(Ⅱ) / 정태원

〈기획〉

1998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martya Sen의 학

문세계 / 홍범교

〈한국조세의 이해〉

소비세(Ⅱ) / 성명재

〈경제단상〉

근본으로 돌아가자 / 박성동

지금은 어둠의 속에서 불을 밝힐 때이다 / 박일호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만고의 청백리 옥고와 강직한 선비 김계행을 배향한 목계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8 예산 집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상황〉

국세수납자료 전산화(EDI) 전면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확대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원천징수세율 비교(Ⅱ)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금부터 아껴라 외

1998년 12월호(통권 제30호)

<권두칼럼>

조세제도 개혁과 재정민주주의 / 장오현

<현안분석>

- 남북경제교류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 김유찬
- 과표현실화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 / 김재진
- 에이젤캐피탈의 활성화 방안 / 김진수

<정책토론토리포트>

존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의 이해>

소비세(II) / 김유찬

<경제단상>

세법해석과 질의 / 김종진

IMF와 연봉제 / 이근봉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고려 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을
배향한 총렬서원 / 이 준

<정책흐름>

조세정책 관련 참고자료

기업고환에 대한 세제지원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원천징수세율 비교(II)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전문직 부가세 반대라니 외

• 1999 •

1999년 1월호(통권 제31호)

<권두칼럼>

21세기와 재정의 역할 / 김동건(서울대 교수)

<현안분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 안종석
- 사회보험 통합·일원화에 따른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개선방향 / 전영준

<정책토론토리포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방향

한국조세의 이해

지방세/ 김정훈

<경제단상>

세상 속에서/ 이기용

새로운 천년을 여는 마음/ 최병준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조선조의 통치사상을 완성시킨 퇴계
이항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9년도 경제정책방향

1998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관세법 시행령 개정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999 경제의 복병들, 외

<권말부록>

1998년도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 총목차

1999년 2월호(통권 제32호)

<권두칼럼>

사회의 투명성과 조직의 보고책임 / 이우택(한양대
교수)

<현안분석>

- 유회화 출범배경과 EU통합관련 과세문제 / 손원익
- 우회수출에 관한 반덤핑 규제 문제 / 장근호
-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과 조세·재정정책 / 최준욱

<한국조세의 이해>

관세 / 장근호

<정책연구>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은상, 이준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소비세 세수추계 / 성명재

전자상거래시대의 조세정책 / 김유찬, 홍병교

<경제단상>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 / 백승훈

의사결정의 분산화와 회계제도 / 이희수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임진왜란이라는 절대위기를 이겨낸
위기관리의 일인자 서애 유성룡 선생을 배향한 병
산서원 / 이 준

<정책흐름>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조세제 정비

Mutual Fund의 배당소득에대한 과세

근거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기장신고자 확대사업 추진

1998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

IMF가 발표한 "아시아 경제위기 국가에 대한 정책프
로그램 평가보고서" - 재정정책 관련부분 -

<재정통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순계기준, 총계기준)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변호사 탈세 뿌리 뽑아야, 외

1999년 3월호(통권 제33호)

<권두칼럼>

경제난국과 국민부담 / 이필우(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안분석>

- 중국의 收費(Shou-Fei) 현황과 시사점 / 한상국
- 인적자본과 조세 / 이철인

<정책토론토리포트>

경제위기 1년의 조세정책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조세행정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의 조세(1) / 신기선

<정책연구>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 국중호

<경제단상>

글로벌시대의 이해 / 정영화

어느 샐러리맨의 주말 / 신영철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남명학의 창시자 남명 조식 선생을
배향한 배산서원 / 이 준

<정책흐름>

국세행정 대개혁 추진

1998년 국세징수실적(잠정)

국제전문다려제도 도입 계획

<재정통계>

결산회계별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확대, 줄속은 안돼, 외

1999년 4월호(통권 제34호)

<권두칼럼>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 손광락(영남대
경제학부 교수)

<현안분석>

- 표준소득률과 기장세액공제가 신고납부에 미치는
효과 / 국중호(일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
-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 / 김진수
- 자산유동화 개요 / 이상섭

〈정책토론포트〉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편방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의 조세(II) / 신기선

〈경제단상〉

멋진 신세계 - Cyber Space- / 김태효

두터움, 치밀함 그리고 독특함 / 오세진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도를 통해 의를 지킨 하서 김인후 선생

생을 배향한 필암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9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998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안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공공부문 재정규모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공평과세 이뤄져야 한다, 외

을 배향한 서원에 하나뿐인 서원 필암서원 / 이 준

〈정책흐름〉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

1999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국가채무 추이와 국제비교

'ARS와 FAX를 이용' 국민적 탈세감사를 위한 고발전

화 개통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입 결산규모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누가 탈세를 하는가, 외

1999년 6월호(통권 제36호)

〈권두칼럼〉

소담대실 /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현안분석〉

•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 - 소득세 - / 박기백

• 농산물 관세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이명현

• 부가급여 과세를 위한 정책과제 / 전영준

〈정책연구〉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 김재진, 김진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의 조세(I) / 한상국

〈경제단상〉

지식관리의 합리성 / 이상렬

합리와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 이용수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유학으로 신라를 중흥시키려던 했던

국제적 지성의 선구자 고운 최치원 선생을 배향한

무성서원 / 이 준

〈정책흐름〉

국세행정 개혁 추진상황

4대 경제개혁 추진과 경기대책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출 결산규모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카드기맹정을 더 늘려가야, 외

1999년 7월호(통권 제37호)

〈권두칼럼〉

'빅딜'이 갈 길 / 이철승(한양대 법학과 교수)

〈현안분석〉

•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 박종규

• OECD 부패방지협약과 이행조치에 관한 논의

/ 장근호

〈특집: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지역자 확대에 따른 주요

논쟁과 개선방향〉

• 최근의 국민연금제도 변화요인과 주요논쟁

/ 이철인

• 국민연금제도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전영준

• 국민연금 도시지역자 확대에 따른 정책과제와 개선

방향 / 김용해(순천향대 경제학부 교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의 조세(II) / 한상국

〈정책연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 이용섭

반담평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 장근호

〈경제단상〉

도덕적 해이의 뒷 / 이병우

얕은 것과 얽은 것 / 이은경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선비출신의

의병장 김천일 선생을 배향한 남교서원 / 이 준

〈정책흐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세행정 조직개혁

구조조정 세제지원 보완내용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집행실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렇게 생각한다 외

1999년 8월호(통권 제38호)

〈권두칼럼〉

개혁은 시장제도 하부구조부터 / 홍기택(중앙대 경제

학과 교수)

〈현안분석〉

• 중산층 및 생활안정 대책의 검토 / 손원익

• 조세법처벌법의 개편방향 / 한상국

• 사회보험 통합논의의 근본적 재검토 / 이철인

〈정책토론포트〉

1999년 5월호(통권 제35호)

〈권두칼럼〉

거품경제 재현의 우려/이만우(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현안분석〉

• 바람직한 조세행정의 제원칙과 세정개혁전략

/ 김재진

•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 확충 / 김정호

• 계속비제도와 예산편성의 질서 / 옥동석(인천대 무

역학과 교수)

〈정책토론포트〉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연구〉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 국중호

우리나라의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세제도

에 대한평가와 개선방향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의 조세(III) / 신기선

〈경제단상〉

다시 오늘을 생각하며 / 송은주

어느 증권사 객장에서 / 구분용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카리스마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 한국과 미국

〈주요국의 조세제도〉

대만의 조세(1) / 한상국

〈정책연구〉

인적자본과 조세 / 이철인

〈경제단상〉

사소한 배려와 큰 감동 / 오승건

솔로몬의 지혜 / 조태희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백사 이항복 선생을 배향한 화산서원 / 이 준

〈정책흐름〉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실시

1999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세금우대저축 안내

〈재정통계〉

지방재정통계(세입·세출)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계개혁에서 고려할 일 외

〈명언산책〉

정부와 진보

1999년 9월호(통권 39호)

〈권두칼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제개편시스템이 정착되어야 / 이장희(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현안분석〉

- 국제시장 및 국제관련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 이상섭
- OECD의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과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 한도숙

〈특집: 1999 세법개정안을 보고〉

- 종합평가 / 안종석
- 소득과세제도 / 안종석
- 소비과세제도 / 성명재
- 상속·증여세제 / 한상국
- 관세제도 / 장근호
- 세정개혁 / 현진권

〈정책토론포럼〉

사회적 비용 감축과 WTO 주세판정 이행을 위한 주세율체계 개편방향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주요국의 조세제도〉

대만의 조세(2) / 한상국

〈경제단상〉

납세가 존경의 가치기준이 되는 사회 / 김갑용

나를 넘어서기 위한 경쟁 / 김근영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난신 윤원형을 제거하고 태평성대를 이끈 박순 선생을 배향한 옥병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9 정기국회 제출 세계개편(안)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주세체계 전면 개편해야 외

〈명언산책〉

과세와 시행착오

1999년 10월호(통권 40호)

〈권두칼럼〉

공원의 비극 / 전승훈(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현안분석〉

- 세출구조와 재정적자 / 박기백
 -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홍범교
 - 지방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이상섭
 - 정부부채와 거시경제 / 박종규
- 〈특집: 2000년도 예산(안)〉
- 2000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특징 / 배국환(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 2000년도 예산(안)의 평가(1) / 임주영(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2000년도 예산(안)의 평가(2) / 홍범교

〈정책토론포럼〉

지식인프라의 개발·확충

〈정책연구〉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의 조세(1) / 이명헌

〈현장을 찾아서〉

납세자의 충실한 동반자 납세자보호담당관 / 최병규

〈경제단상〉

전화를 통해 배우는 세상사 / 홍일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겸손과 정직 / 이명진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외교력과 뛰어난 전략으로 전란을 극복한 명재상 한음 이덕형 선생을 배향한 용연서원 / 이 준

〈정책흐름〉

2000년 예산(안) 의결

2000년 국제 세입예산(안) 및 조세지출보고서
세계개편(안) 수정사항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소주세와 시민경제학 외

〈명언산책〉

아담스미스와 분업의 폐해

1999년 11월호(통권 41호)

〈권두칼럼〉

부패의 함정과 반부패의 분수령 / 박재원(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현안분석〉

- 전자상거래의 피급효과와 정책적 함의 / 연태훈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향 / 김진수
- 예산제도와 재정적자 / 이명헌

〈반론과 정정〉

지방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토론포럼〉

재정 간전화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제정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의 조세(2) / 이명헌

〈기획〉

1999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 / 이상섭

〈현장을 찾아서〉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맹회 / 최병규

〈경제단상〉

IMF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정윤미

아시아적 가치와 동질성 / 임동헌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임금 앞에서 임금의 부당함을 비난한 선비 심청헌 김세필을 배향한 지전서원 / 이 준

〈정책흐름〉

OECD 각국의 조세부담률 비교

특별소비세제 개편

• 2000 •

국가재권·채무 현황과 대책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
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조세 형평성과 생산적 복지 외

〈명언산책〉

그때 우리는 모두 케인지언이었다

1999년 12월호(통권 42호)

〈권두칼럼〉

知力과 精神力 / 김인철(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현안분석〉

- WTO 뉴라운드와 중요 협상의제에 관한 논의 / 장근호
- 주요국의 경비처리원칙 / 손원익
- 공기업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과세제도 개선방안 /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의 조세(3) / 이명현

〈명언산책〉

부과 소득의 불균형

〈정책토론포럼〉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 세제부문 -

〈현장을 찾아서〉

국제행정 개혁을 선도하는 국제행정개혁기획단

/ 최병규

〈경제단상〉

소비의 경제학 / 박상봉

Y2K 문제와 우리의 교훈 / 김성동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 조정의 여러 관직을 두루 섭렵한 행정관료의 전형 모당 홍이상 선생을 배향한 하강서원 / 이준

〈정책흐름〉

OECD의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 동향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개관

1999년도 제2차 IMF정례협의 최종결과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IMF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

2000년 1월호(통권 43호)

〈권두칼럼〉

새천년과 정부의 역할 / 유일호(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현안분석〉

- 포괄주의 소득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 이철인
- 1996년 미국 모델 조세조약의 주요이슈와 미국의 조세조약 체결동향 / 한도숙
- 알기쉬운 세법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기백

〈특집 : 2000년대 개막과 조세·재정정책〉

- 2000년대의 조세정책 방향 : 조세정책의 주요논점과 대책 / 김진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2000년대의 조세정책 방향 / 곽태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00년대의 재정정책 방향 : 재정운영의 과제와 정책방향 / 장석준(기획예산처 예산실장)
- 2000년대의 재정정책 방향 / 김동건(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의 조세(II) / 전영준

〈명언산책〉

경쟁의 의미

〈경제단상〉

새로운 세기에는 하이터치가 뜬다 / 이우성

새천년에 생각하는 정보화사회 / 김석운

〈문화기행〉

인물탐험 : 다산 정약용 / 이준

〈정책흐름〉

1999 세법시행령 개정(안)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스톡옵션 비과세 축소는 당면 외

2000년 2월호(통권 44호)

〈권두칼럼〉

새로운 국제행정 패러다임과 그 방향 / 황수웅(국제청 차장)

〈현안분석〉

- 수도권정책의 현황과 평가 / 김정훈

- 정부개혁의 성과와 과제 / 옥동석(인천대 교수)

〈명언산책〉

법과 인간

〈정책토론포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의 조세제도(II) / 김진수

〈경제단상〉

G-혁명의 아리아 / 이환석

21세기 리더와 우리의 과제 / 김익홍

〈문화기행〉

인물탐험 : 백범 김 구 / 이준

〈정책흐름〉

2000년 경제정책방향(안)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경제운용 자만할 때 아니다 외

2000년 3월호(통권 45호)

〈권두칼럼〉

경제운용과 경수수지 / 박진근

〈현안분석〉

- 우리나라 지방도로의 교통량 평가 / 이장규

- 지방도로 양여금사업의 개선방안 / 박종규

-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 안종석

코스닥시장의 급성장과 정책과제 / 김진수

〈명언산책〉

진실과 허구

〈정책연구〉

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 김정훈

〈정책토론포럼〉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제34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경제단상〉

학교에서 / 최병찬

정보화시대를 바라보며 / 이정미

〈문화기행〉

인물탐험 : 흥선대원군 이허응 / 이준

〈정책흐름〉

개인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운용방향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29개 사업 확정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 특
 별회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분배문제 장기대책 필요 외

2000년 4월호(통권 제46호)

<권두칼럼>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해야 / 신영섭
 <현안분석>
 • 외부위탁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연태훈
 • 농업에서의 직접지불제도 / 이명현
 •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 홍범교
 <명언산책>
 통계수치의 오류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의 지방세 / 김정호
 <경제단상>
 소비인의 기우 / 김진국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 김영철
 <문화기행>
 인물탐험: 추사 김정희 / 이 준
 <정책흐름>
 1999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소득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 제정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
 <재정통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 포함)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 제외)
 내국세 세목별 구성의 변천
 국제체계의 변천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소모적 재정 政爭 이제 끝낼 때 외
 <권말부록>
 『재정포럼』 총목차 ▶ 1999. 1 ~ 2000. 3

2000년 5월호(통권 제47호)

<권두칼럼>
 「관성의 법칙」을 경계한다 / 강응선
 <현안분석>
 • 공익법인 관련 세제의 현황 / 손원익
 • 조세법의 위헌 심판과 향후 입법정책방향 / 한상국
 •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비한 세제 및 세정의 방향 모
 색 / 이철인
 <재정동향>
 1990년대 일본의 경제현황과 정책방향
 / 김영철·박종규
 <명언산책>
 소비의 이론을 위해서
 <특별기획>
 고 정영현 박사의 연구업적을 기리며 / 현진권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의 조세제도(II) / 이철인
 <경제단상>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망 / 박철수
 슈퍼우먼 콤플렉스 벗어나기 / 김윤경
 <문화기행>
 인물탐험 신라의 승려 혜초 / 이 준
 <정책흐름>
 「세금·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
 국제거래 및 벤처자금 유용 기업 중심의 1/4분기 음
 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 1999년 귀속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조세 수입 및 조세부담률
 국제·지방세의 배분 추이
 내국세 세목별 구성의 변천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추경예산 꼭 편성해야 하나 외

2000년 6월호(통권 제48호)

<권두칼럼>
 글로벌 경제와 강력한 정부 / 김중수
 <현안분석>
 • 재정 안정성 논의와 시사점 / 박기백
 • 사회보장예산의 국제비교 / 전영준·백승훈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의 조세제도(III) / 김진영
 <명언산책>
 소비와 명예
 <경제단상>
 사이버상의 신조어 열풍, 네티즌의 자정노력「절실」
 / 김택상
 영수증 좀 주세요! / 최병규
 <문화기행>
 인물탐험: 허난설헌 / 이 준
 <정책흐름>
 1999 회계연도 정부결산
 휘발유·경유 교통세 및 등유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환원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강 화를 위한」 OECD 회원국
 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예비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안내
 <재정통계>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유가체계 개편 서둘러야 외
 <한국조세연구원 소식>
 『공공부문 개혁 국제포럼』 개최(2000. 6.22 ~ 23)

2000년 7월호(통권 제49호)

<권두칼럼>
 재정의 새로운 역할과 제도의 변화 / 박태규
 <현안분석>
 • 지방교육재원 조달방법의 재원배분비교와 비교
 / 안종석
 • 재정분권의 적정 진로 / 김정훈
 <명언산책>
 만인을 독살하는 독사예
 <특별기획>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조세제도 / 한상국
 <정책토론포트>
 공공부문개혁 국제포럼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의 조세제도(III) / 김진영
 <경제단상>
 소비의 미덕 / 이창훈
 침 발라 붙인 우표 / 강미정
 <문화기행>
 인물탐험: 계백장군 / 이 준

〈정책흐름〉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예관련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16860호)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안내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정통계〉

내국세 납세 인원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 건수

세목별 감사 실적

조세법칙 조사 실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논의 외

연도별 국세체납현황

세목별 국세체납액 정리 현황(1998)

세목별 과세적부심사제 처리실적

내국세 징세비 추이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논쟁 외

2000년 9월호(통권 제51호)

〈권두칼럼〉

한국 경제와 경제기반 구축 / 이수범

〈현안분석〉

• 담배가격의 국제비교와 세계개편방향 / 성명재

• 동남아의 부실채권 처리과정과 시사점 / 김진수

〈명언산책〉

『새벽 달빛 아래서』 중에서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의 조세제도(II) / 이장규

〈경제단상〉

전환기의 경제흐름과 대응 / 이은직

신용카드가 생활화된 사회 / 민병수

〈문화기행〉

인물탐험: 녹두장군 전봉준 / 이 준

〈정책흐름〉

2000년 상반기 통합재정 수치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전자납부 전면실시

국세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제도 시행효과

1999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2000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재정통계〉

- 소득세편(1) -

소득세 예산 및 징수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시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시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1994~1998)

종합소득세 결정유형별 신고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내년도 세계개편안을 보고 외

2000년 10월호(통권 제52호)

〈권두칼럼〉

適法과 稅政 / 김용표

〈현안분석〉

• 석유류 관련세제의 개편방향 / 성명재

•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세체납정리 / 홍범교

• WHO 보고서를 통해 본 우리나라 보건으로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 김진영

〈명언산책〉

‘족한 줄 알면 욕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

다(知足不辱, 知止不殆)’-『老子』

〈특집〉

2001년 예산(안)의 특징 / 반장식

2001년 예산(안)의 평가(I) / 안중범

2001년 예산(안)의 평가(II) / 이명현

〈정책토론회포토〉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2000년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의 조세제도(III) / 이장규

〈경제단상〉

디지털경제시대에 대한 소고 / 전홍익

‘허준’과 같은 마음 / 김현숙

〈문화기행〉

인물탐험: 기생 논개 / 이 준

〈정책흐름〉

2000 정기국회 제출 세계개편(안)

2000년 세계개편안 수정사항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계개혁 뿌리를 내리려면 외

2000년 11월호(통권 제53호)

〈권두칼럼〉

표준소득을 폐지와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 장 춘

〈현안분석〉

• 재정 투명성 논의와 시사점 / 박기백

• 2000년 세계개편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 전영준

• 도로교통의 사회적 비용: 현황 및 정책과제

/ 김정훈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의 조세제도(I) / 정재호

〈명언산책〉

‘부정한 부와 지위는 나에게서 뜬구름과 같은 것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論語』

〈경제단상〉

‘벤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 최순일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 이주희

〈문화기행〉

인물탐험 만해 한운운 / 이 준

〈정책흐름〉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

신용카드 복권 당첨인원 확대를 위한 하위등위 당첨

건수 결정방법 변경

제3차 ASEM 정상회의 경제분야 논의의제 및 기대성과

『공적자금백서』 발간

〈재정통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황

기업의무자별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현황(1994~199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나룻빛 축소 위한 가시적 조치를 외

2000년 12월호(통권 제54호)

〈권두칼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 원윤희

〈현안분석〉

• 지난 20년간의 지방재정 세입변화 / 이준석

• 우리사주제의 개선방향 및 세제지원정책 / 이장규

• 북구국가들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 한도숙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의 조세제도(II) / 정재호

〈명언산책〉

‘배가 뒤집혔을 때 수영숨씨를 알 수 있고, 말이 달릴

때 말 다루는 솜씨를 알 수 있다(舟覆乃見善游, 馬

奔乃見良御) - 『회암자』

〈경제단상〉

다음의 화두 / 박형필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 / 류인경

〈문화기행〉

인물탐험: 문무대왕 / 이 준

〈정책흐름〉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의 타결의의 및 주요내용

1998년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

기업구조조정관련 세정지원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전산조기경보시스템 개발 ·

시행

운전면허소지자 · 자기용소지자 · 자동차사업자 등에

대한 부담금 전면 폐지

〈재정통계〉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원천징수 부과현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1998)

지방국세청별 종합소득세 조사실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피같은 세금 낭비 없도록 외

· 2001 ·

2001년 1월호(통권 제55호)

〈권두칼럼〉

위기와 개혁 / 전승훈

〈현안분석〉

• 식량안보와 WTO 체제 / 이명현

• 최근 독일의 세제개혁 / 김유찬

• 미국 국제청 “납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의 내

용과 시사점 / 현진권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일본의 세제개혁 방향 / 이장규

〈경제단상〉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 고의주

〈문화기행〉

인물탐험: 무령왕 / 이 준

〈명언산책〉

발랑시엔의 교활한 도둑(The Sly Thief of

Valenciennes)

〈정책흐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

2001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확정

2000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2001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

2001년 조정관세 운용

〈재정통계〉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부과현황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

소득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소득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소득세 세무소송 건수

소득세 감사실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부가가치세율 인하 주장 유감 외

2001년 2월호(통권 제56호)

〈권두칼럼〉

경제정책 정도(正道) 밝아야 한다 / 김준영

〈현안분석〉

•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전망 / 김진수

• 신경제 논의와 시사점 / 김진영

• 후주의 전자 세정 / 정재호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 / 현진권

〈명언산책〉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도지이덕, 제지이례, 유

치차격) - 孔子, 『論語, 爲政篇』

〈경제단상〉

계몽된 사회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소고 / 박승준

〈문화기행〉

인물탐험: 단종을 따른 충신들 / 이 준

〈정책흐름〉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

공공개혁 추진 현황 및 계획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 - 세금계산서, 인터넷을 통

해 교부 가능 -

2001년 예산조기집행 점검 1차회의 개최

2001년부터 재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재정통계〉

양도소득세율의 변천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세무소송 건수

양도소득세 감사실적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재정 흑자 경기처방에 써라 외

2001년 3월호(통권 제57호)

〈권두칼럼〉

조세의 정책적 남용을 경계한다 / 이재은

〈현안분석〉

• 미국 경제의 경기변동 논의와 시사점 / 이철인

• 중국의 서부지구 개발과 외자기업 조세우대정책의

시사점 / 한성국
 • 복리자표 개발의 필요성 / 김종면
 <정책토론포트>
 제3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국제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명언산책>
 국제청 개혁을 위한 권고
 -Nizam al-Mulk, The Book of Government or Rules for Kings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스위스의 조세개혁 / 이장규
 <경제단상>
 인터넷, 참을 수 없는 사랑의 가벼움 / 김소현
 <문화기행>
 인물탐방: 춘사 나운규 / 이 준
 <정책흐름>
 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도입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확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 OECD보고서(잠정) 공표
 IMF의 재정투명성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
 각국의 중기재정제도
 <재정통계>
 법인세율의 변천
 법인세 예산 및 징수
 자본금 규모별 법인수
 자산 규모별 법인수
 외형 규모별 법인수
 종류별 법인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정치권의 준조세 경감 노력 외

2001년 4월호(통권 제58호)

<권두칼럼>
 전환기 재정의 역할 / 구정모
 <현안분석>
 • 세 부담 축적에 대한 논의 / 박기백
 • 2000년 연금과세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전영준
 • 부동산 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 김정훈
 <정책연구>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 부담의 변화 분석 / 성명재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 / 박기백·이명현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뉴질랜드 세제에 대한 OECD 평가 / 정재호
 <경제단상>
 최근 경제 현실 속의 월급쟁이 / 박세준
 신용사회로 가는 길 / 김정현
 <인물탐방>
 면암 최익현 / 이 준
 <명언산책>
 보호관세에 대한 아브라함 링컨의 발언
 - David Herbert Donald, Lincoln
 <정책흐름>
 2000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2001년 1월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자본거래 관련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
 2000년 국제세입 분석
 2000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재정통계>
 업종별 법인수
 결산기별 법인수
 시도별 법인수
 유형별 공익법인 현황
 법인세 환급금
 법인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법인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법인세 세무소송 건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특하면 목적세인가 외

2001년 5월호(통권 제59호)

<권두칼럼>
 적자재정과 국제관리 / 강정영
 <현안분석>
 •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거래 증가와 대응방안 / 안종석
 • 한계유세세율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세 부담 추이 / 현진권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노르웨이 1992년 조세개혁 / 박창균
 <정책연구>
 연금과세체계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 전영준·한도숙

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 이철인·전영준
 저축을 하라와 재정정책 / 박종규·김진영
 도로교통의 외부비용과 적정혼잡과세 / 김정훈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 한도숙
 <명언산책>
 상아젓가락이 나라를 망친다
 - 한비자 중에서
 <경제단상>
 전선(韓線)에서의 2년 / 김간수
 Click and Mortar / 이은경
 <인물탐방>
 매한 윤봉길 / 이 준
 <정책흐름>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4월 임시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공기업 자회사정리 추진현황
 2001년 2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재정통계>
 자산재평가법의 연혁
 자산재평가세 예산 및 징수
 자산재평가세 부과
 자산재평가 산출내역
 자산별 재평가 상황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계잉여금, 추경 사용 안된다 외

2001년 6월호(통권 제60호)

<권두칼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한 변명 / 김경환
 <현안분석>
 • 미국의 조세감면정책 / 정재호
 • 전자상거래와 조세 - OECD TAG 보고서 - / 홍범교
 <기행>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
 <명언산책>
 부지런함과 검박함 - 채근담 섭세편 중에서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폴란드의 조세개혁 / 박창균
 <정책연구>

뉴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 이명헌 · 정재호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 손원익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 김정훈

〈경제단상〉

주식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종철

월 소득 34만원? / 송은주

〈인물탐합〉

소설가 조정래 / 이 준

〈정책흐름〉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

중국의 외국인투자 동향

소득세 무기장산고자 관리강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현황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

업태별 부가가치율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지자체 보조금 체계화 하라 외

2001년 7월호(제61호)

〈권두칼럼〉

투명성을 제고하고 냉정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 이재현

〈현안분석〉

- 도시기구의 세부담 변화 추이 / 성명재
-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 김진수

〈명언산책〉

코스(Coase) 교수님 어디에 계신가요?

〈특별기획〉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과제와 개혁방향 / 권순원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 분석을 위한 소고
/ 이혜훈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멕시코의 세제 / 박창균

〈정책연구〉

북구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책을 중심으로 / 한도숙

파트너쉽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김진수 · 김재진

〈경제단상〉

나는 과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 고희탁

휴대폰과 신용카드에 대한 상념 / 심재진

〈인물탐합〉

부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살신성인'의 참
군인들 / 이 준

〈정책흐름〉

한 · 중 · 일 경제협력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01년 4월까지의 세수실적 분석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별 인원(개인)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부가가치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소송 건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건강보험 해법 없나 외

2001년 8월호(통권62호)

〈권두칼럼〉

장래를 위한 포석 / 전승훈

〈현안분석〉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방안 / 한상국
- 대학재정지원정책의 현황과 평가 / 김진영
- 소액거래 과표양성화를 위한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 김재진

〈명언산책〉

인플레이션세에 관한 케인즈의 견해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스페인의 조세개혁 / 권오성

〈경제단상〉

주식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 고희탁

정보화 사회를 보는 시각 / 김용대

〈인물탐합〉

하늘보기 부끄러워 삿갓쓰고 방랑한 천재 김삿갓 김
병연 / 이 준

〈정책흐름〉

OECD 2001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01년 상반기 음성 · 탈루소득자 조사결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상금 확대
한 · 칠레 조세조약 협상타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운용방향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예산 및 징수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출고량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부과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특별소비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특별소비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소득공제 확대보다 세율 인하를 외

2001년 9월호(통권63호)

〈권두칼럼〉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하여 / 우창록

〈현안분석〉

-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 박기백
- 기업연금관련 조세제도 정비방향 / 전영준

〈명언산책〉

조세정책의 시행착오 - 역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정책토론포스트〉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 · 재정 정책과제 / 박기백 외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그리스의 조세개혁 / 권오성

〈경제단상〉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 고희탁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 류인경

〈인물탐합〉

서울에 도읍한 조선개국의 풍운아 태조 이성계
/ 이 준

〈정책흐름〉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재정3법 제 · 개정 추진현황

전자정부 서비스 내년부터 본격 개시

〈재정통계〉

주세율의 변천

주세 예산 및 징수

주류별 주세 부과

주요 주류 출고 현황

주류 제조면허장 수

주류 판매면허장 수

주세 국제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계개편안 방향은 옳다 외

2001년 10월호(통권64호)

〈권두칼럼〉

감세정책과 불황 극복 / 엄기웅

〈현안분석〉

- 대규모기업집단지에도 관한 최근의 논의 / 김진수
- 공기업가격정책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 / 현진권
- Emerging Market에서의 외환·금융위기가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중심으로 / 박창균

〈기획〉

기획 I

2001년 세계개편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 홍병교

2001년 세계개편안의 평가 / 이만우

기획 II

2002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 반장식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임주영

〈명언산책〉

돈과 대가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체코공화국의 조세개혁 / 권오성

〈경제단상〉

어떻게 변할 것인가? / 홍록식

주역의 원리와 심 없는 미로 찾기 / 김익홍

〈인물탐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 이 준

〈정책흐름〉

2002년도 예산(안)

2002년 통합재정수지 전망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신간안내〉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이병철·정주영 외

〈재정통계〉

상속세율의 변천

상속세 예산 및 징수

상속세 부과

상속재산가액의 계급별 피상속인수, 재산가액 및 상속세 부과

상속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상속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상속세 세무소송 건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예산안 거품은 없나 외

2001년 11월(통권65호)

〈권두칼럼〉

경제난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이인실

〈현안분석〉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과세문제 / 김재진

• 국가물류비 실태와 철도교통의 중요성 / 정재호

〈명언산책〉

실증적 사고와 규범적 사고

〈정책토론포트〉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세·재정 운용방향

- 중장기 세계개편방향 / 손원익

- 세출구조 및 재정운용 개선방향 / 박기백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종합〉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

〈경제단상〉

정보화와 우리의 선택 / 김광석

갈수록 늘어나는 유치원 교육비 / 강미정

〈인물탐험〉

예로써 나라를 일으키려했던 大老 우암 송시열

/ 이 준

〈정책흐름〉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신간안내〉

열보다 큰 아홉 외

〈재정통계〉

증여세율의 변천

증여세 예산 및 징수

증여세 부과

증여재산가액의 계급별 수증자수, 재산가액 및 증여세 부과

증여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증여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증여세 세무소송 건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재정 효율성 끌어올려야 외

2001년 12월(통권66호)

〈권두칼럼〉

조세법률주의가 세법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 윤종훈

〈현안분석〉

• 상속·증여세법상 원천포괄주의 도입에 관한 소고

/ 한상국

• 최근 우리나라의 체육재정 현황 / 김진영

• 수출환경 보전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의 평가

/ 권오성

〈명언산책〉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종합II〉 한국, 멕시코, 그리스, 폴란드, 체코

〈신간안내〉

혼돈의 기원-세계 경제 위기의 역사 1950~1998 외

〈경제단상〉

테러의 경제학과 대테러의 경제학 / 이상팔

바쁜 서울 생활 속에서의 힘듦과 보람 / 하희유

〈인물탐험〉

주군을 대신해 목숨을 버린 충의의 표상 고려 명장
신승경 / 이 준

〈정책흐름〉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

2000년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잠정)

중국의 WTO 가입 영향과 대응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재정통계〉기타 소비세 및 목적세(편)

전화세 예산 및 징수

인지세 예산 및 징수

방위세 예산 및 징수

농어촌특별세 예산 및 징수

교통세 예산 및 징수

교통세 부과

교육세 예산 및 징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재정정책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외

• 2002 •

2002년 1월호(통권 제67호)

〈권두칼럼〉

건강한 정치와 활력 있는 경제 / 송대희

〈현안분석〉

• 재정과 경기조절 / 박기백

• 케이블 인터넷의 사회후생과 조세정책 / 전택승

• 경제위기를 초래한 아르헨티나의 재정건전화 정책
실패 / 박형수

<명언산책>

진화와 규범

<해외동향>

일본 세제개혁의 최신 동향 / 국중호

<신간인내>

이코노미스트 세계대전망 - THE WORLD IN 2002

<정책흐름>

2001년 직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2001년 간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200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통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지방세 시도별 분포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법인세 인하 '숫' 보다 '뎀' 많다 외

2002년 2월호(통권 제68호)

<권두칼럼>

국제조세의 새로운 경향과 우리의 대응 / 이진학

<현안분석>

• 의료기관 관련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 손원익

•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 / 전영준

<명언산책>

정치의 상태

<해외동향>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신간인내>

OECD 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정책흐름>

2001년 국제수입 실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외국의 중산층·서민 생활안정대책과 그 시사점

기업의 정보화 및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납세편의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개선 내용

<재정통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지하경제 줄일 방안 찾아야 외

2002년 3월호(통권 제69호)

<권두칼럼>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의 확충 / 이영희

<현안분석>

• 성공적 조세개혁을 위한 접근방법론 / 노영훈

•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안: 내용과 교훈 / 현진권

•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도시가구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혼과 노령화 문제를 중심으로 / 성명재

<기고>

일본경제, 재생전략은 없는가? / 배준호

<명언산책>

정치와 경제

<정책토론포트>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제행정 개선방향 / 전승훈·

김재진

<해외동향>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신간인내>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정책흐름>

2001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금제도 개혁 본격 추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재정통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고액납세자들 외

2002년 4월호(통권 제70호)

<권두칼럼>

현행 합병세제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 / 이준규

<현안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 김철훈

• WTO 무역 원형화 논의에 대비하여 / 정재호

• 일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내용과 시사점 / 김진수

• 다국적 기업의 지역분부 유치와 조세정책 / 최준욱

<명언산책>

파레토 개선

<해외동향>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III)

<신간인내>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흐름>

2001구세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2001년 통합재정수지(잠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국제조세비교 : 총괄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한국경제, 봄은 왔나 외

2002년 5월호(통권 제71호)

<권두칼럼>

투명성은 기업경쟁의 생명이다 / 신찬수

<현안분석>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립과 전략 모색: 경제성장

모형 검증을 통한 시사점 연구 / 권오성

• OECD방식에 의한 우리나라 잠재GDP 추정

/ 박형수

<정책토론포트>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

<명언산책>

합리적 행동

<정책연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 성명재

고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

이철인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 현진권·박창균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 박기백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홍범교·안중석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김진수·황국제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 정재호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 안중석

<정책흐름>

정부행정 효율성 크게 상승

인터넷을 통한 1단계 국세서비스

체육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재정통계〉

국제조세비교: 소득과세(Ⅰ)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소득분배 개선 급하다 외

2002년 6월호(통권 제72호)

〈권두칼럼〉

포괄과세주의 도입 준비를 / 박영준

〈현안분석〉

- 조세구제제의 개선방향 / 한상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 김재진
- 기금에 대한 통제와 자율권의 논리 / 전택승
- 농촌지역정책에 대한 검토: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명현

〈정책토론포르트〉

체육투자자의 성과 평가와 정책방향

〈명언산책〉

민주적 토론

〈정책연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 김진영
 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분석: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중심으로 / 이명현 · 성명재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 사회보장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차연도 과제 - / 전영준 · 김종연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 · 재정분야 기초 연구 (II) / 최준욱 · 이명현 · 전택승 · 한상국

〈정책흐름〉

신용카드 종합대책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중기재정지원방향
 ASEAN+3(한 · 중 · 일) 재무장관회의의 결과

〈재정통계〉

국제조세비교: 소득과세(I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租稅미일리지 제도를... 외

2002년 7월호(통권 제73호)

〈권두칼럼〉

개방을 다시 생각함 / 곽태원

〈현안분석〉

- 기금 현황과 쟁점 / 박기백
- NPO 및 기부금 관련 최근 동향 / 손원익
-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 / 김정훈

〈정책토론포르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 / 김정훈

〈명언산책〉

인간사회의 목표

〈정책연구〉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 김진영 · 박창균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 김정훈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 전영준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에 관한 연구 / 최준욱

〈정책흐름〉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금 신설 · 폐지 및 부담금 징수 현황
 200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제
 새로운 재정기조 판단지표 개발

〈재정통계〉

국제조세비교: 재산과세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억울한 세금부과 없어야 외

2002년 8월호(통권 제74호)

〈권두칼럼〉

공적자금 논쟁에 있어서 금기사항 / 이만우

〈현안분석〉

-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 / 노영훈
- 미국의 세수추계로부터의 시사점 / 성명재
- OECD 국가의 환경세 도입방향에 대한 논의 / 권오성
- 재정정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옥동석 · 배근호

〈명언산책〉

현실 직시

〈정책토론포르트〉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 박기백

공적자금 상환대책(재정부문) / 박기백

〈정책흐름〉

2002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잠정)
 장래 가구 추계(2000~2020)

납세관련 서류 제출방법의 전자 송신화

〈재정통계〉

국제조세비교: 소비과세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청소년 경제교육 관심 가질 때 외

2002년 9월호(통권 제75호)

〈권두칼럼〉

소득분배 악화시킬 고속철 / 배준호

〈현안분석〉

-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 정재호
- 국제 ·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실태 및 정책방향 / 김재진
- 기금과 특별회계의 비교분석 / 전택승

〈기획〉

2002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 한상국

〈정책토론포르트〉

Global 시대 동아시아의 세제개혁 방향
 〈정책흐름〉
 20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20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보완

〈재정통계〉

중앙재정 1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자본이득과세 강화해야 외

2002년 10월호(통권 제76호)

〈권두칼럼〉

부동산 투기의 억제방법은 시가과세에 있다 / 이우택

〈현안분석〉

- 조세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 / 한상국
- 재정지표의 유형과 적용 / 박기백
-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로 본 우리나라 재정정책 / 박형수
- 1996~2001년의 소득 및 소득세 부담 변화추이도 시가구를 중심으로 / 성명재

〈특집 2003년 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배국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Ⅰ) / 오연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Ⅱ) / 박형수

〈정책흐름〉
 2003년 예산(안)
 2003년도 국제 세입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제청 조세박물관 개관
 〈재정통계〉
 중앙재정 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카드 납세 왜 안되나 외

중국의 재정관리체제 / 한상국
 〈정책흐름〉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중앙재정 IV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거꾸로 가는 소득재분배 외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200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운용계획 및 쌀소득
 보전기금운용 계획
 〈재정통계〉
 중앙재정 V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좋지만...외
 〈권말부록〉
 2002년 총목차

• 2003 •

2002년 11월호(통권 제77호)

〈권두칼럼〉
 세 부담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제언
 / 이철승
 〈현안분석〉
 • 중소기업 경영의 건전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계개편방안 / 김진수
 • 부부자산합산과세의 위험결정과 미국의 혼인세 논쟁 / 노영훈
 • 신의주특구와 조세정책 고려 요소 / 한상국
 〈정책흐름〉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 대응
 2002년 11월부터 홈택스서비스 확대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
 최근 경제동향과 2003년도 재정운영방향
 〈재정통계〉
 중앙재정 I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大選에 떠밀린 예산심의 외

2002년 12월호(통권 제78호)

〈권두칼럼〉
 고령화사회의 진행과 한국경제 / 조윤제
 〈현안분석〉
 • 접대비 관련세제와 지출현황 / 손원익
 • 세계 복잡성의 사회적 비용과 세계 단순화를 위한 선진국의 노력 / 김재진
 • 체제전환국의 재정적자 경험과 복원에 대한 시사점 / 최준욱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 전병목
 〈해외동향〉

2003년 1월호(통권 제79호)

〈권두칼럼〉
 음식문화와 새로운 경제질서 / 송대희
 〈현안분석〉
 • 강원도 카지노세 논의배경과 도입방안 / 김정훈
 •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 / 김현아
 • 배당소득세제의 정책과제 / 김진수
 〈해외동향〉
 일본 소득과세의 경제효과 / 국중호
 〈전국 대학생 현상 논문 공모 우수작〉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김선중
 〈정책흐름〉
 2003년 1월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2 한국의 사회지표
 〈재정통계〉
 중앙재정 V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희망을 키우는 경제를 외

2003년 2월호(통권 제80호)

〈권두칼럼〉
 부동산투기와 세계개편의 과제 / 조주현
 〈현안분석〉
 • 기금의 투자적 성격-계약성과 영향력- / 전택승
 • 국가채무의 개념 및 분류 / 박기백
 • 선박 톤세제도 관련 논의 / 손원익
 〈정책흐름〉
 2003년 경제운영방향
 최근 주요국의 연금제도 개혁동향

2003년 3월호(통권 제81호)

〈권두칼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 나성린
 〈현안분석〉
 • 우리나라와 OECD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비교 / 권오성
 •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정책 / 노영훈
 〈정책토론포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정책흐름〉
 2003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신고 안내
 200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002년 국제수입 실적
 2003년도 기획예산처 현안 및 주요정책 과제
 〈재정통계〉
 중앙재정 V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노무현정부의 세정개혁 기대와 불만 함께 따져봐야...외

2003년 4월호(통권 제82호)

〈권두칼럼〉
 SK의 비윤리적 교훈 / 최용선
 〈현안분석〉
 • 건강보험의 장기재정부담 / 김종면
 •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분포 분석을 통해 살펴본 소득분배 구조의 현황 / 성명재
 • WTO DDA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정재호
 〈해외동향〉
 독일의 상속증여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김유찬

〈정책흐름〉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2003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외국의 재정분권 동향과 시사점
 국제정 혁신방향
 〈재정통계〉
 중앙재정 V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적자재정 말할 때인가 외

2003년 5월호(통권 제83호)

〈권두칼럼〉

포괄주의 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 / 윤세리

〈현안분석〉

-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한 도농간 소득비교 / 이명헌
- 미국조세제도의 역사적 흐름과 시사점 / 현진권
- 국제적 탈세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 최준욱

〈정책토론포트〉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방안

〈해외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정책흐름〉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성과관리제도 시행방향
 2003년도 재정운영 등 현황업무
 2003년 5월 1일부터는 내집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자
 2001년도 지방세 최종징수실적
 〈재정통계〉
 중앙재정 IX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부동산 과표, 현실성 있게 고쳐야 외

2003년 6월호(통권 제84호)

〈권두칼럼〉

참여정부의 국제행정방향 / 김종삼

〈현안분석〉

-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방간 재정관계 변화와 정책 시사점 / 안종석

-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 정재호

- 미시자료로 분석한 법인의 세부담 / 박기백

〈정책토론포트〉

로또복권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

〈해외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정책흐름〉

SOC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참여정부 출범 100일』경제정책의 성과와 비전

2002회계연도 정부결산

투기지역 지정 확대

2003년 추경예산(안) 편성

〈재정통계〉

지방재정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율 내리고 감면 줄여야 외

2003년 7월호(통권 제85호)

〈권두칼럼〉

공공부문 개혁의 원칙에 관하여 / 유일호

〈현안분석〉

- 미시자료로 분석한 법인의 세부담 / 박기백
- 효율적인 정부조직구성 및 인사배치 이론 / 전택수
- 국민연금제도의 가입기간 형평성 제고방안

〈해외동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정책흐름〉

2003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부가세법시행령 및 조특법시행령 개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5월까지의 재정조기집행 실적 및 추경예산 집행 대책
 2003년 7월 1일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안내

〈재정통계〉

지방재정 I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추경보다 더 급한 경기대책은 외

2003년 8월호(통권 제86호)

〈권두칼럼〉

‘눈의 시대’의 경제정책 / 전승훈

〈현안분석〉

- 일본의 배우자 공제제도, 사회보험과 여성노동공급 / 원종학

- 일본 재정구조의 변화와 세제개혁 전망 / 국중호

- 프랑스 공공지출의 현안과 시사점 / 김종면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정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외

〈정책흐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근로소득공제율 5%p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율 10%p 확대

2001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상황 분석자료

〈재정통계〉

지방재정 II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금보험료, 봉급지만 ‘봉’ 안 되게 외

2003년 9월호(통권 제87호)

〈권두칼럼〉

거시경제 안정화가 우선이다 / 이인실

〈현안분석〉

- 공평한 세무조사란 무엇인가? / 김형준
- 부동산 거래세의 실과과세 실행방안 / 노영훈
- 국가채무관리의 개선방안 / 박형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호주의 2003/04 회계연도 예산 외

〈정책흐름〉

9. 5 주택가격 안정대책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2003년 세법개정(안)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재정통계〉

조세총괄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새 세금보다 보유세 강화를 외

2003년 10월호(통권 제88호)

〈권두칼럼〉

사회경제 구조변화에의 적절한 대응방향 모색 / 장수만

〈현안분석〉

-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결과 / 전승훈 · 김재진
- 최근의 국제 세수동향 / 성명재
- WTO 제5차 각료회의와 DDA 협상의 진행 / 정재호

〈특집〉

-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0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주영섭
- 2003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 / 전병목
- 2004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권해상
- 2004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최준욱

〈정책토론포인트〉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쟁점과 추진과제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프랑스 내년 소득세 3% 인하 계획 외

〈정책흐름〉

2003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예산안

〈재정통계〉

조세총괄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내년 예산 성장배려 미흡 외

2003년 11월호(통권 제89호)

〈권두칼럼〉

재정의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초석, 재정분석센터 발족에 즈음하여 / 전승훈

〈현안분석〉

- 2003 일본 세계개편 주요내용 검토 / 손원익
- 지방세수 추계의 왜곡요인과 개선방안 / 김현아
- 연안화물운송업에 대한 조세체계 및 개선방안의 검토 / 권오성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프랑스 등 EU국가의 재정적자 장기화와 유로화의 안정성 외

〈정책흐름〉

제1차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 개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지난 5년간 공기업부문 구조조정 평가 결과

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 6,499억원 부과

〈재정통계〉

조세총괄I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기술이전 세제지원 유지되어야 외

2003년 12월호(통권 제90호)

〈권두칼럼〉

중위급과 평균의 차이/ 박완규

〈현안분석〉

- 정책인프라로서 소득파악의 문제: 실태와 정책과제 / 현찬권
- 소득분배구조의 향후 추이에 대한 일고/ 김종연
- 지방소비세 신설-필요한가?/ 안종석

〈정책토론포인트〉

KIPF-일본 재정전문가 세미나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국 감세정책 경기회복 견인 외

〈정책흐름〉

2004년도 기금운용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03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및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결사항

200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재정통계〉

조세총괄IV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적자재정, 경기부양 효과 없다 외

• 2004 •

2004년 1월호(통권 제91호)

〈권두칼럼〉

부동산 관련 조세의 투명성 제고 방안/ 송대희

〈현안분석〉

-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전병목
-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박기백
-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수입측면을 중심으로/ 박노욱

〈전국 대학(원)생 현상 논문 공모 우수작〉

고용 창출을 위한 선택적 차별과세/ 이옥진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전자상거래시장 동향 외

〈정책흐름〉

2004년 1월 1일부터 조세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3년 조세지출보고서 주요 내용

2004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확정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정통계〉

조세총괄V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양도세 벌금수준으로 올라 외

2004년 2월호(통권 제92호)

〈권두칼럼〉

경제 살리기의 전제조건/ 곽태원

〈현안분석〉

- 실업구조 변화와 실업대책/ 원종학
-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김현숙
- 법인세를 인허에 대한 쟁점 분석/ 박형수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호주 노동당, TCF품목 관세인하계획 수정 촉구 외

〈정책흐름〉

2003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4년 예산 통합재정수지 분석

2004년 상반기 재정집행 54.8%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금년 계획

〈재정통계〉

조세총괄V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접대비 규제 현실화해야 외

2004년 3월호(통권 제93호)

〈권두칼럼〉

경제정책,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전주성

〈현안분석〉

- 향후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대한 소고 / 노영훈
- B2C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소고 / 홍범교
- 의료기관 관련 조세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 손원익

〈정책토론포인트〉

우리나라 국제행정의 현황과 과제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독일 재무장관, 근본적 세제개혁 요구 외
 <정책흐름>

제1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부동산투기지역 지정현황

2003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및 소득분배동향

2003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재정통계>

소득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SOC 투자 효율성 점검해야 외

2004년 4월호(통권 제94호)

<권두칼럼>

참여정부 1년의 경제회고와 과제/ 김준영

<현안분석>

• 담배 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 성명재

•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 / 정재호

• 개별과세정보는 국회에 공개되어야 하나?/ 현진권

<정책토론회포토>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분과별 토론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원, 향후 5년간 세금감면 관문 열어 외

<정책흐름>

고용창출형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특별소비세율 인하

2003년 통합재정수지 8.1조원 흑자 시현

세금포인트제 최초 시행

올해 지방예산규모 87조 2,840억원

<재정통계>

소득세 I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신용불량자 대책, 첫발은 땀지만 외

2004년 5월호(통권 제95호)

<권두칼럼>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나성린

<현안분석>

• 인구구조 고령화의 재정영향/ 최준욱

• 경제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안중석

• 네덜란드 환경세제의 변화와 시사점: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현진권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G7, 세계·노동개혁 합의 외

<정책흐름>

2003 회계연도 정부결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2003년말 국가채무 165.7조원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방안

<재정통계>

소득세 II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이제는 물가안정이다 외

2004년 6월호(통권 제96호)

<권두칼럼>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과 Top-down 방식의 재원배분/원운희

<현안분석>

•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비교 및 시사점

/ 정재호

•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박형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원, 인터넷 접속세 금지법 통과 외

<정책흐름>

제1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OECD, 경제전망 발표

2003회계연도 정부결산

4월까지 지난해보다 3.1조원 증가한 56.8조원 재정집행

<재정통계>

소득세 IV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재산세 개편은 보유세 강화로 외

2004년 7월호(통권 제97호)

<권두칼럼>

재정안정화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이만우

<현안분석>

• 중국의 최근 조세정책/ 한상국

• 우리나라 수자원관련 조세정책 방향/ 전병목

• 부유세 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노영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EU 회원국, 조세부담률 지속적으로 감소 외

<정책흐름>

SOC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04.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

국가채원배분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

2004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04년 1/4분기 말 현재 총 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 (잠정)

<재정통계>

양도소득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금, 국민을 이해시켜야 외

2004년 8월호(통권 제98호)

<권두칼럼>

재정개혁의 과제/ 임성일

<현안분석>

•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김현숙

• 교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 현진권

<정책토론회포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경기 살아나 2003년도 법인세수 10조엔대 회복 외

<정책흐름>

2004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동향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지원 현황

2004년 6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추경예산 등 3.2조원 3/4분기에 집행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 법률

<재정통계>

법인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아파트 재산세 반발, 옳지 않다 외

2004년 9월호(통권 제99호)

<권두칼럼>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 박성배

<현안분석>

- OECD 회원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동향/ 홍범교
- OECD 국가의 대학 지배구조 변화 동향 및 시사점 / 안종석

<기획>

중점 조세정책 방향 및 2004년도 세제개편안 / 백운찬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Ⅰ) / 안종석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Ⅱ) / 곽태원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Ⅲ) / 손광락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하원의장, "부시 재집권하면 국세청 폐지될 것" 외

<정책흐름>

소득세 경감 및 특소세 폐지관련 보도 참고자료

2004년 세제개편안

기금운용평가단에서 57개 기금을 39개로 축소

<재정통계>

법인세 Ⅱ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기금 주식투자의 전제조건 외

2005년 나라살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 국제세입예산(안)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확정

'04년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 (잠정)

<재정통계>

법인세 Ⅲ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기초연금제 도입 검토할 만하다 외

<권말부록>

『재정포럼』 총목차

• 규모별 임금격차와 실업/ 원종학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세금 민간인이 걷는다 외

<정책흐름>

보유세제 개편방안

2004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관련 현황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Ⅰ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연기금 합부로 써선 안 된다 외

• 2005 •

2004년 11월호(통권 제101호)

<권두칼럼>

국제조세행정의 도전과 대응/ 최병철

<현안분석>

- 캐나다의 재정건전성 회복/ 김 진
-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 / 한상국
- 공공부문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 박노욱

<기획>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워드 프레스콧의 학문세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기업이익 증대 불구 세수입은 2000년 수준 못 미쳐 외

<정책흐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간 연장

금년도 종합토지세 2조 1,168억원 부과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유엔의 "국제조세기구" 창설 기도 외

2005년 1월호(통권 제103호)

<권두칼럼>

경제발전과 대학교육/ 권선주

<현안분석>

-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 김현숙
- 규모별 임금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 김형준
- 우리나라 소득세의 계층별 부담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소고 / 성명재
-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 전병목

<기획>

최근 독일의 세제개편/ 김유찬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부시 "연금개혁 위한 세금인상 없다" 외

<정책흐름>

종합투자계획 추진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 확정

04년 3/4분기말 현재 총대외채무·대외채권 현황 (잠정)

재정운용의 성과와 향후과제

현금영수증제도 본격 시행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Ⅱ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외

2004년 10월호(통권 제100호)

<권두칼럼>

미국에서의 소비세 논쟁과 시사점 / 이준규

<현안분석>

- 한·중·일 FTA에 대비한 3국의 관세 비교분석 / 정재호
-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김현아

<기획>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김규옥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Ⅰ) / 박형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Ⅱ) / 박정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Ⅲ) / 옥동석

<정책토론포트>

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감세정책 힘쓸까 외

<정책흐름>

2004년 12월호(통권 제102호)

<권두칼럼>

매력 있는 나라 만들기/ 윤순봉

<현안분석>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 및 가격 보조의 현황과 시사점/ 김종연

2005년 2월호(통권 제104호)

〈권두칼럼〉

작은 정부와 일 잘하는 정부/ 옥동석

〈현안분석〉

-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노영훈
-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박형수
-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 김진수

〈기획〉

2005년도 일본의 세제개정/ 원종학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법인세 면제 회사 허용' 추진 외

〈정책흐름〉

2004년 국세수입 실적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III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고령친화산업' 육성 빈틈 없이 추진해야 외

2005년 3월호(통권 제105호)

〈권두칼럼〉

국제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서희열

〈현안분석〉

- 정부부문 자본소득과 생산성/ 류덕현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이해와 분석/ 박상원
- 부담금제도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 정재호

〈기획〉

2004 미국 세제개편과 향후 동향/ 장근호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자산부담리기로 매년 290억달러 세수손실 외

〈정책흐름〉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파악

소득분배 현황 관련 참고자료

제252회 임시국회 재경위 업무현황보고 자료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주택 양도세 실질세 면제 유지해야 외

2005년 4월호(통권 제106호)

〈권두칼럼〉

경제발전과 납세자 권리구제/ 김용민

〈현안분석〉

- 근로소득보전세제(E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 안종석
-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도시개발비용부담의 의미 / 김현아
- 교토의정서 체제의 환경세 관련 정책/ 권오성

〈기획〉

2006년도 미국의 예산안/ 박형수

〈정책연구〉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 정비 / 홍범교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II)/ 박형수 · 최준욱 · 김진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손원익 · 정재호 · 김형준 · 김상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박기백 · 김진 · 전병목

여성인력 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김현숙 · 원종학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김현아 · 박상원 · 김형준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세무행정 위기 외

〈정책흐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

2004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의 간소화 방안 검토

제2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재정통계〉

주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4년새 2배로 늘어난 기업 준조세 외

2005년 5월호(통권 제107호)

〈권두칼럼〉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위한 친환경적 세제개혁의 필요성/ 구정모

〈현안분석〉

- 법인세 평준화/ 박기백

-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 규모 변화/ 전병목

〈기획〉

일본의 2005년도 예산안/ 류덕현

〈정책연구〉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안종석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 박노옥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 정재호 · 류덕현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 권오성 · 하한구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영국, 어린이·노인에 세제혜택 외

〈정책흐름〉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를 인하 적용시한 재연장

Ten-Ten 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본부 역할 수행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 정고시

〈재정통계〉

상속세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당연하다 외

2005년 6월호(통권 제108호)

〈권두칼럼〉

조세개혁 논의에 붙여/ 이진오

〈현안분석〉

- 공공부문 제공의 효율성에 대한 일고: 인프라-시비스 구조를 중심으로/ 김진

-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 호주 및 뉴질랜드 사례/ 김재진

-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개혁 정착/ 김중면

〈기획〉

독일·프랑스·호주·뉴질랜드의 2005년도 예산안/ 류덕현

〈정책연구〉

법인세 부담 연구-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박기백 · 김진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중심으로 / 김진수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박기백 외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속세 폐지될라 숨죽인 자선단체들 외
〈정책흐름〉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정
토지분 재산세 부담 증가 완화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

〈재정통계〉

상속세 11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종합부동산세 기입만 덩그러니 쓰나 외

2005년 7월호(통권 제109호)

〈권두칼럼〉

경기를 살리려면/ 홍순영

〈현안분석〉

- 정부지출과 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에 관한 일고 / 박노욱
-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방안/ 원종학
- 추경편성에 대한 쟁점 분석/ 박형수

〈정책토론회포토〉

「한국형 ETC」 도입 타당성 검토

〈정책연구〉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김형준·현진권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 노영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앞서가는 홍콩 세제 외

〈정책흐름〉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05. 6월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재정통계〉

증여세 1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집값 대책, 보유세제부터 바로 잡아라 외

2005년 8월호(통권 제110호)

〈권두칼럼〉

철도와 재정/ 배준호

〈현안분석〉

-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한상국

- 경제성장률의 감소와 소비의 침체/ 김형준
-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 김현숙

- 연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방침과 향후 검토과제 / 노영훈

〈정책토론회포토〉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정책연구〉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경과 정책방향 / 김종면 성명재

부문별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성명재 김종면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재정정책(2): 고령화 대응 조세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준욱·전병목·김우철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미, 담배소비세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역효과 외

〈정책흐름〉

최근 심리지표 움직임의 주요 특징 및 원인 분석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분석

2005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재정통계〉

기타세 1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중부세 강화 막을 일 아니다 외

2005년 9월호(통권 제111호)

〈권두칼럼〉

정부재정의 정책기능/ 전주성

〈현안분석〉

- 상속 증여세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세대간 자산 이전 모형을 중심으로 / 김진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 류덕현

〈특집〉

• 2005년도 세제개편 내용 / 변상구

•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바라보는 시각 / 노영훈

• 2005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소고 / 김재진

• 2005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나성린

• 2005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김유찬

〈정책토론회포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 및 이전가격세제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 방안

〈정책흐름〉

2005년 세계개편안)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2005년 10월호(통권 제112호)

〈권두칼럼〉

감세논쟁을 보면서 / 안종범

〈현안분석〉

- 정부조달과 담합: 자신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박상원

- 개인소득세제 개혁: OECD 회원국의 동향과 시사점 / 안종석

〈특별기획〉

내년도 예산,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 / 정홍상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류덕현

2006년도 예산안의 평가 / 박정수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미, 재정적자 큰 폭으로 늘어날 듯 외

〈정책흐름〉

2005년 추경예산(안) 및 2006년 예산(안)

2006년 국세세입 예산(안)

음성 탈루소득자 등 세무조사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자치단체 교부기준 마련 추진

〈재정통계〉

기타세 2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수도권 중기 세급 차별 안 된다 외

2005년 11월호(통권 제113호)

〈권두칼럼〉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변재진

〈현안분석〉

- 영유아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 김현숙

- 재정분권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 / 김현아

〈특별기획〉: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셸링의 생애와 학문세계 / 안종석

• 2006 •

로버트 아우만 교수의 경제학에의 공헌/ 김 진

〈정책토론포트〉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일 자민당, 소비세 사회보장용 목적으로 추진 외

〈정책흐름〉

금년도 8월까지의 세수실적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

유기보조금 지급실적 및 전망

세무조사 운용 현황

〈재정통계〉

지방세 1편

〈이러의견 저런생각〉

연금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외

2005년 12월호(통권 제114호)

〈권두칼럼〉

학문의 전문성과 시장성/ 유일호

〈현안분석〉

• 글로벌근종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영국사례

/ 김재진

• 우리나라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

안 / 박노옥

•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 정책과 시사점 / 원종학

〈정책토론포트〉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영유아 보육 교육과 정부의 역할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미, 모기지론 세공제 대폭 축소 외

〈정책흐름〉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 국회 제출

근로소득세 예산관련 쟁점

06년 주요세목별 05년 세입전망과 06년 예산 비교

제3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 결과

〈재정통계〉

지방세 2편

〈이러의견 저런생각〉

갑근세 26% 인상, 해도 너무 한다 외

2006년 1월호(통권 제115호)

〈권두칼럼〉

2006년도의 한국경제와 조세·재정정책 / 최용선

〈현안분석〉

• 다년도 예산제도 고찰 / 김종면

•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 정재호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중국, 개인소득세제 변경 외

〈정책흐름〉

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 규칙 개정안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안)

2005 지방재정분석결과

2006년 경제운용방향

〈재정통계〉

지방재정 1편

〈이러의견 저런생각〉

양극화, 정치선전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외

2006년 2월호(통권 제116호)

〈권두칼럼〉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불명확성

/ 김완석

〈현안분석〉

• 경매를 통한 조달효율성 제고에 대한 소고 / 김 진

•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과 발전방안 / 김현아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외

〈정책흐름〉

2005 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2005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관련 추가설명

2005년 국제수입 실적(05년도 총세입 세출부 마감

관련)

06. 3월 법안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개정 교토협약(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

제협약) 발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금년 정부 R&D 투자 전년 대비 14.2% 증가

〈재정통계〉

지방세 4편

〈이러의견 저런생각〉

지역업자 과세기반 확대 실효 거둬야 외

2006년 3월호(통권 제117호)

〈권두칼럼〉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 이준구

〈현안분석〉

• 목적세입(Earmarked Revenue)/ 박기백

•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정재호

〈정책토론포트〉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

〈정책연구〉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완석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미·일·중·인도 등 양극화 해소 어떻게 외

〈정책흐름〉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2005년 수출입 동향(확정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102개 부담금, 운용 적정성 전면 재검토

〈재정통계〉

지방세 5편

〈이러의견 저런생각〉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외

2006년 4월호(통권 제118호)

〈권두칼럼〉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에 대한 대책/ 김동건

〈현안분석〉

• 납세협력도 상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모의실험을 중심으로 / 성명재

• 분야별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 류덕현

〈해외동향〉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배경과 전망 / 김유찬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디지털, 재정건전성 위한 소비세 도입 시사 외

〈정책흐름〉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

05년말 국가채무 현황

2005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결과
2005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07년 재정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사회 대비에 중점
<재정통계>
GDP 대비 총조세 비중
<이런의견 저런생각>
론스타 과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외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
/ 이진규 김진수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 회피와 그 대응방
안 / 노영훈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일, 법인세 육아비 줄이고 소비세 인상 외
<정책흐름>
부담금 운용평가단, 13개의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

2006년 5월호(통권 제119호)

<권두칼럼>
조세비용의 관점에서 본 재정개혁 / 전주성
<현안분석>
•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 홍범교
•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 기본보조금에 대한 검
토 / 김현숙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인도네시아 정부, 4대 중점산업 재선에 특별 감세안
추진 외
<정책흐름>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근로소득지원세제(ETC)세명칭 공모
전국 87만호에 대한 2006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2006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이런의견 저런생각>
오도된 상속세 폐지론 외

1인당 지표의 의미와 영향 분석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국가회계법' 제정안 입법 예고
<이런의견 저런생각>
성공적 FTA의 조건 외

2006년 6월호(통권 제120호)

<권두칼럼>
공공복지 증진에 관한 세 가지 오해 / 송대희
<현안분석>
•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고찰 / 최준욱
• 법안-비법안 사이의 자원배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의 효과 분석 / 민화철
• 검불관련 과세 및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 / 김현아
<정책연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성명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 박기백 김현아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 원종학 김종연 김형준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 홍범교

이 내용들의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www.kjpf.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포럼

2006년 7월호 통권 제121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최준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위원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6년 7월 15일 발행 / 제11권 제7호(통권 제12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 · 전화 · FAX · 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